

# 2024

## 통합25차 정기총회 (20차 대의원총회)

---

- 일시 : 2024년 02월 24일(토) 오후 2시
- 장소 :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83,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



# 총회 진행순서

## [제 1부 기념식]

---

- 건강체조
- 개식선언
- 생명의례
- 영상시청
- 이사장 인사
- 시상
- 폐식 선언
- 기념촬영

## [제 2부 정기총회]

---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사록 서명날인인과 서기선임
- 경과보고
- 전차의사록 낭독과 승인
- 의사일정 확인
- 안건 심의
- 폐회 선언



## 자료집 목차

	건강정의	5
	설립이념, 정관 전문	6
	기념사	7
	조합 연혁	8
	조합 현황	14
	시상	17
	경과보고	21
	전차회의록	22
	상정의안 순서	27
제1호 의안	2023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29
제2호 의안	2023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35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39
제4호 의안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43
	I 사업 보고	45
	II 사업 실적	
	1. 설립이념에 따른 2023년도 사업 실적	48
	2. 정관에 따른 2023년도 사업 실적	50
	3. 2023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실적	
	1) 일차의료센터 사업보고	54
	2) 지역사회의료센터 사업보고	58
	3) 통합돌봄사업본부(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주간보호센터)	65
	4) 조합사업부	76
	5) 경영지원실	81
	III 결산 보고(안)	
	1. 결산 보고 총평	84
	2. 자산 / 부채 / 출자금 현황	85
	3. 주요 결산 실적	86
	4. 자본 결산	87
	5. 재무상태표	
	1) 통합 재무상태표	88
	6. 손익계산서	
	1) 통합 손익계산서	90
	7. 부서별 손익계산서	92
	8. 예산 대비 집행계산서	94

제5호 의안	2023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97
	결손금 처리 계산서(안)	99
제6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101
	정관 변경 사유	103
	정관 변경(안) 신규대조표	104
제7호 의안	임원(이사, 감사) 선출의 건	113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과, 입후보현황	115
	4. 임원 선거 입후보자 소개	116
제8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121
	I 2024년도 사업계획(안)	123
	5. 6대 핵심지표 달성 목표	126
	6. 단위 부서별 사업계획	
	1) 일차의료센터	127
	2) 지역사회의료센터	131
	3) 주간보호센터	134
	4)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35
	5) 조합사업부	143
	6) 경영지원실	147
	II 2024년도 사업예산(안)	
	1. 2024년도 예산 수립 기초	148
	2. 예산 총칙	149
	3. 단위부서별 2024년 예산(안)(2023년도 결산 대비)	150
제9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161
	2023년 차입금 내역 및 2024년 상환 계획	163
기타	특별제안	165
	지구건강지키기 특별제안	167
부록	정관	169
	규약	185



#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1. 건강정의
2. 설립이념, 정관 전문
3. 기념사
4. 연혁 및 현황
5. 시상





## ●● 건강 정의

건강이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건강증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WHO. 2000>

## ●● 건강 약속

아플 때,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몸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내가 아픈 것은 세상이 아픈 것임을 깨닫고  
그 아픔의 근원을 응시할 수 있게 하소서.  
우주인 생명이 내는 소리에 귀를 열게 하소서.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임을 깨닫게 하소서.  
늘 안부를 묻고 살피는 서로가 되게 하소서.  
이웃이 아플 때 아픈 내 몸 쓰다듬듯 손 내밀어 잡게 하소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본성처럼 늘 서로 돕고, 늘 서로 나누며  
그것을 통해 더불어 하나 됨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빛날 수 있게 하소서.  
<2015.10.05.제정, 2018.01.17.개정.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과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동하여 의료, 돌봄, 예방 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건강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이며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다.

## ●● 설립이념, 정관 전문

### 설 립 이 념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 정 관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계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단체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 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발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 ●● 기념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석연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을 비롯한 축하를 위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밖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의료진 파업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합원과 이웃들에게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돌보고 서로 건강해지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02년에 창립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건강한 삶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활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나 조합원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탠 결과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개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대를 넘어 함께 서로 돌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만으로 건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통합돌봄” 시대입니다. 환자가 내원해야만 진료를 받는 것에서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환자의 필요를 채우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으로 민들레와 관계기관이 함께 해법을 찾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은 양방과 한방 모두 방문 진료를 하는 곳이 대전 민들레가 유일했습니다. 환자마다 필요에 알맞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민들레 가치 실현입니다. 민들레는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확장되어왔습니다. 2022년 12월에 조합원의 힘으로 만들어진 주간보호센터도 지역의 어르신 돌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힘입니다.

2024년은 민들레는 조합원들을 연결하고 지역을 연결해서 좀 더 촘촘하게 서로를 돌보고자 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는 민들레가 올해는 조합원들을 이어서 좀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회원 8명 민들레의료생협 준비모임 결성</li> <li>■ 민들레의료생협 준비위원회 결성(20여명)</li> </ul>
2002	“주민의 참여와 협동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들레의원, 한의원 개원</li> <li>■ 발기인 대회(발기인 50명, 대표 김조년)</li> <li>■ 창립총회(조합원303명, 이사장 김조년)</li> <li>■ 소식지 창간호 ‘민들레’</li> </ul>
2003	“주치의 사업의 기반 마련, 조합원 기초조직을 통한 조합운영, 진료권 내 중심을 둔 조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헬퍼 파견사업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li> <li>■ 공동체 화폐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사업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li> </ul>
2004	“조합원 가족주치의, 법동품앗이, 민들레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아мага사끼 의료생협 방문 환영회</li> <li>■ 법동품앗이 창립</li> </ul>
2005	“체조하고 걷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실천단 발대식만걸음 걷기 행사(계족산)</li> <li>■ 새터가족과 함께하는 건강운동회</li> <li>■ 민들레 중장기 발전을 위한 워크숍</li> </ul>
2006	“체조하고 걷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지정</li> <li>■ 전화상담 민들레 교육훈련</li> <li>■ 한국의료생협연대 개소식</li> <li>■ 공동체 자원활동가 교육훈련</li> <li>■ 민들레의원 1층 이전</li> <li>■ 치과 개원</li> </ul>
2007	“걷고 체조하고 자전거타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공원-갑천 생태계지킴이 시민대책위</li> <li>■ 「공생공빈」저자 스찌다 다카시 초청강연회</li> <li>■ 암치유 전략워크숍(나준식)</li> <li>■ 공동생협학교</li> </ul>
2008	“지구와 함께 건강해지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자원활동</li> <li>■ 건강실천단 발대식</li> <li>■ 한의원 뜸 전략 기획단</li> <li>■ 슬로건 만들기 대의원 워크숍</li> <li>■ 창립 6주년 등반대회</li> <li>■ 건강캠프 ‘오약사 따라잡기’</li> <li>■ 소액금융지원 약정체결(사회투자지원재단)</li> <li>■ 의료생협 서비스 품질 워크숍</li> </ul>
2009	“건강증진활동의 기초를 다지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미나미의료생협 방문 및 교류회</li> <li>■ 제1차 이용자 간담회</li> <li>■ 건강증진실 개소</li> <li>■ 창립7주년 야간산행</li> <li>■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보건분야 개강</li> <li>■ 호숫가품앗이가게 개소식</li> <li>■ 노인복지센터 이전개소식</li> </ul>
2010	“건강한 마을의 기초를 다지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 일본의료생협 연수</li> <li>■ 비영리경영컨퍼런스</li> <li>■ 건강검진센터 개소</li> <li>■ 가정간호사업소 개소</li> </ul>
2011	“조합원이 함께 민들레를 세우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검진협약(세이브더칠드런 등)</li> <li>■ 제2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워크숍</li> <li>■ 대전지역생협연대 공동산행</li> <li>■ 임시대의원 총회(둔산진출)</li> <li>■ 조합원 방문의 날</li> <li>■ 둔산민들레 추진위원회</li> </ul>

2012	“새로운 10년을 펼치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둔산민들레 개원</li> <li>■ 황성수 박사 초청 특강</li> <li>■ 한미FTA 폐기 동네춧불</li> <li>■ 현미채식건강실천단</li> <li>■ iCOOP 씨앗기금 전달식</li> <li>■ 조합원 제안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협약(양심과 인권‘나무’)</li> <li>■ 10주년 기념행사, 토론회</li> <li>■ 해고노동자 검진(민주노총)</li> <li>■ 치과진료협약(굿네이버스)</li> <li>■ 여성새일센터 협약</li> <li>■ 여성친화기업 인증</li> <li>■ 대덕치과 이전</li> </ul>
2013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창립</li> <li>■ 민들레-한밭생협 세화강좌</li> <li>■ 씨앗기금 협약</li> <li>■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가입</li> <li>■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전환 창립</li> <li>■ 의료생협 현지 조사 참여(보건복지부)</li> </ul>	
2014	“조합원과 더 많이 만나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이사 학교</li> <li>■ 장애인부모연대 치과치료협약</li> <li>■ 임시총회(건물매입)</li> <li>■ 세상콘테스트 성장기부문 수상</li> <li>■ 건물 매입 계약</li> <li>■ 의료민영화반대 기자회견</li> <li>■ 민들레 방문의 날(비영리협동조합연대)</li> <li>■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참가자 방문</li> <li>■ 건물 매입을 위한 조합원행사 진행(구별)</li> <li>■ 건강의 집 담당자 교육</li> <li>■ 사회공헌 한마당 참여</li> </ul>	
2015	“흑자경영 원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li> <li>■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li> <li>■ 홈커밍데이</li> <li>■ 건강나눔터 “바르게 걷기”</li> <li>■ 전국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어린이집)</li> <li>■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지원사업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li> <li>■ 사회문제해결 기술연구 리빙랩사업 선정(연구재단)</li> <li>■ 건물 매입 완료</li> </ul>	
2016	“건강의 집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이사학교</li> <li>■ 1기 건강조직가 양성과정</li> <li>■ 유성구 진잠동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li> <li>■ 리빙랩-당노자조모임</li> <li>■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li> <li>■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li> <li>■ 노인의료복지연구모임</li> <li>■ 아동여성안전병원 협약(대전광역시)</li> <li>■ ‘청춘은행’ 시스템 구축</li> <li>■ 스포츠의학센터 개소</li> <li>■ 1기 건강리더양성과정</li> <li>■ 여성친화기업 인증(대전광역시)</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약</li> </ul>	

<p>2017</p>	<p>“주민참여 보건의료혁신을 통한 대전의 건강한 미래를 주도해가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림터 청소년 희망멘토 사업장 인증(대동종합사회복지관)</li> <li>■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개소</li> <li>■ 지역사회주도형노인건강돌봄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li> <li>■ 사회적차해소 연구개발 프로젝트(연구재단)</li> <li>■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li> <li>■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가꾸자 사업(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li> </ul>
<p>2018</p>	<p>“대덕구 지역사회중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스템 단계적 준비 및 건강리더, 건강반 조직을 통한 주민건강자치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진로 동기강화 및 성숙도 향상 기여 감사장(대동종합사회복지관)</li> <li>■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li> <li>■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원</li> <li>■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R&amp;D, 비R&amp;D분야, 산업통상자원부)</li> <li>■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커뮤니티케어 일본연수(치바)</li> <li>■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커뮤니티케어 선진지 연수(후쿠오카)</li> <li>■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약</li> <li>■ 법동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li> <li>■ 일본케어매니저제도와 교육과정 및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벤치마킹 연수(이바라키)</li> <li>■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관 협력 협약(대덕구청)</li> <li>■ 건강리더양성과정(5개 기수) 36명 수료, 청소년 건강리더(1개 기수) 18명 수료</li> </ul>
<p>2019</p>	<p>“마을주도 통합돌봄 모델을 만드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들레-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업무협약</li> <li>■ 2019년도 건강반 46개 승인 및 반장설명회</li> <li>■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의 만남 마주봄 엑스포개최</li> <li>■ 10기, 11기 건강리더양성과정 시작</li> <li>■ 한울야학 장애인 건강교육 진행(장애인주치의사업)</li> <li>■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li> <li>■ 만성질환(고혈압, 당뇨)관리 교육 및 영상제작 활용</li> <li>■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운영</li> <li>■ 둔산치과 사업종료</li> <li>■ ICT기술 활용한 노인치매·낙상예방‘편편’활동</li> <li>■ 건강자원조사위한 동네돌봄단 활동 시작</li> <li>■ 중장년남성위한 꽃중년 건강리더양성과정</li> <li>■ 케어매니저양성 기초교육과정개설</li> <li>■ 장애인체력측정,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금연상담, 건강의달인 프로그램</li> <li>■ 2019 건강반 축제 개최</li> <li>■ 민들레대의원 씨앗모임</li> <li>■ 제8기 민들레대의원선거</li> </ul>

<p>2020</p>	<p>“민들레형 동네돌봄을 만드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의료센터 개설, 방문의료서비스 확대</li> <li>■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협동조합 창업지원</li> <li>■ 13기, 14기 건강리더양성과정 수료</li> <li>■ 제8기 대의원 자치회 단합대회 개최, 모임 활동</li> <li>■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2단계 시작</li> <li>■ 민들레만의 방문의료특화사업 ‘재활, 구강,예쁜발 프로젝트’</li> <li>■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지원 ICT통합솔루션 개발사업</li> <li>■ 대덕구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li> <li>■ 지역사회통합돌봄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을 부탁해”</li> <li>■ 대전대와 케어매니저 양성 심화교육</li> <li>■ 조합원 4천명 돌파 (4,008세대 달성)</li> </ul>
<p>2021</p>	<p>“민들레형 동네돌봄을 견고히 하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승인(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li> <li>■ 대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li> <li>■ 15기, 16기, 17기 건강리더양성과정 수료</li> <li>■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 업무협약(대덕구보건소, 대덕종합사회복지관)</li> <li>■ 당뇨병, 천식 적정성 평가 양호기관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li> <li>■ 대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내에서 공공보건의료 연계 모델 개발 협약(충남대학교)</li> <li>■ 대덕구「사회적경제활성화사무」운영 위,수탁 협약(대덕구청)</li> <li>■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대덕구청)</li> <li>■ 병역명문가 업무협약(대전충남지방병무청)</li> <li>■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인증(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협약(대덕구청)</li> </ul>
<p>2022</p>	<p>“민들레형 동네돌봄을 확장 하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 설립추진”대의원, 조합원 웨비나 개최</li> <li>■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설립 출자/기부 캠페인</li> <li>■ 건강반 55개 승인</li> <li>■ 임원 워크숍</li> <li>■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대덕구공동체한마당” 참여</li> <li>■ 제 18, 19기 건강리더 수료</li> <li>■ 민들레꽃나눔반 발족</li> <li>■ 주간보호센터건립조합원추진위원회 활동 마무리 작은 만찬</li> <li>■ 조합 창립20주년 조합원 설문조사</li> <li>■ 창립20주년 기념 떡나눔 행사</li> <li>■ 건강-UP, 행복-UP 건강마을축제</li> <li>■ 대전시청 “여성친화기업” 협약</li> <li>■ 9기 대의원 선출</li> <li>■ 민들레주간보호센터 개소</li> <li>■ 대덕구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li> <li>■ 민들레 송년축제 개최</li> <li>■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사회서비스 및 시제품 개발 성과보고회”개최</li> <li>■ 민들레주간보호센터 개소식</li> <li>■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헬스케어서비스”(보건복지부 우수상)</li> <li>■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종료</li> </ul>

2023

“조합원 건강자치력 향상”

- “동네병의원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실” 진행(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 자원활동가 교육(민들레주간보호센터)
- 민들레통합돌봄유성본부 개소
- 대덕형 마을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대덕구)
- 보훈대상자 등 방문진료지원사업 업무협약(대덕구 등)
-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협약(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등)
- 우리동네 맞춤형 “행복상담소” 참여
- 조합원 “안성의료사협” 탐방
- 의료사협 정기감사(보건복지부)
- 구강관리교육 실시(민들레치과)
- D-cafe(치매관련 교육, 정보 교류) 개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회 개최
- 자원활동가 워크숍 개최(민들레주간보호센터)
-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과 실습
- 종합건강검진 협약(대전엑스포로타리클럽)
- 재택의료, 임종케어 관련 인터뷰(일본 나고야 교수)
- 조합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 장애인 건강주치의 간담회 개최(대전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어르신 야외나들이 진행(민들레주간보호센터)
- 주간보호센터 홍보드라마 2탄 촬영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활성화 유공 송지혜원장 표창(보건복지부)
- 소상공인조합원 대상 “어부바 건강주치의” 진행(한빛신탁협동조합)
- 장애인 건강인증프로그램 진행
- 강원대 보건과학대학 지역사회통합돌봄 현장견학
- 무주 안성고 보건동아리 현장견학



## 주요 수상, 인증 내역

연 도	내 용	대 상 자
2011	우수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장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2	우수 사회적기업 대통령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3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창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5	우수 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7	우수 사회적기업가 대통령 표창	민들레의료사회협 조세종 감사
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민들레의료사회협 나준식 이사장
2019	사회적경제 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 감사패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9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기여' 공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민들레의료사회협 나준식 이사장 민들레건강검진센터 허애령 원장
2019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인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0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대전광역시장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남은순 팀장
2020	'국민보건 향상 공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민들레지역사회의료센터 이경민 팀장
2020	'동네돌봄 활성화' 기여 대덕구청장 표창	민들레지역사회의료센터 박지영 센터장
202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기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국현정 센터장
2021	사회적경제 유공자 정부포상 산업포장 대통령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나준식 이사장
2021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발전'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역사회의료센터 박지영 센터장

## 2023년도 수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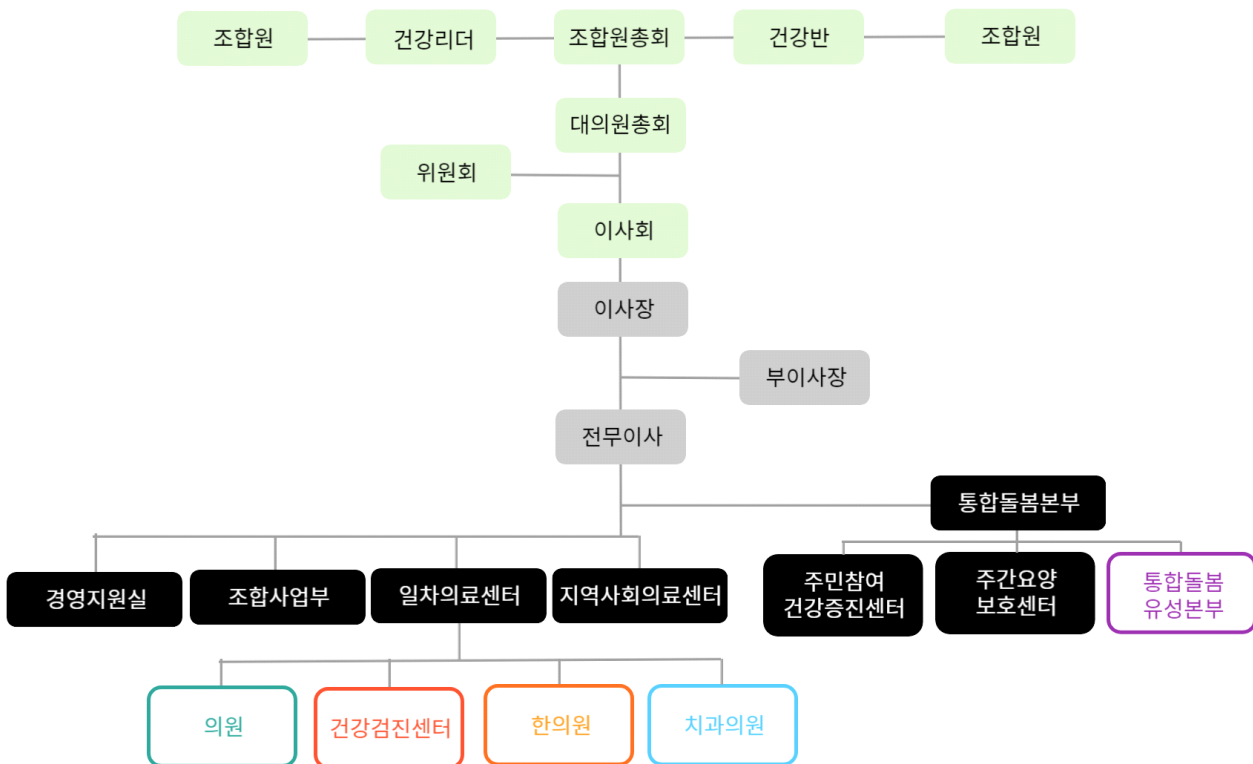
일 자	내 용	대 상 자
2023.11.02	'장애인 건강증진' 기여 보건복지부 장관	민들레의원 송지혜 원장
2023.12.20	'나눔과 봉사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기여 대전광역시회의회장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 1) 기본 현황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조합원(세대)	4,583	4,402	4,182
출자금(원)	1,409,370,000	1,504,100,000	1,170,370,000
총 자산(원)	3,326,122,600	3,325,301,945	2,333,025,867
직원(명)	57	47	40

### 2) 조직도 (2023.12 현재)



3) 9기 대의원 명단(총 105명)

유형	대의원
<p>소비자조합원 (50명)</p>	<p>강미영 고달숙 공옥순 권인호 김경언 김경희 김복남 김순영 김영순 김윤영                      김정호 김종민 김준형 김찬옥 김창원 김창일 김화정 남은순 박미양 박영기                      박주희 박지은 박천경 배은열 백옥현 서은영 석연희 설진숙 신철순 오민우                      유승화 유인수 이경선 이미선 이선아 이원표 이원호 장은호 전인수 정복희                      정연희 정운재 조 현 채계순 추경미 한경이 한선희 함보현 홍은영 황대관</p>
<p>직원조합원 (22명)</p>	<p>국현정 김혜원 나준식 문진식 박윤민 박종희 박현주 박혜란 신현정 양영미                      윤미경 이경민 이미순 이연서 이옥희 이자우 이지명 임영신 장하림 최수이                      한선영 허애령</p>
<p>자원봉사조합원 (25명)</p>	<p>김성욱 김연준 김태순 노복희 박명수 배선부 배현옥 봉미경 서화자 석희옥                      송직근 오경예 유성현 이경옥 이근화 이정자 임남희 장은영 전성욱 전종훈                      정용철 주웅식 천재경 최윤나 최진훈</p>
<p>후원자조합원 (8명)</p>	<p>박병철 신연순 신정은 신지혜 이기업 정종한 최윤정 홍재희</p>

4) 기부금 참여 현황 - 스스로조합비, 일반기부금 (2023.12.31.)

총액(원)	스스로조합비		일반기부금		비고
	회원수	금액	기부건수	금액	
71,709,420	260	34,290,000	85	37,419,420	

o 스스로 조합비(기부금) 참여자 명단

강명숙 강수환 강윤희 강종예 강한필 고광현 고명호 고미경 국현정 권경미 권기철 권의경  
 권인호 권지명 권지연 권지훈 길인숙 김경화 김경희 김기운 김다미 김다슬 김동석 김명희  
 김미선 김미성 김미자 김민희 김병조 김봉기 김선미 김성훈 김수경 김연아 김연준 김영례  
 김영선 김영순 김영준 김용환 김윤섭 김윤영 김은영 김진호 김찬옥 김태현 김현나 김현미  
 김현숙 김현영 김현조 김현주 김현주 김현태 김형근 김형렬 김혜원 김화준 김표태 김희형  
 나성은 나준식 남은순 남해성 노미정 문진식 문희균 박기봉 박명구 박명연 박명화 박미양  
 박병철 박봉희 박영민 박영철 박유경 박유미 박재연 박정홍 박종금 박종혁 박종희 박종희  
 박준규 박지숙 박지영 박진희 박태일 박현주 박현희 박혜란 배은열 백미순 백수홍 백양순  
 백유선 백종범 백희정 봉미경 서동애 석연희 석은자 석필환 선재규 성광진 손복희 손태희  
 송수연 송순옥 송애경 송영삼 송영숙 송정희 송지현 송지혜 송직근 신소연 신연순 신옥영  
 신원선 신원식 신정은 신지혜 신현정 심정희 안영섭 안창배 안혜영 양봉석 양영미 엄기정  
 영인표 오민우 오완균 오윤근 오은주 오정분 오현우 원종승 유선화 유수진 유승민 유승화  
 유영희 유인수 유진석 윤대진 윤명숙 윤미경 윤선미 윤자윤 윤주현 이경민 이경선 이기순  
 이기업 이덕희 이미순 이민영 이봉선 이비단모래 이상녀 이선아 이선화 이성현 이 송  
 이연서 이영숙 이영숙 이옥희 이용화 이우림 이원표 이은영 이자우 이정례 이종원 이종현  
 이주선 이지명 이진미 이진숙 이효숙 이효진 이희경 임서연 임영신 임은경 임인선 임종윤  
 장기홍 장돈경 장병천 장윤희 장재민 장진호 장하림 장현미 장현선 전성욱 전송희 전홍주  
 정금분 정나현 정연희 정영숙 정운재 정원미 정유진 정인숙 정종한 정지희 정현숙 정혜석  
 조경수 조병민 조선기 조세종 조영국 조혜연 조희중 주웅식 채유희 천재경 최기수 최소영  
 최수이 최순례 최승남 최윤정 최은남 최채옥 최태진 최혜경 추경미 표홍근 한선희 한혜진  
 허기명 허나영 허애령 허 연 허영란 홍미옥 홍완기 홍윤경 홍은영 홍재희 홍종순 홍춘기  
 홍향미 황근하 황선희 황신애 황 용 황인식 황정인 황정현  
 (총 260명)

5) 일반기부금 납부실적

개인(23명)

강한필 국현정 권유경 기지훈 김다슬 김선옥 김영인 김용환 김춘식 나준식 남하영 박호연  
 석희옥 양혜정 이경민 이재연 인두석 장하림 전지한 정운재 허애경 허애령

단체(3곳)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한국에자이(주) 협동조합소이랩

### 3. 민들레홀씨상

분야	수상자	수상 이유
자기 돌봄	만성질환 어르신 건강반	「만성질환 어르신」 건강반은 80여명의 조합원이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SPPB(간단신체기능검사)결과 균형감각, 이동속도, 신체나이 등이 유지·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민들레가 추구하는 '자기돌봄'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등글게 봄 건강반	「등글게 봄」 건강반은 오랜 지역주민들로 건강반 활동으로 민들레와 인연을 맺으며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을 적극 펼쳐왔습니다. 특히 마을에 민들레의료사협을 소개하고, 건강리더 교육에 참여하며 조합원 영상공모전 참가하는 등 다양한 조합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민들레가 추구하는 '자기돌봄'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서로 돌봄	이남순 요양보호사	귀하는 민들레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팀과 협업하는 영양보호사로 중증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뜻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정든 마을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통해 민들레가 추구하는 '서로돌봄'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공동체 돌봄	이경민 다학제팀장	귀하는 민들레지역사회의료센터 다학제팀장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 및 일상생활이 불편한 주민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해 왔습니다. 민들레가 추구하는 '공동체 돌봄'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가정간호팀	지역사회의료센터 「가정간호팀」은 질환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료적 처치, 건강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생애말기 돌봄의 공백을 묵묵히 메우고 있는 팀의 활동이 민들레가 추구하는 '공동체 돌봄'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민들레치과	「민들레치과」는 자연치아를 소중하고, 우리 가족 치아 평생 주치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들레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올바른 치아 관리법' 교육과 '찾아가는 구강건강활동' 등 예방활동을 통해 민들레가 추구하는 '공동체 돌봄'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공로	김찬옥	귀하는 2018년부터 6년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면서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와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민들레와 협동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이 때에 담아드립니다.
	노병일	귀하는 2022년부터 2년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해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이 때에 담아드립니다.
	신경희	귀하는 2022년부터 2년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주치의가 있는 민들레주간보호센터'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이 때에 담아드립니다.





#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1. 경과보고
2. 전차 의사록





## 1. 통합25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경과보고

2023.10.25.	<p><b>[이사회]</b></p> <p>1) 총회준비 관련 논의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총회일정 : 2024년 2월 24일(토) 오후2시</li> <li>o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이사장 위임</li> </ul>
2024.01.24.	<p><b>[총회준비위원회]</b></p> <p>1) 총회준비위원회 소개 및 구성(위원장 선출 : 신지혜)</p> <p>2) 총회준비계획 검토, 2023년 평가 및 2024년 사업방향 논의</p>
2024.01.25.	<p><b>[이사회]</b></p> <p>1) 총회준비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li> <li>o 통합2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 : 총 13명(이사11명, 감사2명)</li> <li>o 총회준비위원회 구성보고 : 신지혜(위원장), 김명희, 김복남, 박종희, 박천경, 석연희, 성은숙, 송직근, 신현정, 이경민, 장은영, 최채욱, 황윤남</li> <li>o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보고 : 조세종(위원장), 이자우, 백종범</li> <li>o 전형위원회 구성보고 : 나준식(위원장), 이연서, 허애령</li> </ul>
2024.01.26.	<p><b>[선거관리위원회]</b></p> <p>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조세종(위원장), 이자우, 백종범</p> <p>2) 임원선거 일정 확정</p>
2024.02.01.	<p><b>[공고]</b></p> <p>1) 통합25차(20차 대의원총회) 정기총회 공고</p> <p>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원선거 공고</p>
2024.02.07.	<p><b>[총회준비위원회]</b></p> <p>1) 2023년 총평 및 결산(안) 검토</p> <p>2) 2024년 사업계획 검토 : 사업방향, 부서별 세부사업 제안</p>
2024.02.14.	<p><b>[종합감사]</b></p> <p>1) 사업감사, 회계감사</p>
2024.02.16.	<p><b>[이사회, 확대총회준비위원회]</b></p> <p>1) 총회준비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총회준비 주요경과</li> <li>o 기념식, 포상안 검토, 특별결의</li> </ul> <p>2)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p> <p><b>[선거관리위원회]</b></p> <p>1) 임원후보자 자격심사</p> <p><b>[전형위원회]</b></p> <p>1) 임원 후보자 추천</p> <p><b>[출자금 고지]</b></p> <p>1) 조합원 출자금 고지 문자 발송</p>
2024.02.19.	<p><b>[선거관리위원회]</b></p> <p>1) 임원후보자 자격심사</p> <p>2) 임원후보자 선거공보 및 선거운동(~23일)</p>
2024.02.23.	<p><b>[선거관리위원회]</b></p> <p>1) 선거점검</p>
2024.02.24.	<p>통합25차 정기총회,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원선거</p>

## 2. 전차 대의원총회 의사록

의사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서명날인의 확인을 마쳤습니다.  
자료집의 가독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원본대조필 : 의장 석연희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4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4차 정기총회(제19차 대의원총회)
2. 공고일시 : 2023년 2월 16일(목)
3. 개최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30분 ~ 오후 3시 50분
4. 개최장소 :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83(중리동)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
5. 정기총회 의장 : 석연희 이사장

#### 가. 성원 확인

의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여 이자우 조합사업부장이 총원 109명 중 참석 74명임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은 정관에 의거하여 대의원 과반이상 참석으로 본 회의가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선포하다.

#### 나. 개회 선언

성원을 확인한 의장이 오후 2시 30분에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다. 의사록 서기 및 서명날인인 선임

의장이 참석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서기로는 남은순, 임영신 조합원을, 서명날인인으로 이연서, 이자우, 송직근 대의원을 선임하고 참석 대의원에게 승인을 요청하다. 다수의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서기와 서명날인인을 선임하다.

#### 라. 경과 보고

의장이 정관, 규약,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경과를 주문하다.  
이에 송직근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12월 이사회 승인으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4회차 회의를 진행한 경과를 보고하고, 의장이 오늘의 이 회의가 절차적으로 합당하게 개최됨을 선포하다.

#### 마. 전차의사록 승인

의장이 지난 통합23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승인해야 함을 설명하고 전차 의사록 낭독을 요청하다.  
김경언 대의원이 낭독 대신 자료집 22~26쪽 전차 대의원총회 의사록 서면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 이미순 대의원이 재청하였으며 의장이 참석 대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

고, 원안대로 전차회의록을 승인하다.

## 바. 의사일정 확정

의장이 공고와 자료집 27쪽에 상정된 의안 순서에 대한 처리 순서와 이외에 추가안건이 있는지 참석 대의원에게 확인하다. 원안대로 총회 의사일정을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확정하다.

## 사. 상정의안 심의

### 1) 제1호 의안 : 2022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회계부문 감사에서 김정호 감사가 자료집 31쪽의 상반기 회계감사일이 2022년 8월 23일인 것을 수정 보고하며, 당기순이익 198,248,294원 및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감사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보고하다.

사업부문 감사에서는 박봉희 감사가 자료집 33~34쪽의 내용을 낭독하며 감사보고를 하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주간보호센터 개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하는 조합원과 임직원의 수고 및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제안사항을 보고하다.

참석 대의원 다수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장이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2) 제2호 의안 : 2022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의장이 자료집 35~37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의장이 참석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김창일 대의원의 동의 및 최진훈 대의원의 재청에 따라 2022년 탈퇴조합원 83명의 출자금 15,266,000원 환급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3) 제3호 의안 : 2022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정운재 부이사장이 2022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 사항을 자료집 39~42쪽을 보며 주간보호센터 설립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다.

국현정 대의원의 동의 및 류승화 대의원이 재청하고 참석 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 후 2022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4) 제4호 의안 :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2022년 사업보고(안)을 국현정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장이 자료집 45~87쪽을 바탕으로 건강자치력 강화, 영양주치의, 재택의료 등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하다.

2022년 결산보고(안)을 정운재 부이사장이 자료집 89~102쪽을 토대로 설명하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조합원 수 4,402명, 출자금 총액 1,504,100,000원 대한 총 출자좌수 150,410좌이며, 주간보호센터 설립 과정 중 다수의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임직원의 노력으로 흑자를 이루었으며 5년 연속 흑자, 누적 적자가 3억 미만으로 감소하였음을 보고하다.

나준식 대의원이 94쪽 유동자산 장기선급금에 대하여 질문하다. 이에 김정호 감사가 홈페이지 제작 관련한 선급금 지급 내역이며 회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수 불가능 시 대손처리할 것을 2022년 회계부문 감사의 기타 의견으로 보고한 과정을 설명하다.

의장이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이 김찬옥 대의원의 동의와 김창일 대의원의 재청, 참석대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5) 제5호 의안 : 2022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정운재 부이사장이 자료집 119쪽~121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2022년 당기 순이익 198,248,294원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잉여금은 정관에 따라 누적 손실금 470,869,490원에 보전할 것을 설명하다. 김준형 대의원 동의와 김경언 대의원의 재청으로 잉여금 처분(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6) 제6호 의안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자료집 125쪽~145쪽 내용에 대한 설명을 송직근 이사에게 요청하다. 송직근 이사가 조합의 설립이념과 건강 정의를 설명하고 2023년도 조합원 건강자치력 향상 사업기조 및 중점 사업 계획을 설명하다.

정운재 부이사장이 자료집 147~159쪽 내용을 토대로 통합돌봄 및 주간보호센터를 견고히 하는 기조로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하다.

김영순 대의원이 동의한 후 유성현 대의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참석 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7) 제7호 의안 :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이 자료집 163쪽의 차입금 한도를 20억원 이내로 하는 안건 설명을 정운재 부이사장에게 요청하다. 정운재 부이사장이 주간보호센터 설립에 의해 차입금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 김창일 대의원의 동의와 김찬욱 대의원의 재청 및 참석 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를 현재의 차입금 1,597,661,317원을 포함한 총 합계액 기준 20억원 이내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8) 기타**

의장이 기타의견이 있는지 참석 대의원에게 묻고 신현정 대의원이 자료집 169쪽의 정관 제2장 제14조(탈퇴) 조항에서 조합원이 실종 및 실종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탈퇴 방안에 대한 조항 필요성을 제시하다. 이에 정운재 부이사장이 실종 및 실종선고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응답하다.

박현주 대의원이 자료집 15쪽의 조직도는 직원의 직제표이고, 송직근 대의원의 발표 자료에 있듯이 조합원 참여 구조를 알 수 있는 조직도가 표기되어야 하며, 조직도가 수정된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제안하다. 또한 대의원 현황과 정보가 필요하고, 최근 대의원 사전 모임에 많은 대의원이 참여하였는데 본인이 어떤 선거구를 대의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등 선거구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며, 선거구 및 대의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안 마련, 선거구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다. 이에 김준형 대의원이 선거구에 대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 변경이 필요할 시 관련 검토하여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의장이 조직도를 수정한 자료집을 게시하는 것과 선거구 및 대의원 이해를 돕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하다.

김창일 대의원이 조합원은 대의원에게, 대의원은 이사회와 임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며, 현재 조합원이 4천여 세대이고 앞으로 더 많은 조합원이 생길텐데 10년 후의 민들레가 어떠할지

대의원이 스스로 공부하고 만들어가며 임직원에게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으며, 올해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임직원 사이에서 잘 소통할 수 있는 대의원의 역할로 자리하며, 내년 총회에서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란다 고 제안하다. 이에 이경선 대의원이 취지가 좋으나 대의원이 다른 모임을 만들 수 있는지 잘 알아보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운재 부이사장이 대의원이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이며 운영위원회 구성이 총회 승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다.

이어서 김창일 대의원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곧 법이고, 결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승인은 꼭 해야 하는 것인데,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준비위원회를 결의 수준이 아니라 총회 승인 수준으로 하면 좋겠으며, 우선 안건에 대해 가부를 물어보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다. 나준식 대의원이 총회 의안은 이사회에서 검토해 상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안건은 공유하고 결의하는 것이지 정식 총회 안건으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다.

허애령 대의원이 우리가 누구를 대의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이고, 대의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의견을 결정할 때 본인 의견을 내는 것밖에 안 될 수 있으므로, 박현주 대의원 의견처럼 대의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하다.

송직근 대의원이 총회 의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조합원 활동을 하고 내년 총회에 상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고, 신현정 대의원이 총 대의원 109명 중 임직원 대의원을 빼면 80여명 정도이고 따로 모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내었으며, 나준식 대의원이 총회를 종료한 후 자발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다.

이에 의장이 김창일 대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총회 폐회 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참석 대의원에게 묻고 다수의 대의원이 찬성하여 기타 안건을 종료하다.

#### **아. 폐회 선언**

의장이 이외의 여타 의안이 있는지를 대의원에게 묻고, 박미양 대의원 동의와 김영순 대의원이 재청하였으며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오후 3시 50분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4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 **자. 의사록 서명 날인**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4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이 기명날인하다.

차. 참석 대의원 명단( 74명 )

고달숙	국현정	권세현	권인호	김경언	김복남	김연준	김영순	김정호
김종민	김준형	김찬옥	김창원	김창일	김태순	김혜원	김화정	나준식
남은순	노복희	문진식	박명수	박미양	박병철	박종희	박주희	박천경
박현주	박혜란	배은열	백옥현	봉미경	서화자	석연희	설진숙	송직근
신지혜	신철순	신현정	양영미	오경예	오민우	유성현	유승화	윤미경
이경민	이경선	이근화	이미선	이미순	이선아	이연서	이옥희	이원표
이자우	이정자	이희경	임영신	장은영	정용철	전인수	전종훈	정복희
정운재	조 현	주웅식	천재경	최수이	최진훈	한경이	한선영	허애령
홍은영	홍재희						이상	74명

2023. 02. 25.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

이 연 서 (인)

서명  
날인인

이 자 우 (인)

의 장 석 연 희 (인)

송 직 근 (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법무부 고시 제2015-0358호(2015.12.22. 340.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른 의사록 공증 제외대상 법인임.

## 통합25차 정기총회(제20차 대의원총회) 상정의안

제1호 의안	2023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3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2023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임원(이사, 감사) 선출의 건
제8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기타	





## 제1호 의안 2023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3년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6호, 제53조 제1항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제5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사 일시

- 사업부문 : 2023년 08월 26일 (상반기)  
2024년 02월 14일 (2023년 상·하반기 종합)
- 회계부문 : 2023년 08월 23일 (상반기)  
2024년 02월 14일 (2023년 상·하반기 종합)

2. 감사 범위 : 2023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회계 부문

### 3. 감사 결과 보고

#### 1) 사업 부문

## 2023년 감사 보고서

- 감사일 : 2024년 2월 14일
- 장 소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교육실
- 감사기간 : 2023년 1월~12월
- 감사범위 : 2023년 1월~12월 사업
- 감사자 : 박봉희
- 참석자 : 석연희 이사장/ 송직근 전무/ 이연서 경영지원실
- 감사근거 : 정관 제 53조에 의함

#### 사업부문

2023년 민들레의료사업은 '나의 건강약속(자신을 돌보라)', '서로의 건강약속(서로를 돌보라)', '공동체의 건강약속(공동체를 돌보라)'을 3대 전략으로 수립하고, 조합의 건강약속을 지켜가기 위해 <조합원 건강자치력 향상>을 기조로 잡았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질병 예방사업을 실천하고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들레의료사업은 20주년을 지나며 조합원 5천 세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통합돌봄 사업본부의 주간보호센터 개소, 지역사회의료센터의 장애인주치의 사업, 재택의료, 방문진료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의료사업연합회가 주최한 다학제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 사업에 8월부터 참여하며 2024년엔 전국 유일의 양한방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는 성과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공백 기간을 종식하고 조합 전체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전무이사)가 상반기 선임되고, 긴급한 경영의 주요 논의 할 수 있는 경영위원회가 운영되며 상반기 굵직한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와 고용노동부 불시점검을 대응하고 하반기 사업들을 수행해왔습니다.

2023년 매출액이 지난 해보다 8억원 가량으로 증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운데 의원과 검진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시범적 사업 참여, 고령사회에 필요한 지역사회의료센터의 방문의료증가 요인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동체 가치 실현, 조합원 주체 세우기와 참여 등 균형적 성장을 위해 몇 가지 보완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제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민들레 주간보호센터 개소가 초기 과정 시스템 운영의 미비한 점들이 보완되고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돌봄 안전관리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철저한 내부 운영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센터의 일상적 운영과 관리를 점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내부 구조체계(예, 운영위 구성) 수립을 제안합니다. 민들레 ‘주치이가 있는 주간보호센터’로의 강점을 내부 조합원(신임이사, 직원, 대의원 등)들에게 우선적으로 홍보하며 지역사회 신뢰를 쌓아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 자원 활동과 연계한 차별화된 사회적 돌봄의 로드맵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동안 신규 조합원, 신입직원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들레 직원 수가 6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교육은 하반기부터 정례화 되고 있으나 직원 전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재교육 체계 마련은 과제로 남습니다. 따라서 직원 교육을 비롯한 조합원 성장을 위한 교육의 장, 단기 계획 수립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돌봄 대상자의 임종과 돌봄 종사자의 소진 등 지역사회 현장을 찾아가는 돌봄 직원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2024년엔 우선적으로 원하는 직원 치유프로그램 시범적 운영 계획과 장기적으로 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의 일상적 점검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여 보고받고 이사회는 비전 중심의 논의와 임원도 협동하며 성장하는 조직운영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집니다. 신임 임원 자체 교육계획과 더불어 2024년 의료협동조합 30주년 행사 참여 등 전국 임원들과 교류하며 배움이 일어나도록 다양한 교육과 교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조합원 건강자치력 향상을 체험할 수 있는 1임원 1건강소모임 참여 등도 권유하며 민들레 건강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 경험을 높여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자원봉사자 간담회, 건강반 운영평가 등 조합원 의사를 사업과정과 평가과정에 반영하려는 의미있는 시도는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생각의 협동, 자본의 협동, 노동의 협동, 마음의 협동’으로 조합원 참여 방안을 좀더 세분화하여 조직화 하려는 노력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들레의료사협 조직도와 조직 소통 체계의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통합돌봄본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와 조합 사업부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점,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사회의료센터의 내용이 긴밀한 연계가 필요해 보이는 데 조직도상 소통 체계가 보이지 않는 점 등 총회 이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23년 경영 실적을 이뤄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조합전반의 모임과 활력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점검하고 조합원 건강자치력 향상에 힘을 모아주실 이 사회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4. 2. 14

(인감)

사업 감 사

박 봉 희



## 2) 회계 부문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및 이사장 귀하

2024년 02월 14일

본 감사인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23년 12월 31일자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  
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상  
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  
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  
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감사결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23년 경영성과는 고금리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82,948,034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의견으로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1. 임직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미지급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지급을 권고하였고
2. 주간보호센터 식자재에 대한 계정과목 변경(소모품비⇒원재료)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수고하시는 조합원 및 경영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사 김 정 호 (인)





## 제2호 의안 2023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3년도 탈퇴 조합원 70명의 출자금 38,151,800원 환급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16조 제1항 제4항, 제33조 제9호, 제35조 제4호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급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 2023년도 탈퇴 신청 조합원 현황

(단위 : 원)

조합원 명	환급출자금	조합원 명	환급출자금	조합원 명	환급출자금
강세환	50,000	박성옥	50,000	정태하	1,740,000
강종숙	3,384,500	박성은	50,000	조원희	50,000
강지현	50,000	박순희	55,000	진경덕	50,000
구모영	52,750	박은심	50,000	천성아	12,255,000
권오남	50,000	박정인	654,000	최미나	50,000
김광수	160,000	박지연	50,000	최부웅	50,000
김동표	50,000	손정열	205,000	최장희	3,713,000
김동훈	1,570,000	송경자	50,000	최주현	150,000
김미옥	100,000	송길섭	50,000	한지훈	50,000
김민정	50,000	신병일	100,000	홍성욱	1,972,000
김보영	50,000	신정식	112,500		
김성민	50,000	신태철	74,250		
김소영	60,000	양광현	50,000		
김신덕	80,000	양춘숙	60,000		
김은영	55,000	엄순애	133,800		
김인화	50,000	오미선	57,500		
김정순	150,000	오세순	150,000		
김종학	50,000	오용목	50,000		
김지영	50,000	유여원	200,000		
김춘화	50,000	이성원	50,000		
김현숙	65,000	이숙영	100,000		
김형교	50,000	이예진	50,000		
김효섭	1,190,000	이우석	100,000		
나채갑	170,000	이점순	720,000		
남순예	1,700,000	이춘자	50,000		
노명수	50,000	이춘자	50,000		
대전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000,000	장금자	50,000		
류순옥	50,000	전옥미	50,000		
문주연	55,000	정옥희	55,000		
박선영	52,500	정진영	50,000		
총 70명					38,151,800



##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3년에 이사회 승인을 득한 변경된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63조 제3항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2023년 사업예산 전용/변경 이사회 승인 내역

## 1) 요약

- 2023년도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자산)예산을 적시된 사유로 일부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 이사회 승인 후 정관 제63조 제3항에 따라 자산 취득 변경 건을 총회에 사후 승인 요청함.

## 2) 총회 승인 예산 변경 현황

(단위: 원)

구분	최초 승인 예산	원안 집행	미수립 예산 집행(전용)	미집행	계
건수	10	2	8	8	18
금액	25,370,000	12,757,500	134,785,000	-	147,542,500

## 3) 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기 관	품 명	'23 수립 예산	취득일	집행 결과	이사회 승인일	사 유
의료 기기	검진	자동혈압계		'23.08.22	1,170,000	'23.08.30	교체
	치과	의료용 자외선소독기	350,000				미집행
	의료기기 소계		350,000		1,170,000		
시설 장치	의원	의원 입구 확장공사	10,000,000	'23.07.08	10,780,000	'23.08.30	원안집행
	주간 보호 센터	냉난방기		'23.01.31	53,000,000		이월집행
		공기순환기 설치		'23.02.21	8,349,000		이월집행
		화장실 안전손잡이(스텐)		'23.06.28	1,650,000	'23.11.29	추가설치
		족욕기 안전손잡이(스텐)		'23.08.31	1,980,000	'23.11.29	
	참선	사무실 냉난방벽걸이		'23.07.14	1,936,000	'23.08.30	추가설치
	경영 지원실	지하 천정형 냉난방기		'23.01.03	2,700,000		교체
시설장치 소계		10,000,000		80,395,000			
비 품	치과	모니터 5대	1,250,000				미집행
		데스크 컴퓨터	650,000				미집행
	참선	조합원제2공간 테이블 및 의자	2,120,000	'23.03.02	1,977,500	'23.04.26	원안집행
	경영 지원실	노트북	2,000,000				미집행
		컴퓨터	3,000,000				미집행
		범외 기타	2,000,000				미집행
비품 소계		11,020,000		1,977,500			
소 프 트 웨 어	경영 지원실	POS 유지보수	2,000,000				미집행
		회계/인사급여 프로그램	2,000,000				미집행
	소프트웨어 소계		4,000,000				
총 계			25,370,000		83,542,500		



## 제4호 의안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5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1. 사업 보고 총평

○ 2023년 사업기조는 **조합원 건강자치력 향상**으로 정하고, 이 기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핵심전략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

핵심전략	세부사업	결과
나의 건강약속 (개인의 생활양식 요소)	▶ 조합원 주치의	• 지불제도개편을 통한 주치의 확대 논의 참여 및 기반구축(조직개편)
	▶ 건강생활실천하기	• 만성질환 건강반 • D-cafe(치매카페)
	▶ 민들레 건강강좌	• 건강검진 바로알기 • 구강관리 교육, 어르신 구강관리 • 한의사가 알려주는 한의학 이야기
서로의 건강약속 (사회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 건강반 확장	• 건강반 SDGs 연계
	▶ 조합원 활동	• 대의원 선진지 견학(안성) • 심폐소생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조합원 참여	• 조합원 사진·영상 공모전
공동체의 건강약속 (생활 및 사회·경제·문화·환경적 요건)	▶ 민들레 통합돌봄 유지·확대	• 주치의, 다학제, 조합원 중심 체계를 위한 조직개편(예정) • 유성지역 장애인 주치의사업 확대 • 양·한의학재택의료센터 참여
	▶ 민들레 돌봄활동	• 민들레 자원봉사/워크숍
	▶ 건강생태계 구축	• 한빛신협(소상공인 한방건강주치의) • 한살림대전(식생활센터 연계) • 공생, 한남대(마을공작소 모색) • 케이이어링(청력건강, 방문보청기) • (주)유알테크(낙상센서) • (주)온유(방문재활) • 사회적협동조합 담쟁이 (성인발달장애인) • 예자이 : 사회문제해결 • 예비 의료인, 돌봄인 학습

○ 우리 조합이 사명과 비전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하는 우리 활동의 기본지표이다. 조합원의 참여와 협동을 통해 비로소 아름답게 피어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6대 지표를 통해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

구분	조합원	출자금	건강리더	건강반		후원자조합원	자원봉사
목표	4,523세대 (120세대 증가)	15억원 (3천만원 증가)	336명 (30명 증가)	40개반 230명	5개반 80명	300세대 (37세대 증가)	연인원 250명 시간 500시간
결과	4,583세대 (180세대 증가)	14억원 (9천만원 감소)	339명 (33명 증가)	45개반 293명	4개반 89명	260세대 (3세대 감소)	연인원 219명 시간 515시간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은 의료사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매력이 얼마나 잘 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출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조합의 자산을 구성하는데 조합원 스스로가 얼마만큼 책임을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건강리더**는 스스로 자기 건강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건강·돌봄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역할하고 관계를 촉진하는 사람이다. 건강리더가 늘어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사회는 건강해진다. **건강반**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자조 모임으로, 나와 이웃과 마을의 건강자치력을 향상시켜나가는 소규모 건강생활 공동체이다.

**후원자조합원**(스스로조합비 조합원)은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조합원이다. 조합이 재정적인 안정성을 갖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자원봉사조합원**은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원으로 지속가능한 서로돌봄의 체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조합원**은 건강검진센터, 건강반, 의원·참선 순으로 가입자수가 높았다. 가입자 연령은 50~60대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의료기관 이용과 건강증진활동 등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용성을 기대한 지역주민의 가입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확대를 위해서는 진료권 내 지역주민의 건강수요와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다.

**출자금**의 증가는 조합원의 재정참여를 통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규사업에 따른 자금수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안정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원금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용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출자금과 후원금 외에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최근 ESG를 활용한 기업 후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우리 조합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리더**는 자강(自康), 지강(智康), 협강(協康) 등 다양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마을일자리로 안착시키기 위해 건강리더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지역사회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내부 운영역량의 한계로 해산의 위기에 있다. 건강리더협동조합과는 별개로 의료사협의 '건강리더'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고, 발전계획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건강반**은 조합과 조합원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 300여명의 조합원 및 지역주민이 건강을 주제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건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과 운영시스템이 어느정도 안정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성과측정, 지원방식 등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필요하다. 참여자의 평가, 지역사회 건강육구 등을 제대로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원자조합원 및 자원봉사조합원은 자발적인 운영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결정-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구조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하고, 새로워진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이고, 결정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원을 연결하는 등 지원구조를 통해 자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023년 사업기조와 3대 전략은 조합의 미션(자신을 돌보라, 서로돌보라, 공동체를 돌보라)과 같은 흐름에 있어 조합원의 활동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장기간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의료사협다운'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 '조합원 건강자치력 향상'이라는 기조의 배경이 되었다. 건강반, 건강리더, 자원봉사, 건강상담, 건강교육 등 조합원의 활동참여의 다양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체계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이해하고, 활동을 확장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재정적 참여(출자금, 후원금, 사업이용 등)와 의사결정 참여가 핵심이다. 일부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간담회, 건강반 운영평가 등 조합원들의 의사를 사업과정과 평가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이고, 확대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2023년 3월부터 상근 실무책임자(전무이사)가 선임되었고, 이사회와 경영관련 전문성을 지원하는 경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다. 상반기는 보건복지부 감사, 고용노동부 불시점검, 조합 상반기 감사 등을 통해 조합의 현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반기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등 현재 우리조합의 규모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고, 총회를 거쳐 주간보호센터와 연계한 사회적 돌봄 로드맵 마련, 지역건강조사, 조합원 성장지원, 조직개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일차의료센터와 지역사회의료센터는 급변하는 의료와 돌봄 정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각종 시범사업이 단편적으로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면 마다하지 않았다. 불완전한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고, 다듬어가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긴 하나, 협력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파트너와의 신뢰가 쌓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 한빛신협과의 소상공인조합원 한방주치의, (주)에자이와의 HIA, D-cafe, 대전엑스포로타리클럽과의 방문의료를 위한 휴대용검사기기 지원사업 등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들레 존재가치를 보여준다.

○ 20살을 넘긴 '청년' 민들레의 2024년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민들레의 존재가치를 재확인하고,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의 연결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의료·돌봄분야의 '혁신성'을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체계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을 넘어서는 의료협동조합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제25차 정기총회는 이것을 잘 실행하기 위한 준비(중·장기 발전계획, 조직체계, 자원배분 등) 과정이다. 가치와 경영, 혁신과 안정성 양립할 수 없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균형을 맞춰왔다. 한 쪽으로 치우치면 바로잡을 수 있는 유연성과 복원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청년' 민들레의 새로운 미래가 두렵지 않고, 설레는 이유다.

1. 설립이념 따른 2023년도 사업 실적

설 립 이 념
1.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b>협동조합</b> 으로서 생명과 평화, <b>공동체의 가치를 실현</b> 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b>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b> 을 펼쳐나간다.
3.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b>질병을 사전에 예방</b> 하는 <b>보건의료</b> 를 실천한다.
4.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b>건강한 생활공동체</b> 를 만들어간다.

①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조합의 존립과 지속 발전
  - 조합원 수 : 4,583세대
  - 출자금 : 1,409,370,000원
- 협동조합으로 운영
  - 총회(대의원) : 매년 개최
  - 이사회 : 매월 개최(정기이사회 9회 개최)
- 건강 자치력 향상 및 동네돌봄 활동
  - 건강반 활동, 건강리더 교육 및 취약계층 돌봄 활동
- 스스로조합비(기부금) 모금을 통한 재분배
  - 2023년 12월 기준 260명, 34,290,000원 모금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건강반 활동비 지원 등
- 연대활동 참여
  - 여성장애인연대, 발달장애인부모연대,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대전시민건강포럼, 노인장애인보조기기개발을 위한 열린플랫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네트워크) 및 협동조합 등에 출자, 회비 납부, 운영 참여 등

②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 환자권리장전을 준수하는 의료기관 운영
  - 의원 : 당뇨병 적정성 평가 '양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령  
방문의료, 만성질환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 한의원 : 환자 중심 진료, 교육(건강리더), 한의방문진료
  - 치과의원 : 환자 중심 적정진료, 예방치료, 예방교육, 방문구강관리 등
  - 검진센터 : 주치의제 지향(이용자 검진기록관리, 결과추적관리 등)노력으로  
<당뇨병 적정성 평가> 양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으로 가산지급 및 장려금을 수령
-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 조합원,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위해 주치의 진료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재활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 의료비와 상담료 및 보건예방활동 지원
-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의료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 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방문진료시범사업(의사, 한의사) 가정간호사업, 방문작업치료, 방문구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관련 상담 및 서비스연계
- 동네돌봄 사업 전개
  - 퇴원환자 통합돌봄사업(재가서비스, 방문의료, 영양, 심리지원, 일시보호 등)
  - 경증치매어르신 헬스케어서비스 사업(ICT활용 건강관리, 일상생활교육, 영양지원 등)
  - 사회서비스공급주체 다변화사업 (경증치매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
  - 대덕구 동네돌봄 시스템 및 체계 구축(협의회 및 실행단 참여)
- 조합원 및 지역사회 건강 및 돌봄 상담
  - 돌봄상담창구 운영
  - 만성질환 건강반 운영 / 민들레 건강학교 운영
  - 민들레꽃나눔반 운영(조합원 어르신들의 서로돌봄 활동)

③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 건강자치력 향상 활동
  - 건강반 활동 지원 및 건강리더 교육
  - 건강화폐 운영 : 조각통장 발행 및 조각 지급
- 맞춤형 건강교육
  - 장애인 체력측정 및 운동교육 진행(장애인체육회와 협력)
-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 언어, 시각, 지적, 발달장애인의 건강검진 및 치과 진료 실시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지원(신체적 보조 또는 타 기관 정보 제공)
  - 돌봄종사자 및 보호자를 위한 건강검진 안내
- 지역사회연계 보건예방활동
  - 금연상담(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협력), 행복상담소 건강상담,
  - 장애인건강반
- 취약계층 건강반 운영
  -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력증진 건강반 운영
  - 조각지급 및 건강수첩 작성

④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 주민 자치, 협동을 위한 민관협치 참여
  - 법1동 주민자치회(안전환경분과, 자치교육분과)
  - 대덕구 지역사회통합돌봄 협의회, 실행단 참여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체분과 참여(최중증발달장애인 예산 등)
  -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건강 및 민관협력분과 참여
  - 대덕구 및 유성구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참여
  - 대전광역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위원회 활동 참여
-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 건강리더협동조합 : 돌봄사업자금 확보 및 서비스 연계, 사업추진 자문 등
- 한발레츠 지역화폐 '두루' 통용

## 2. 정관에 따른 2023년도 사업 실적

### 1) 2023년도 전체 사업량 대비 주사업 비율 실적

<정관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구분			사업비(단위: 원)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총계(A)			3,972,787,307	3,848,065,137	
주 사 업	지역주민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의원·검진	1,749,164,588	1,817,956,565	
		한의원	256,076,742	282,413,302	
		치과	453,572,816	457,251,009	
		주간보호센터	663,130,044	467,437,086	
		지역사회의료센터	686,701,117	681,479,202	
		계	3,808,645,307	3,706,537,16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140,000,000	131,866,572	
		계	140,000,000	131,866,572	
	소계(B)			3,948,645,307	3,838,403,736
	기 타 사 업	조합원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교육훈련비	6,110,000	2,957,400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연대활동비	7,400,000	6,547,140	
조합 홍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업		홍보활동비	10,632,000	156,861	
소계		24,142,000	9,661,401		
주사업 비율 (C=B/A)			99.4%	99.7%	

2) 2023년도 주사업 실적

①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실적

<p>가. 의료시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치의료기반 의원, 건강검진센터, 치과의원, 한의원 운영</li> <li>○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어르신 총31명으로, 평균 26명 어르신 이용</li> <li>- 종사자는 총11명으로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 적정돌봄, 선택형 프로그램 등 운영</li> </ul> </li> </ul>
<p>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자치력 향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반 활동 지원 및 건강리더 교육</li> <li>- 건강화페 운영 : ‘조각’통장 발행</li> </ul> </li> </ul>
<p>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상담창구 운영</li> <li>- 통합돌봄사업 (경증치매어르신, 퇴원환자 통합돌봄)</li> <li>- 사회서비스공급주체 다변화사업 (경증치매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li> <li>- 만성질환 건강반 운영 (4개반, 80여명)</li> <li>- 민들레 건강학교 운영 (총7회차, 80여명)</li> <li>- 민들레꽃나눔반 운영 (주간보호센터 돌봄 및 환경가꾸기 자원활동)</li> </ul> </li> <li>○ 재가의료팀(지역사회의료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li> <li>- 방문진료,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작업치료</li> <li>- 장애건강주치의 서비스</li> <li>- 장애인 건강반 운영</li> <li>- 최종증발달장애인 가정지원</li> </ul> </li> <li>○ 취약계층 등 의료비 지원</li> <li>○ 비보험 진료비 5% 조합원 출자 할인</li> </ul>
<p>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연계 보건예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상담소 건강상담 (3회),</li> <li>-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교육 (직원교육1회, 조합원 교육 1회-7월)</li> </ul> </li> <li>○ 어르신 건강반 운영</li> <li>○ 건강리더 수료: 33명 수료</li> <li>○ 민들레 구강건강관리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구강건강관리 (재택의료,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자)</li> <li>- 주간보호 이용자 구강건강평가 및 교육</li> <li>- 조합원 및 장애인 대상 외래 구강교육</li> </ul> </li> </ul>

<p>마. 지역 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운영회의 참석</li> <li>-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념 마라톤대회 부스참여</li> </ul> </li> <li>○ 사회적인료기관협의회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활동(경민/ 매월 줌/현장 이회의참석)</li> <li>- 방문의료사업단 운영위원(월례회 및 운영위원 회의 참석)</li> <li>- 생애말기돌봄 교육 4회 참석</li> </ul> </li> <li>○ 한국의료사협연합회 보건의료인 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인연수 기획 및 참여</li> <li>- 방문/가정간호사 교육 참여(6/26-27 3명)</li> </ul> </li> <li>○ 방문의료연구회 활동 - 돌보는 의료세미나 참석</li> <li>○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과 현장실습 (3명*2회차)</li> <li>○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한 한국에이저이 HHC 사회혁신리빙랩 참여 (송직근 전무이사, 이경민 작업치료사)</li> <li>○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사회재활 위원회활동- 이경민</li> <li>○ 대덕구 방문진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후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li> <li>○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방문의료관련 연구사업 참여</li> <li>○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과 현장실습 (8명)</li> <li>○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힐링테라피' 수요처</li> </ul>
<p>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지역화폐 '두루' 거래</li> <li>○ 민들레의료사협 건강화폐 '조각' 발행</li> <li>○ 지역화폐협동조합 지역화폐 한밭페이 '드림' 사용처</li> </ul>
<p>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및 단체의 활동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 회의실 및 지하 공간 개방(법동건물)</li> <li>· 장애인 운동(매주 수)</li> </ul> </li> <li>-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 임대공간(중리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건강반 및 경총치매어르신 운동공간 활용</li> <li>· 어르신조합원 댄스스포츠 운동(매주 토, 배달강좌 활용)</li> </ul> </li> </ul>



### 3) 2023년도 기타사업 실적

####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조합원 및 직원 교육
  - 조합원 교육(건강리더, 구강교육 등)
  - 직원 법정교육(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지원 등
  - 신규직원 교육
- 심리상담 지원(유성구 꼬리머리 상담센터 연계)
  - 총 상담자 / 총 횟수 : 9명 / 71회
  - 조합원 : 3명

#### ②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 우리조합에 출자한 법인(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품앗이마을,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 총 출자금 4,600만원
- 우리조합이 외부 법인(협동조합)에 출자
  - 한국의료사협연합회 등 13개
  - 65,733,304원
- 회비납부 단체
  - 한국의료사협연합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전지부, 대전충남보건연대,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활동 참여 단체
  - 지역화폐협동조합, 건강리더협동조합 등
  -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 사회적의료기관협의회, 대덕구, 유성구 지역사회재활 위원회

#### ③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조합 홍보물 발행
  - 홈페이지, SNS, 의료기관 안내문 등 : 상시 홍보물 제작
  - 카드뉴스 발행
- 홍보 채널 관리
  - 카카오톡채널 가입자 목표 100명,
  - 가입자: 2023년 488명-> 2023년 545명 / 57명 증가, 57% 달성.
- 지역사회 협력
  - 장애인, 보훈대상자, 경총치매어르신, 퇴원환자, 상담 등 건강·돌봄 관련하여 26개 기관과 협력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의료비지원 대상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이민자 등
  -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예산 대비 23% 집행
  - 총 128건, 5,865,934원 지원
- 조합견학
  - 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택의료사협준비위원회,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무주 안성고등학교
  - 조합소개, 활동모습, 의료활동 참관

#### ④ 임대사업

- 옥상 증계기 임대
  - 주식회사 케이티 2,200,000원 / 에스케이텔레콤(주) 2,090,000원
- 기타 단체 공간 임대
  - 건강리더협동조합 50,000원
  - 사진동호회에 모임장소로 공간대여(격주 1회)

### 3. 2023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

#### 1) <일차의료센터> 사업평가

##### (1) 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의 료 서 비 스 사 업 목 표	의료 기기 관련	-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를 위한 장비 관리	- 의료장비 리스트 확인 업로드 (구입날짜, 수리, 충전)로 관리 체계화와 담당자 지정 관리 (산소통, 산소포화도, 초음파장비 등)	*담당자 지정관리로 장비사용 에 문제없이 관리 되고 있으며 매주 확인하고 있음
	진료 환자 관리	- 진료대기시간의 효율적인 관리  -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	- 만성질환 교육 동영상과 여행, 관광, 건강 등 다양한 테마별 시청각의 다양화로 대기 시간 자료 제공  - 대기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병원 순번 대기 시스템 설치  - 당일 진료환자 검사 처치 시 오더 확인 처치  - 처치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위한 분기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 소변 스틱 비치하여 필요시 사용	*만성질환에 관한 책자를 비치 하고있으며 대기시간에 읽을수 있도록 함  *순번 대기 시스템 활용 못함 으로 여전히 신뢰성 부족(본인 의 진료순서를 몰라 답답해하 심) -중간중간 구두로 안내함  *당일 검사처치 오더 확인후 처치로 정확한 검사가 잘되고 있음
	수익 창출 관리	- 매출목표 3%상승	- 의원 수입 구조 정확함을 위한 지역사회의료 센터와 매출 분리  - 일차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의 재등록 독려 및 확대	*의원과 지역사회의료센터의 매출 분리로 좀더 정확한 매출 을 알수있게 됨  *일차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 자의 신규등록 및 재등록에 대 해 소홀한 부분이 많아 좀더 집중적으로 독려 필요함
	조합원 관리	-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  - 조합원 가입(30명) 스스로조합원(5명)	-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 후 비조합원일 경우 조합에 관한 설명과 조합원 가입 안내  - 조합 관련 자료 비치하여 조합 홍보	*조합 관련 자료 부족으로 설 명드리기 어려운부분 있음.신 규 직원에게 조합관련하여 교 육필요함  *조합원 가입(27) 스스로 조합원(3) 조합원가입,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인력부족

(2) 검진센터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의료 서비스 사업 목표	의료 기기 관련	- 의료 장비 관리 시스템	- 의료장비 점검리스트 기록 관리 (구입일자/담당자/수리내역/수리비용 기록)	★★★★★ 업무공간에서 의료장비 점검리스트를 만들어서 작성하여 수리, 점검시 확인하는 시스템 안착, 검사시 불편함이 많이 감소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행으로 시스템 유지하기
	진료 환자 관리	- 대기시간 단축으로 검사 만족도 상승	- 채혈 후 주사 부위 지혈 안내 잘하기 - 연말 내시경 예약자 예약 시간 맞춰 진행 (소변 검사는 내시경 들어가기 전 확인) - 위/대장 예약 시 초음파 검사 여부 확인 - 검진 결과 발송 시 대변 검사 통보일을 검진 대장에 함께 기록 - 안내지로 구강검진 안내	★★★★☆ 채혈 후 지혈안내에 대한 인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인 방법 모색하고 15분단위 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대기시간 관리가 원활, 컴플레인 감소로 이어짐 대장내시경 검사자들은 초음파 예약이 진행되었으나 전화예약자들은 시간적인 어려움으로 진행 못하였다 연말 검진환자 증가시에는 구강안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 고민하기
	수익 창출 관리	- 매출 5% 목표	- 검진 후 추적 검사 대상자 관리 (초음파, 위, 대장, 간질환, 심비대 등) - 대장내시경 매일 3건 예약 (예약 취소 감소와 부부 취소 시) - 비수기 검진(2월/ 5월/ 9월)에 부가서비스 검사 진행(혈관노화도) - 대장암 검사 대상자는 대변 검사 (통+문진표) 안내 - 매월 셋째주 월요일 검진회의 시 내시경 건수 확인 - 신규 아파트 홍보 진행	★★★★☆ -추적검사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 하였으나 검사 중요성 인식부족 관계로 내원 이 많이 이루어진 않았다. -대장내시경 예약관리로 검사율 유지하여서 건수가 감소된 않았다 -매월 검진 회의 시 위내시경 건수 관리로 매월 검진 인원을 유지 하였고 검진구조와 인력 조건에서 더 많은 인원을 검사 예약하기 어려움이 있다. -신규아파트 홍보준비 미비로 진행은 못 했으나, 홍보자료 준비가 되면 대덕구 인근 신규 아파트로 확대할 예정
	조합원 관리	- 조합원 검진을 증대 - 조합원 친밀감 갖기	-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 하기 (업무공간에서 조합원 확인) - 조합원 가입 70명 /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10명 - 조합원 부가 서비스 (검진+대장내시경 검사 시 간영양제 수액 주사) - 조합원 호칭과 내원 시 감사 인사	★★★★☆ -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이 잘 이뤄져서 조합원 가입율로 상승되어지고 조합원대상 행사로 조합원 가입도 증가 되었다 -경제 불황으로 스스로조합원 안내에 대한 어려워서 진행하지 못하였다

(3) 한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의료 서비스 사업 목표	의료 서비스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시(ICT) 정확한 부위 실행</li> <li>- 신뢰도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장비 매주 화요일 ICT, IR 장비 점검 / 점검 관리 리스트 작성</li> <li>- 핫팩 온도 체크</li> <li>- 뜸 치료 시 화상 유의</li> <li>- 습부 처리 후 주의사항 안내</li> <li>- 텐스 --&gt; ICT 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시행 했음.</li> <li>- 7번 배드 벽 도배완료 후 ICT 교체신청 예정</li> </ul>
	진료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방식, 비용에 대한 불만 줄이기</li> <li>- 진료대기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li> <li>- 한약 상담 환자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진 환자와 주말(토요일) 진료 시 진료비 설명</li> <li>-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li> <li>- 진료대기 시간 활용 (발마사지, 동영상 시청, 한의원 및 조합 홍보물)</li> <li>- 처방 배송 후 복약에 대한 안내 전화</li> <li>- 녹용 처방 한재 이상 환자 한방파스(1세트)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시행 했음.</li> </ul>
	수익 창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00만원 / 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적절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li> <li>-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냉·난방 25도 유지)</li> <li>- 퇴근 시 점검으로 안전 생활화</li> <li>- 설날, 어버이날, 추석 공진단 할인 행사 (조합 홈페이지, 조합원, 환자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진료비:대략2,300만원</li> <li>- 7월 한여름 공진단 할인 행사함 (7/1 ~ 7/8) (33세트 판매함)</li> </ul>
	조합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가입 12명</li> <li>-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2명</li> <li>-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원 환자에게 조합 정보 제공 및 홍보 (대기 시간 활용)</li> <li>-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 후 신규 조합원 가입 안내(비보험 상담 시 조합 가입 권유)</li> <li>- 라포 형성 후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가입 19명 가입함 (달성률 158%)</li> <li>- 스스로조합원 1명 가입함 (달성률 50%)</li> <li>- 조합원 증자 1명</li> <li>- 조합원 가입 후 공진단 첫 구매 시 조합원 10%, 스스로조합원 15%할인 행사 진행, 조합원 가입 4명</li> </ul>

(4) 치과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의료 서비스 사업목표	의료 기기 관련	- 노후 의료 장비 교체 - 진료 환경 개선	- 상담실 모니터 교체 - 자외선 소독기 교체 - 진료실 안쪽 환경 개선	★★★★★ 보수공사이후 깨끗하게 관리 냉난방기 청소 필요 배관의 노후화로 올라오는 악취를 해결 필요 공기순환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 필요
	진료 환자 관리	- 정기적 치주관리를 통한 잇몸질환 예방 - 스켈링 & RP: 100건/월 - 임플란트환자 관리	- 진료환자 정기 검진과 리콜 문자 발송 - 임플란트 환자 정기적 관리를 위한 문자 발송 - 스켈링 후 차트에 담당자 기록과 환자 상태 기록하여 내부 공유	*스켈링&RP 치위생사 인력감소에도 불구하고고월114건으로 목표달성★★★★★ -스켈링(월평균71건) -RP(월평균42건) 1월(49/32) 7월(79/47) 2월(80/34) 8월(89/48) 3월(63/54) 9월(61/42) 4월(59/30) 10월(81/63) 5월(66/31) 11월(69/53) 6월(68/31) 12월(97/45) *정기검진은 6개월마다 예약문자전송하고 있으며 리콜주기에 따라 예약문자 전송
	수익 창출 관리	- 월수입 4,500만원 - 구강검진 창기(연500건)	- 진료 시 구강검진도 안내 - 구강검진 환자 진료로 이어지도록 하기 - 비수기(봄, 가을)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연 1회 보험 치석 제거 알림 문자 발송	★★★★ - 구강검진 연340건(68%)달성 월수입 4,030만원  ★★★★ 인력구성원변경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 불구하고 목표치90% 달성
	조합원 관리	- 조합원 유무 확인하기 - 조합원가입 10명 - 스스로조합가입 2명	- 접수, 수납 시 조합원 확인 후 신규 조합원 가입 안내 - 신환인 경우 조합원 유무 확인하여 조합원인 경우 내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멘트 하기	★★★★ 조합원 가입 목표 10 달성 8 / 달성률 80% 스스로조합원 목표 2 달성 1 / 달성률 50% 출자금적립에서 할인으로 변경된 후 조합원 가입자 증가

2) <지역사회의료센터> 사업평가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3년 방문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2023.01. ~ 2023.12.

사업개요

o 목적

-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건강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시스템 만들기

o 주요사업내용

- 대상: 재가 및 시설의 거동 불편자 (장애인, 어르신, 수술 후 퇴원환자, 기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병원 내원이 힘든 환자), 지역사회 의뢰 대상

구분	목표	2023년 성과목표	상반기 건수	기타
방문진료 (*동반수가포함)	왕진, 가정간호 및 작업치료 서비스를 팀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	연 300건	254	35,262,860원
가정간호(가정)		연 3000건	1507	217,856,544원
가정간호(시설)		연 1,300건	868	
방문작업치료		연 50건	10	재택사회복지/OT 88건
재택의료센터		70명(연 관리 인원)	50명	의사:178 간호사:426 사회복지:108 27,085,800원

- 내용: 의료접근이 불편한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서 의뢰받은 대상에게 다학제 팀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 매출목표: 4억 5천만원 (상반기매출:280,205,204원)

o 추진목표

o 추진전략

- 1)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홍보 및 활성화
- 2) NECA 환자 중심 방문의료 연구 사업 참여-->
- 3) 호스피스 및 가정임종을 위한 팀원 교육 (사전연명의료제도 등)
- 4) 당사자 중심의 복약관리 (약달력, 약포지 등을 활용하여 복약순응도 향상)
- 5) 발관리 등 민들레 특화 방문의료서비스 지속
- 6) 마이차트 자체시범사업 시행 (환자, 보호자, 돌봄제공자 및 의료진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차트)

사업평가

구분	23년 성과	24년 목표	비고
방문진료*1	787건	900건*2	- 지역사회의료센터(센터장, 박지영 원장-> 신현정원장 9월)는 가정전문간호사 4명, 방문간호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의사가 휴일 및 시간 외 근무해서 달성한 성과임. *2: 의사 1인 추가 구인한 경우의 목표 *3: 작업치료사겸 사회복지사가 재택 사회복지사로 방문한 건수 포함
가정간호(가정)	5,129건	5,200건	
가정간호(시설)	1,731건	2,000건	
방문작업치료	41건	50건	
재택의료센터	86명	100명	
(재택) 방문간호	1,222건		
(재택) 사회복지*3	142건		
유성통합돌봄 간호	128건		

매출성과는 2022년 444,253,550원에 비해 2023년에는 662,538,704원으로 큰폭 상승함.  
 (방문진료 ₩111,866,650/가정간호 ₩468,054,454/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 ₩77,147,600/유성통합돌봄 간호 ₩5,460,000) 등 의사 1명 추가, 다양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적극 제공한 결과로 보임.

- 지역사회의료센터의 서비스는 민들레의원 원장단 전원을 기본으로, 의원과 협력하여, 의료적인 요구도가 높은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22년 12월부터 대전에서 유일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받아 70명 등록관리를 목표로 하였으나, 86명을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음.

- 2023년에는 대전시 전체에서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더 증가하여, 3월에 유성구 담당 방문간호사를 1명 추가 구인하였고, 2023년에 하반기에 추가로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로 더 구인하여, 방문의료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함, 의사도 1명을 추가로 구인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음.

-2023년 하반기부터는 대덕구, 유성구와 협력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영향으로, 지자체에서 의뢰된 사례들이 늘어서, 의사 추가구인을 하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사, 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사, 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

- 병원이동이 어려운 폐질환이 있는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서 복십의의원과 이동식x-ray 촬영 등의 진단검사 및 협진을 하는 등 지역의 의료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을 하기도 했음.



대덕구 방문진료지원사업 업무협약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청진기로 의사소통하시는 어르신과 나준식 원장)



방문진료 (박지영 원장)



방문진료 욕창치료 (박지영 원장)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3년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지역사회재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2023.01. ~ 2023. 12..

**사 업 개 요**

**o 목적**

- 장애인의 질병예방 및 치료, 활동과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o 주요사업내용**

- 대 상: 중증 장애인
- 내 용: 주치의 팀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에 대해 지속적,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방문 및 내원, 검진, 전화나 SNS 상담, 건강반 활동,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의 건강관리)
- 목표매출: 1.6억

**o 추진전략**

- |                                      |                            |
|--------------------------------------|----------------------------|
| 1) 장애인 건강검진,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 지속 독려 및 연계 | 2) 예방접종 지원                 |
| 3) 만성질환 교육 등록 및 시행 (정신장애인 중 비만관리 그룹) | 4) 복약 관리 (약달력 활용)          |
| 5) 발 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행                | 6) 평생교육, 스포츠, 취업 연계        |
| 7) 장애인에게 듣는 조합원과 직원 교육 기회            | 8) 우울증 관리 필요 (PHQ-9 시행 고려) |

<2023년 계획>

- 유성구, 대덕구보건소 지역사회 재활담당자들,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를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장애인 건강 및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

**사 업 평 가**

2022년말 누계 등록 인원 272명, 매출성과는 1.6억이었으나, 2023년 말 현재 누계 등록인원은 363명(사망자 포함)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194명으로 2.3억 (2023년 ₩231,244,870)의 매출성과를 보임.

구분	목표	2023년 성과	2024년 목표?
방문진료	중증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향상	567+181(유성) 748건	800건
방문간호		1,020+301(유성) 1,321건	1,500건
방문작업치료		249건*	300건
장애인건강반		실시(148회)	주1회 이상
장애인체력인증		2회	2회

2023년에는 유성구 대덕구 보건소 지역사회재활 담당자들,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를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몇 사례를 공유하는 정도의 협력만이 이루어 짐.

반면, 2월 유성구장애인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3월부터는 유성 담당 의사 2명(신현정, 허애령), 간호사 1명(김순미)을 중심으로 70명 정도 추가 등록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성과를 보임.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장애인 건강 및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에는 몇 사례를 의뢰받아 장애인건강주치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정도로 진행함.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관리를 기본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을 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이 내원하여 건강검진, 치과검진 등을 받도록 지원하였고, 수급자 독감이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지원을 했음.

“민들레 예쁜 발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발 관리가 어려운 뇌졸중, 당뇨, 신장투석, 시각장애인등의 피부무좀, 발톱 무좀, 발 상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음.

대전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장애인건강반을 직접 운영하면서 운동하고 사회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딴 당사자에게 배우는 태극1장 교실을 운영해보기도 하였음.

충남대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협력하여 최중증 와상장애인이 방문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활 동 모 습**



**유성구장애인복지관\*민들레의료사협 업무협약  
23.2.8 (수)**



**유성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본격화  
23.3~12.**



**장애인체육회\*장애인건강주치의  
매주 수요일 운동**



**건강의 달인\*미국USC 작업치료학과 학생 견학 및  
국제 교류 23.3.29(수)**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3년 가치기반 지역사회 연대활동	자체	2023. 1. ~ 2023. 12. (12개월)
<b>사 업 개 요</b>		
<p><b>o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건강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연대</li> </ul> <p><b>o 주요사업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및 연대활동,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습 지도, 공동체학습, 시민참여 등을 기획 진행한다.</li> </ul> <p><b>o 추진전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스로 학습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연명의료제도, 발달장애 커뮤니티케어, 치매서포터즈,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한 학습</li> </ul> </li> <li>2) 학습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센 내부에서 매월 학습하고 나누기</li> <li>- 작업치료 전공학생, 노인전문간호사 실습지도</li> <li>- 외부 강의, 발표, 방문의료 저서 공동 집필</li> </ul> </li> <li>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여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상담소,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참여</li> <li>- 최종증발달장애인지원,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li> </ul> </li> </ol>		
<b>사 업 평 가</b>		
<p><b>o 사전연명의료제도,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건립, 통합돌봄과 양한방 방문진료의 역할, 생명지킴이 교육, 건강과 재활 관련 정보에 대해 스스로, 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하면서 학습함. 특히, 사회적인료기관연합 방문의료사업단의 월례학 습모임에 참석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함.</b></p> <p><b>o 의료시험 연합회 등과 함께 의사, 의대생을 위한 강의, 작업치료 및 간호학 전공 학생을 위한 실습교육, 방문의료 동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음.</b></p> <p><b>o 의료시험연합회가 주최한 다학제 한의방문진료 활성화사업에 참여하여, 8월부터 한의 방문진료를 시작하였고, 대덕 구 지원으로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을 인정 받아, 2024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한방 모두 재택의료의료센터로 지정받게 됨. 또한 한발신평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조합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어부바주치의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면서, 조합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함.</b></p> <p><b>o 민들레치과와 협력하여, 조합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잇솔질 교육을 기획 진행하고,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월1회 이상 방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와 가족, 보호자의 구강건강 개선에 기여함.</b></p> <p><b>o 2023년에는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민들레의료시험 내의 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어이재이의 지원을 받아, 최종증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생활을 위해서 AI 스피커, 비상벨 설치 등의 지원을 실시함. 장애인 당사자, 작업치료 실습생, 민들레 방문의료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탐색함.</b></p> <p>2023년 지원금 및 실습지도비: 7,560,000원 (다학제한의방문사업₩6,600,000원, 작업치료 실습지도비₩960,000원)</p>		

구분	목표	성과	비고
1. 행복상담소	6회	- 6회 건강 상담 진행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대덕구청신건강복지센터와는 동네마음이음사업,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23/8/1.화)
2. 지역사회 문제해결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	최중증 와상 장애인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한 해결책을 탐색 및 제공 (돌봄 리빙랩)	한국에이사이*민들레*
3. 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분야 “열린플랫폼”	-	-노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 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적용	예> 검진 앞 의자
4. 대전 장애인보건의료/복지를 위한 민관협력 및 연대활동	-	-대전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지역사회재활(대덕구/유성구) -동구, 대덕구 민관협력: 통합사례,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참석	*장애인건강주치의 회의 *대덕구 보건소/구청 회의
5. 대전 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12회	- 연대협력 운영위원회 회의 연 12회 - 연대포럼 및 워크숍 기획 참여 23. 1.13 (금)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공부모임 23. 2. 23(목) 정책토론회 대전시민 건강의 기준, 대전의료원을 그린다. 23.10.23 (월) 통합돌봄과 방문의료	
6. 사회적인료기관연합(사익련)		- 매월 운영위 참석 - 사익련 방문의료사업단 월례 학습모임 - 일본 민의련 70주년 행사참여 (23. 8.) - 제5회 한국사회적인료기관연합회 학술대회 참가 (4명) “	
7. 한국의료사협연합회 보건의료위원회	-	• 상반기 보건의료인연수회: 의료사협 협동의료인교육 23. 4. 29. 안성의료사협 • 일차의료 의대생/간호대생 방문의료 동행 (의료사협)- 순천향대, 중앙대 등 • 연합회 간호사교육	
8. 지역사회보건의료인력 양성-실습, 견학, 자원봉사	-	•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생 실습 6명 (6~8월) • 충남대노인간호학 전공 학생 실습 • 상명대 간호학과 실습 지도 3명 (12월) • 사익련 방문의료사업단 월례학습모임 • NECA 연구모임 (월1회) • 미국USC대학 작업치료학과 학생 견학 (3.29) • 강원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및 학생들 견학 (11.16~17)	
9. 외부 강의/발표	-	• 대전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연수 (12/13 나준식 원장 및 장주사팀)	
10. 장애인단체 연대 및 후원		- 여성장애인연대 후원 - (사)토닥토닥 기적의마라톤 후원 및 부스행사참여. 4. 22(토) / (사)토닥토닥 여름 물놀이 캠프 보건안전지원 및 후원	

활동 모습



한국에이사이\*한국리빙랩네트워크\*소이랩\*민들레장주사  
돌봄리빙랩네트워크 발표회 23. 7.



대덕구청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킴이 마음이음사업 교육" 23. 8.1. 화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민들레의료시험  
(사) 토닥토닥 물놀이지원 23. 8.12. 토.



민들레치과\*장애인건강주치의 잇솔질교육  
23.6.14. 수





민들레치과\*재택의료시험사업  
방문 구강건강관리



한빛의료시험\*민들레한의원 소상공인조합원을 위한  
어부바건강주치의사업 23.11.

3) 통합돌봄사업본부

(1)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사업평가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만성질환건강반	자체	2023.03. ~ 2023.12.
<b>사업개요</b>		
<p>o 목적 건강취약계층(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의 건강반 활동을 통한 건강자치력향상 및 관계돌봄 실천</p> <p>o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360만원+200만조각 (하반기 예산은 평생학습사업 활용 예정) -서비스대상 :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건강반을 통해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65세이상 노인 80명 -내용 : 건강반 참여 어르신들의 신체기능검사와 건강상담을 사전,사후 진행하여 건강반활동을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3월~6월(상반기) 12회, 9월~12월(하반기) 12회</li> <li>▪ 운영방법 : 건강반(총5개반_1개반 15인 이내 구성)별 건강리더 신체활동 주1회 지도 및 조각 1,000원 지급</li> <li>▪ 운영절차 :</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조합원가입 및 건강반신청서 작성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SPPB(간단신체기능검사) 및 건강상담 진행_사전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건강체조, 스트레칭, 세라밴드 운동 주회 실시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SPPB(간단신체기능검사) 및 건강상담 진행_사후                 </div> </div>		
<b>사업평가</b>		
<p>-<b>성과평가</b> : 어르신들의 건강반 활동을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 건강반에 참여한 어르신 총78명 중, 42명 어르신들에게 SPPB(간단신체검사) 사전, 사후검사 진행한 결과 정적균형, 보행속도, 일어서기 등 전체적으로 2% 향상되었으며 신체나이가 젊어지고, 노쇠지수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의 성과를 보았음.</p> <p>-<b>과정평가</b> :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자치력향상 및 관계돌봄 실천 건강반활동을 통해 체력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과 상,하반기 총24회 근력운동 및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어르신들이 '몸이 가벼워졌다, 손과 발을 움직이기 수월해졌다, 혈압관리에 도움이 된다, 아는 얼굴이 생겨 좋다' 등 만족도가 높아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하여 상반기 60여명에서 하반기 80여명으로 참여자 수가 증가함.</p> <p>-<b>총괄평가</b> : 23년 건강반사업은 참여 어르신들이 모두 조합원에 가입하고, 참여자 수가 증가하면서 민들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진 한해였음. 또한 건강반 활동이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주관적,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24년도 건강반 활동을 계획 예정임.</p>		
<b>활동모습</b>		
		
신체기능 검사	운동(세라밴드)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학교	자체	2023.07. ~ 2023..08.

### 사업개요

o 목적

만성질환 건강반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자치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제공

o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48만조각 (교육강사 : 지역사회자원, 민들레 임직원 및 조합원 활용)

-서비스대상 : 건강반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80명

-내용 : 건강반 어르신들과 '건강학교' 운영을 함께 기획하고, 노인의 건강 및 보건, 노인복지, 일상생활, 사회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과정 진행

■ 운영시기 : 건강반 방학기간 7월~8월, 총6회 진행

■ 운영방법 : 건강반 어르신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교육을 설계하고, 교육별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제공, 교육 수강시 1,000조각 지급

(예: 지역사회서비스 알아보기, 마음건강, 영양밥상, 응급상황대처방법, 치매지킴이, 기후위기 등)

### 사업평가

-성과평가 : 어르신들의 건강자치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제공 (★★★★★)



총7회에 걸쳐 운영한 건강학교는, 1회는 '알아두면 좋은 지역복지서비스', 2회는 '기후위기&나도 지구도 건강한 여름나기', 3회~6회는 치매교육&알로하하하(홀라춤배우기), 7회는 소통과 공감 내용으로 총19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음.

-과정평가 : 지역에서 건강을 지키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료, 돌봄서비스 등을 교육하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마련함. 몰랐던 의료서비스와 정보, 치매안심센터 역할, 하와이 전통춤 홀라춤을 배우는 등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게 되어 관련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적용하여 건강자치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맞춤.

-총괄평가 : 23년 처음 시행한 건강학교는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면 24년에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학교 주제를 구성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실천해보는 방법을 구상하고자 함

### 활동모습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꽃 나눔반	자체	2023.02. ~ 2023.12.
<b>사 업 개 요</b>		
<p>o 목적 건강반 참여 어르신들의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서로돌봄을 실천하여 촘촘한 돌봄관계망 형성, 자원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p> <p>o 주요사업내용</p> <p>-총사업비 : 없음.</p> <p>-서비스대상 : 민들레꽃나눔반 어르신 50여명</p> <p>-내용 : 안부확인 및 장보기, 병원동행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돌봄활동을 하거나,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송영안내, 식사도움, 말벗, 프로그램운영시 활동지원 등)</p>		
<b>사 업 평 가</b>		
<p>-성과평가 : 건강반 어르신들의 자원활동참여 (★★★☆☆) 건강반 참여 어르신 중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자원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자원활동 신청을 받아 총3명의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에서 화분가꾸기, 어르신 케어지원 자원활동을 진행하였음.</p> <p>-과정평가 : 자원활동을 통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이해로 편견이 없어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여 어르신들이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홍보하는 성과를 가져옴. 또한 집에만 있어 무료하던 일상이 자원활동을 하면서 활기를 찾고, 활동 자체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심.</p> <p>-총괄평가 : 나눔반에서의 활동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자원활동으로 국한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기에 부족하였음. 24년에는 민들레 사업 중 참여할 수 있는 자원활동을 다양하게 발굴 할 필요를 느낌.</p>		
<b>활 동 모 습</b>		
		
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	환경개선활동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헬스케어서비스	대덕구/한국에자이(주)	2023.03. ~ 2023.12.

**사업개요**

o 목적  
치매등급 외 경증치매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및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질 향상 및 돌봄환경조성

o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7,000만원 (대덕구 4,000만원, 한국에자이(주) 3,000만원\_인건비)

-서비스대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어르신 30여명

-내용 : 건강 및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따른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ICT활용 COGMATE검사, SPPB검사, ADL, IADL검사)	*신체건강서비스 (1:1또는 그룹, 맨손체조 및 근력운동)	*인지건강서비스 (1:1또는 그룹, 두뇌활성화작업)	*심리건강서비스 (그룹, 우울예방 집단상담프로그램)	*공동체프로그램 (관계향상을 위한 소통프로그램)
---	--	------------------------------------	------------------------------------	----------------------------------

-한국에자이(주)의 ICT솔루션을 활용하여 신체, 인지건강서비스 제공(건강리더협동조합)

**사업평가**

-성과평가 : 지속적인 인지활동을 통한 인지저하예방 (★★★★☆)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65세이상 어르신 총33명의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Cogmate(뇌건강측정) 검사와 함께 건강상태, 돌봄상태 등을 포괄평가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인지건강 관리서비스를 진행. 건강리더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ICT를 활용하여 인지강화게임과 신체테스트결과에 따른 맞춤형 근력강화운동을 제공함.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의 92%가 서비스를 계속 받길 희망하고 만족하였으며,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음.

-과정평가 : 서비스 참여자 대부분이 1인 가구로, 활동이나 가족관계 등이 단절되어 외부 왕래가 없다 보니 우울감을 갖고 있음. 건강리더가 정기적으로 주2회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고, 건강을 체크 해주면서 다양한 인지활동과 운동을 함께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줌.

-총괄평가 :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지자극활동이 필요한데, 공부와 반복학습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면서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도포기하는 참여자가 있었음. 흥미를 유발하는 인지활동도구 개발이 필요하고, 외부활동 서비스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낌.

**활동모습**



ICT활용 인지저하예방활동 방문



치매예방교육(하와이 전통춤 배우기)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대덕구	2023.03. ~ 2023.12.

### 사업개요

○ 목적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유지

○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2,000만원

-서비스대상 : 대덕구민으로 의료기관 퇴원환자로 자립생활기능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 50여명

-내용 : 2,3차병원 및 요양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퇴원시 단기간 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유지에 도움을 줌.

-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 방문의료서비스(왕진, 가정간호)
- 일시재가돌봄서비스(일상생활지원)
- 영양식사지원서비스(반찬도시락, 환자식사대용간편식)
- 일시보호서비스(요양병원 한달 입원을 통한 재활 및 치료)

### 사업평가

**-성과평가 :**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

고관절 수술, 암수술, 무릎수술 등 퇴원 후 자립생활유지가 어려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물리치료)서비스, 심리상담, 환자영양식(뉴케어)제공,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함. 총33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복귀가 가능하고 재입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갖음.

**-과정평가 :** 고관절 수술 후, 집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던 어르신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물리치료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계단오르기가 가능하여 외출이 가능해지는 등 방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또한 수해로 인해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암수술 환자에게 일시보호서비스를 연결하여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받으며, 대덕구와 협력하여 집을 수리하고 환경을 재정비하여 한달 후 집으로 복귀가 가능해짐.

**-총괄평가 :** 수술 후, 집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정과 지역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자립생활기능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10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웠음. 24년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서비스를 제공예정임.

### 활동모습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리더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자체	2023.01. ~ 2023.12.

### 사 업 개 요

o 목적

건강리더협동조합 자립역량 구축을 위한 돌봄사업 자금 확보 및 사업추진실무 자문

o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없음.

-서비스대상 : 건강리더협동조합 (2020년 5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창업지원했으며, 인큐베이팅 3년차)

-내용 : 돌봄사업자금 확보 및 서비스 연계, 정기실무회의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실무 자문

- 돌봄사업 : (대덕구) 틈새돌봄, 퇴원환자돌봄, 경증치매어르신 돌봄사업
- 건강반 운영 : (민들레) 주1회 건강체조 및 세라밴드 활용 운동지도, 조각통장관리

### 사 업 평 가

-**성과평가** : 대덕형 마을돌봄 사업추진을 통한 자립역량 구축 (★★★★★)

23년 대덕형 마을돌봄사업 일시재가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24명의 건강리더가 활동하여 총7,6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95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함.

또한 다른 돌봄제공기관에서 꺼리는 주말/공휴일에 틈새돌봄을 제공하여 지자체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건강리더쿵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얻게 되었음.

-**과정평가** : 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돌봄 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를 영입하여 운영하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무 역량 마련을 위해 월1회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 진행

-**총괄평가** : 건강리더쿵은 3년동안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성심성의껏 제공하고 건강반 활동에 대한 소개와 운동방법 등을 교육 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 건강리더쿵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음. 하지만 공적서비스 외에 자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임.

### 활 동 모 습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주간보호센터 홍보 및 입소자 발굴	자체	2023.02 ~ 2023.1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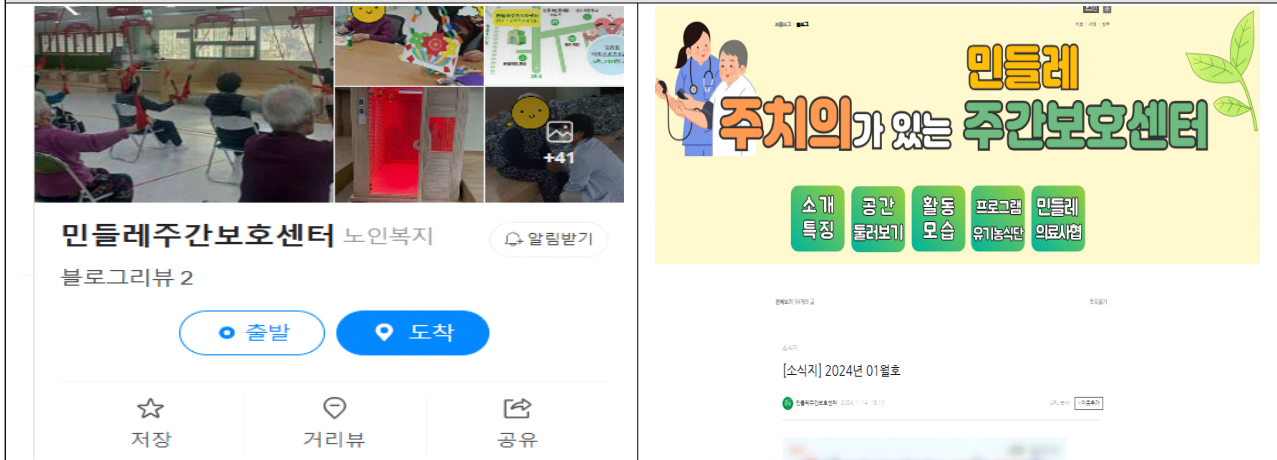
o 목적  
 민들레주간보호센터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알려 입소자로 연결

o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100만원 (드라마 제작비용)  
 -서비스대상 :  
 민들레 조합원,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대덕구 지역주민, 연대협력기관  
 -내용  
 1. 온라인 홍보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개설 및 관리, 뉴스레터 제작, SNS게시, 주간보호 블로그 관리, 조합원 홍보  
 2. 홍보 드라마 제작  
 : 조합원 출연 드라마 2탄 "슬기로운 주간보호센터 생활"(가제) 제작 및 상영  
 3. 입소자 발굴 및 상담  
 : 인근지역 경로당,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방문 홍보, 입소 예비자 리스트 발굴 관리  
 4. 기타 운영지원  
 : 견학 및 외부기관 협력

**사업평가**

-주간보호센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및 블로그 개설하여 온라인 홍보 진행  
 -4월 실무자의 부서 이동으로 이후 사업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진행됨.

**활동모습**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주간보호센터 자원활동가 조직운영	자체	2023.03. ~ 2023.12.

### 사 업 개 요

o 목적

자원활동가를 조직하여 주간보호센터 활성화를 꾀하고 활동하는 조합원을 확대한다.

o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100만원+100만조각 (자원활동가모임 및 자원활동가대회 개최비용)

-서비스대상 :

민들레 조합원(대의원), 건강반어르신, 지역주민 \*노인일자리 8명 확보

-내용

1. 자원활동가 조직 및 관리

1) 모집 홍보 : 조합원(대의원)문자, 홈페이지, 카톡채널, 의료기관 게시판, 1365사이트 등

2) 모집 분야 : 돌봄(송영안내 포함) 20명, 프로그램강사 10명, 방학기간 학생자원활동

3) 자원활동가 관리

: 신청서 접수, 1365등록 및 시간 인증, 업무 배치, 조각 지급관리, 자원활동 주간보호센터 게시판 게시

: 기초, 심화 단계별 교육 진행, 성과보고서 발간(3년차)

: 자원활동가 모임운영, 자원활동가대회(워크숍) 개최

: 자체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 및 자체 규정 준비마련

2. 보상 체계

: 1365사이트 시간인증 등록, 건강화폐 조각 1시간 1,000조각 부여, 우수자원활동가 시상(대의원총회)

### 사 업 평 가

-상반기 자원활동가 모집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3월) : 총3차 기본교육, 상반기 활동인원 19명, 총 375시간 자원 활동.

-4월 실무자의 부서 이동으로 이후 사업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진행됨.

### 활 동 모 습



(2) <주간보호센터> 사업평가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자체	2023.01. ~ 2023.12.
<b>사업개요</b>		
<p><b>o 목적</b>                      민들레주간보호센터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위해 주치의 진료와 더불어 통합적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고목에도 새 잎이 돋듯이 어르신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일으키고, 민들레가 씨앗을 날리듯 활기차게 변화된 일상이 되도록 한다.</p> <p><b>o 사업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확보를 통한 사업 안정화</li> <li>- 주치의를 통한 보건과 복지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li> <li>- 개인별 맞춤 재활 서비스 제공</li> <li>- 수급자의 인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li> <li>- 수급자가 주체가 되는 적정 돌봄 서비스 제공</li> </ul> <p><b>o 총사업비</b>                      1,053,969,600원                      - 수익 발생 시점 : 수급자 월 평균 이용 인원 : 35명</p> <p><b>o 목표 인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 25명</li> <li>- 하반기 : 45명</li> </ul> <p><b>o 사업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운영 :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li> <li>- 환경 및 안전관리 : 정보관리, 위생 및 감염관리, 시설 및 설비관리, 안전관리</li> <li>- 수급자 권리보장 : 수급자 인권보호 및 선택 존중 활동</li> <li>- 급여제공 : 신체활동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기능회복 훈련</li> </ul> <p><b>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운영 :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인적자원관리, 조합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li> <li>- 환경 및 안전관리 : 철저한 위생 및 주기적인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설비 관리,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li> <li>- 급여 제공 : 위생적인 급여 제공, 수급자 권리 보장,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 제공, 수급자 선택권 존중 프로그램 제공, 한살림 식자재를 이용한 건강한 식사제공</li> <li>- 홍보 : 입소 예정자 리스트 집중 관리, 운영지원팀 지역사회 방문 홍보(경로당, 복지관 등), 1차 의료기관 거점 홍보(현수막 설치, 영상 상영), 블로그 관리, 조합원 대상 홍보</li> </ul>		

## 사업평가

### ○ 기관운영 (★★★☆☆)

- 1) 2023. 12월 기준, 입소등록인원 40명, 종사자수 11명으로 점차 안정적인 운영구조로 가고 있음.
- 2) 총사업비 5억1천만원 지출, 법인전입금 의존도 30%
- 3) 교육관리 : 종사자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신규입사자교육 등 분기별 관리. 교육훈련비 지원 및 연말 워크숍 개최로 의견공유 단합 꾀함.
- 4) 회계관리 : 4월부터 회계관리자 배치되어 w4c프로그램 활용, 수입지출 관리.

### ○ 환경 및 안전관리 (★★★☆☆)

- 1) 초기 낙상사고 대응 미흡, 이후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낙상예방 수시 교육,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제작함.
- 2) 화재재난 대응 : 대덕소방서 연계하여 대응훈련 연2회, 화재대비 출입구 자동개폐장치 설치함, 화장실·목욕실·체육공간 3곳에 안전바 추가설치함.
- 3) 코로나19감염시 철저한 소독과 격리와 조기대응하여 감염자 최소화.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상화함.
- 4) 소방시설 점검 및 시설 관리 : 매월 소화경보·피난설비 점검(연 12회), 시설 보수 및 하자확인 간단한 하자보수를 실시함

### ○ 수급자 권리보장 및 급여제공 (★★★☆☆)

- 1) 소통노력 : 소식지, 보호자회의  
매월 소식지 제작(연12회) 정보제공, 참견과 연계하여 연 2회 보호자회의 및 치매카페행사로 보호자 만족도 향상.  
매월 신체기능·인지기능·사회적응·가족지지 프로그램 정기적 제공. 어르신 존중의 선택형 프로그램 도입 진행함. 신규종사자 급여제공 교육 및 케어포 사용 교육진행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함. 케어포 보호자업 공지(월1회) 및 사진등록(주1회), 기타 소식 전달.
- 2) 수급자 급여제공 관리
  - '케어포 보호자업프로그램' 도입 후 보호자 소통 및 수급자 일상 관리. 케어포 메뉴와 기능이 다수 있어 전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 필요함.
  - 어르신 기초평가 및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실제이용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은 보완 필요.
  - 신규 요양보호사 케어포 사용교육 진행, 수급자 급여제공 관리에 원활히 사용, 태블릿보다는 휴대폰 사용중.
- 3) 프로그램 운영
  - 매월 신체기능, 인지기능, 가족지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 운영함
  - 매일 아침 건강체조 시행, 매주 전문강사 활용하여(맷돌체조, 실버튼튼운동, 실버인지향상운동,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감. 프로그램 안정화 70%. 선택형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으나 입소자의 관심도는 떨어짐.
- 4) 작업치료 (★★★★☆)
  - 개인맞춤형 : 연간 총 61명 주2회 작업치료 제공함, 61명중 5명은 센터등록 이후 센터이용을 하지 않거나 일주일 이내 퇴소하여 진행하지 못함. 어르신 입소하면 초기상담 및 평가 진행, 목표까지 맞춤 작업치료 실시함.
  - 그룹 작업치료 : 주2회 플링운동 실시, 일평균 인원 8명, 선택 활동 시간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함.
  - 신체기능 유지 : 유압식운동기구 활용하여 상하지 근력강화 및 유연성 증진, 일평균 10명
- 5) 주치의 방문, 투약 관리 (★★★☆☆)  
어르신 건강이상시 병원 동행 연 90회, 주치의 진료 월2회(연 20회)방문하여 건강 특이사항 및 진료내용 정리, 입소자 15명 매일 복용약 투약 관리.

### ○ 입소자 모집 홍보 (★★★☆☆)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네이버블로그 운영, 현수막 게시, 조합원 출연 드라마2탄 제작. "슬기로운주간보호센터 생활" 제작완료. 사회적경제지원 영상물 제작 등 총 영상물 2개 제작. 운영안정화될 때까지 적극적 홍보 보류, 온라인 치중.

### ○ 자원봉사활동 (★★★★☆)

- 상·하반기·겨울 총 3회 모집공고 및 자원활동가 교육 총5회, 마무리 워크숍 1회 개최.
- 연인원 219명, 실인원 26명, 1365자원봉사포털 총 515시간 인증. 건강화폐조각 60만 조각 지급 성과.
- 자원활동 시간과 영역구분 (돌봄,환경정리,주방보조,재능기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힘.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조합의 신규 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높임. 추후 활동 피드백과 조합차원의 보상 강화, 자체모임 구성 요망.

※ 사업총평

- 전반적으로 경력자 부재로 인한 행정적 실수 발생 및 사고 대응 미흡, 이를 보완하는데 시간 소요됨.
- 수급자 프로그램에 투여할 수 있는 인력 부족, 전문강사 투입으로 프로그램 안정화. 내부 직원들의 프로그램 진행 능력과 호응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나 점차 나아지고 있음. 전문프로그램 강사를 통해 매주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이 도움.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기획 및 진행한다면 프로그램 질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상하반기 조합원 자원활동 모집, 교육으로 사업장 활성화, 조합원의 참여 기회 확대함. 청소, 주방 등의 일손 부족은 노인일자리 활용하여 비용 절약하고 지역사회 주민 협력.
- 어르신 질병과 건강 특이사항은 주치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보호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 매일 발생하는 어르신 건강변화에 대하여 주의깊은 대응이 필요하며, 감기와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평균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신속한 조치와 감염 차단 대책이 필요함.
- 심한 치매 및 배회 증상으로 종사자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개선 방향을 공유해야 함.
- 전반적인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수입 확대를 꾀하고, 입소자 증가에 수반되는 종사자 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정된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활동 모습



생일잔치



건강상담



한밭수목원 나들이 자원봉사활동

4) <조합사업부> 사업평가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기초조직강화	자체	2023.01. ~ 2023.06								
사업개요										
<p>○ 목적 조합원의 성장과 참여를 이끌고 임직원의 역량 강화로 조합의 근간인 조합원 중심의 조직 운영과 조합 발전 및 지역 활동 확장 도모</p> <p>○ 주요사업내용 - 대상: 조합원 및 임직원 - 총사업비: 800만원 -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계획</th> </tr> </thead> <tbody> <tr> <td>조합원</td> <td>- 조합원 활동(대면 비대면 방식 활용 만남과 교육) - 조합 홍보 및 이용 영상 공모 1회(150만원) - 카톡 채널 구독자 증가(100명)</td> </tr> <tr> <td>대의원</td> <td>- 대의원 오리엔테이션 - 연 1회 대의원 및 조합원 걷기 행사(400만원) - 대의원 자원봉사 조직</td> </tr> <tr> <td>임직원</td> <td>- 연 1회 임원 워크숍(50만원) - 신입 직원 교육 - 직원 교육(2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계획	조합원	- 조합원 활동(대면 비대면 방식 활용 만남과 교육) - 조합 홍보 및 이용 영상 공모 1회(150만원) - 카톡 채널 구독자 증가(100명)	대의원	- 대의원 오리엔테이션 - 연 1회 대의원 및 조합원 걷기 행사(400만원) - 대의원 자원봉사 조직	임직원	- 연 1회 임원 워크숍(50만원) - 신입 직원 교육 - 직원 교육(200만원)
구분	계획									
조합원	- 조합원 활동(대면 비대면 방식 활용 만남과 교육) - 조합 홍보 및 이용 영상 공모 1회(150만원) - 카톡 채널 구독자 증가(100명)									
대의원	- 대의원 오리엔테이션 - 연 1회 대의원 및 조합원 걷기 행사(400만원) - 대의원 자원봉사 조직									
임직원	- 연 1회 임원 워크숍(50만원) - 신입 직원 교육 - 직원 교육(200만원)									
사업평가										
<p>■ 조합원 -조합원 활동을 건강자치력 향상 활동으로 연계하여 올해 사업 기조인 [나의 건강약속] 실천으로 건강검진 결과 알기, 올바른 치아관리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회 등 어느 해보다 나(조합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 노년기 삶의 설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조합원 관심이 많아 설명회가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문의 시 주변 연계 기관을 안내함. 그러나 평일 낮시간에 진행되어 시간을 낼 수 없는 조합원에게는 참여가 제한적인 아쉬움이 남음.</p> <p>-그동안 해보지 않은 첫 조합 홍보 및 이용 영상 공모전은 조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조합원 참여가 많지 않았음. 연령별 조합원 비율을 살펴보면 중장년층 50%, 노년층 42%로 주요 구성원의 왕성한 활동기와 바쁜 일상, 고령층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면 사진과 영상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업의 연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p> <p>-조합원들에게 빠른 조합 소식 전달과 공유를 위한 온라인 의료사협 소식지(카톡채널) 구독자 증가에 힘써 2022년 대비 총 57명(상반기 53명, 하반기 4명) 증가하여 꾸준히 조합 소식에 접근성을 높여왔으나, 건강반 촉진과 같은 조합원을 직접 대면한 카톡채널 구독 안내가 효과적이고 신규 조합원 가입 시 보내는 구독 안내 문자는 자발적 유입이 부족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구독 방법과 독려가 요구됨.</p> <p>-대의원 모임, 건강반장 교육, 건강리더 교육 등 곳곳에서 실시한 다양한 조합 교육마다 조합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조합에 대한 궁금함을 해결하는 주요한 기회가 되고 조합원 활동 참여와 이용으로 연결되고 있음. 조합원이 확장되고 눈부시게 성장 발전한 지금 더 포괄적인 조합원 만남과 교육의 과제가 있음.</p>										



■ 대의원

-2023년 2월 9기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에 앞서 대의원 오리엔테이션 진행. 신임대의원 인사 나눔과 조합정관 설명, 대의원 역할을 찾는 활동 논의 등 단합과 네트워킹을 하며 대의원으로 나의 다짐을 더 굳게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음.

-대의원들의 단합회 요청으로 대의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의미와 즐거움이 있으며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확장하여 의료사협 활동이 시작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견학을 다녀옴. 이는 의료사협을 공부하고 협동조합간 교류 및 조합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조합원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정기적인 추진 검토 예정.

-견학과 조합원 걷기 활동을 겸행하여 견학지 주변 저수지 수변을 걸으며 친밀감 형성과 힐링 및 건강증진을 함께할 수 있었음.

-대의원에게 조합 자원봉사를 안내하고 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하며 조합 사업에 관심이 증가함.

-대의원의 다양한 활동 조직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함.

■ 임직원

-임원 워크숍을 하반기 진행하여 2023년 임원 임기 종료 전 활동 소회와 임원 역할을 돌아봄. 그동안 임원들의 조합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전문적 의견과 참여는 큰 힘이 되었음.

-신입 직원들 조합 교육으로 조합 설립의 가치와 방향을 알고 사업소별 기본 업무를 이해하게 됨. 신입직원 교육은 정례화 되고 있으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재교육 체계 마련 필요함.

활 동 모 습



조합원 사진·영상 공모전 웹자보



신입 직원 교육



9기 대의원 오리엔테이션



조합원·대의원 안성의료사협 교류 및 걷기 활동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반	자체	2023.01. ~ 2023.11.

### 사업개요

#### ○ 목적

조합원 및 지역 사회 주민들의 건강한 관계의 힘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여 나와 이웃과 마을의 건강자치력 향상

#### ○ 주요사업 내용

- 총사업비: 2,000만원
- 목 표: 40개반 이상, 230명 이상(조합원 비율 70%)
- 대 상: 조합원 및 지역 주민
- 내 용: 조합원 및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한 반으로 구성 등록하여 건강 목표와 활동 계획을 세우고, 월 2회 이상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 진행(조합원 50%이상 의무 구성)
- 활동비 지원:

조합원 수	활동비 지원액
조합원 3인	35만원
조합원 4인	40만원
조합원 5인	45만원
조합원 6인	48만원
조합원 7인 이상	51만원

- 활동비 추가지원: 7월까지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시 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 일정



### 사업평가

- 건강반은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중심 축이며, 반 활동을 통해 조합을 만나는 주요한 접점이 되고 있음.
- 2023년 45개반 약 300여명의(조합원 260명/비율 약 88.8%)건강반이 활동하였으며, 총 2천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건강증진·질병예방활동, 관계증진 촉진, 재료비 지원 등으로 내용의 풍부함을 만들었음.
- 건강반 활동 기회는 신규 조합원 가입 및 조합 홍보 효과가 있으며 이는 사업 이용으로 연결됨.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신체, 문화, 배움, 독서 등 다양한 영역 활동이 건강증진과 예방에 효과가 있음.
- 건강반으로 나와 서로,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자신을 돌보라, 서로를 돌보라, 공동체를 돌보라]는 조합 슬로건을 실현하는 활동임.
- 활동 중 조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스스로조합비 가입, 기부금 납부, 자원봉사 등 조합 활동 참여가 증가함.
- 기후와 환경 문제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건강반 활동 마무리를 환경 영화 공동체 관점으로 진행하여 호응이 높았으며, 환경이 삶의 건강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건강반 활동과 연계된 주제 적합성이 좋았음.



활동 모습



건강반장 반 설명회



건강반 촉진 활동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리더교육	자체	2023.05. ~ 2023.06.
<b>사 업 개 요</b>		
<p><b>o 목적</b> 스스로 자기 건강을 돌보며 나와 이웃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관련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건강반을 운영하며 건강자 치력 향상</p> <p><b>o 주요사업 내용</b> - 총사업비: 200만원 - 목표: 수료 25명 - 대상: 조합원 - 내용 ▶ 건강마을 이해 ▶ 민들레 역사 ▶ 건강반 현장 이야기 ▶ 만성질환, 정신건강, 기후위기, 갈등관리 등 다양한 주제 진행 ▶ 수료</p>		
<b>사 업 평 가</b>		
<p>-20기·21기 2기 수 33명이 수료하여 목표 25명을 상회하였으며, 교육 참여자 대부분이 건강반 활동을 하고 있어 건 강리더교육이 반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됨.(교육 80% 이상 수강 시 수료 가능) -수료 시 발급되는 '조각'은 수료 의지를 고취 시키는 촉매제로 조각은 조합 의료기관 이용 연결과 새로운 이용자 개 발로 연결되고 있음. -협동조합 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 가치 공유와 교육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대 면 교육을 중심에 두고 상호작용하는 교육 현장 분위기와 관계 형성에 중심을 둬. 교육 시 이동이 불편한 신체장애 인 조합원을 위한 원격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기회와 참여 통로를 확장하였음. -올해의 사업 기조에 따른 [서로의 건강약속]으로 지역 소방서를 연계한 심폐소생술(CPR)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건강반 활동 조합원이 대다수로 다양한 조합원 참가를 위한 교육 안내가 필요함.</p>		
<b>활 동 모 습</b>		
		
20기 건강리더 교육 수료	건강리더 심폐소생술 교육	

5) 경영지원실

(1)<총무회계팀> 사업평가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 경영 사업	자체	2023.01. ~ 2023.12.																														
사업개요																																
<p>o 목적 조합 운영 시스템 체계화와 재정운영 보완, 점검으로 적정한 조합 재정 안정화</p> <p>o 주요사업내용 - 사업소 수입결의 및 월결산 자동데이터 구축 - 직원법정교육 실시 - 2023년 보건복지부 감사 준비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실시(2회 촉진) - 자원봉사자 관리</p> <p>o 조합원 / 스스로조합비 가입 - 목표: 조합원 5명,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3명 신규가입</p> <p>o 예산(안)</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내역</th> <th>예산(원)</th> <th>결산(원)</th> </tr> </thead> <tbody> <tr> <td>조합 건물 유지보수</td> <td>소모품 교체</td> <td>3,000,000</td> <td>1,599,800</td> </tr> <tr> <td rowspan="3">사무기기 유지보수</td> <td>조합 컴퓨터 소모품 교체 등</td> <td>2,000,000</td> <td>1,174,400</td> </tr> <tr> <td>노트북 구매</td> <td>2,000,000</td> <td>미사용</td> </tr> <tr> <td>기타</td> <td>1,000,000</td> <td>미사용</td> </tr> <tr> <td rowspan="2">소프트웨어 유지보수</td> <td>POS 관련 유지보수</td> <td>2,000,000</td> <td>710,850</td> </tr> <tr> <td>기타</td> <td>1,000,000</td> <td>미사용</td> </tr> <tr> <td colspan="2">합 계</td> <td>11,000,000</td> <td>2,774,200</td> </tr> </tbody> </table>				항목	내역	예산(원)	결산(원)	조합 건물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3,000,000	1,599,800	사무기기 유지보수	조합 컴퓨터 소모품 교체 등	2,000,000	1,174,400	노트북 구매	2,000,000	미사용	기타	1,000,000	미사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POS 관련 유지보수	2,000,000	710,850	기타	1,000,000	미사용	합 계		11,000,000	2,774,200
항목	내역	예산(원)	결산(원)																													
조합 건물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3,000,000	1,599,800																													
사무기기 유지보수	조합 컴퓨터 소모품 교체 등	2,000,000	1,174,400																													
	노트북 구매	2,000,000	미사용																													
	기타	1,000,000	미사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POS 관련 유지보수	2,000,000	710,850																													
	기타	1,000,000	미사용																													
합 계		11,000,000	2,774,200																													
사업평가																																
<p>o 사업소 수입결의 및 월결산 자동데이터 구축 (☆☆☆☆☆) 하반기에 구축및시연 할 예정이었으나, 구축 시스템의 기초작업이 늦어짐에 24년 회계프로그램(더존 클라우드 스마트a)이 변동됨에 연동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자동데이터 구축을 검토할 예정임.</p> <p>o 직원법정교육 실시 (★★★☆☆) 2023년 직원법정교육을 집체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진행. 다소 늦은 하반기에 교육이 안내되었으며,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면서 각 사업소별로 교육이수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점으로 취합이 늦어지면서 직군별 산업안전관리가 일부 교육이수완료는 못하였음. 2024년 직원법정교육은 상반기에 일정 및 교육이수에 관련되어 팀장단부터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임.</p> <p>o 2023년 보건복지부 감사 - 감사기간 2023년 5월30일 ~ 2023년 6월2일 (★★★★★) 11월 정기감사 결과통지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통보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조치 후 12월 조치결과서를 제출하였음.</p> <p>o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실시(2회 촉진)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전 직원에게 서면통보를 실시하지 못함. 잔여연차 및 사용촉진에 안내를 e-mail이나 서면통보, 그룹웨어도 검토할 예정임.</p> <p>o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는 종전과 같이 유지 할 예정.</p>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 홍보	자체	2023.01. ~ 2023.12.

### 사 업 개 요

#### o 목적

조합 활동을 효과적으로 대내외에 알려 조합 활동 확장과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 기록

#### o 주요사업 내용

- 카카오톡채널 활성화: 쿠폰, 활동 소식, 민들레 소개, 카드뉴스, 건강정보 및 뉴스 조합원들에게 전달
- 유튜브용 영상물 제작
- 민들레 활동을 신속하게 담은 짧은 영상물 다수 제작
- 각 사업부서 자체 생산을 위한 촉진과 교육
- 영상물 취합 편집, 게재를 위한 플랫폼 구상
- 조합내 홍보관리: 의료기관 내외부 게시판 관리
- 홈페이지, SNS관리
- 상시 관리, 관리자페이지 관리
- 조합 주력사업 홍보, 배치 변경, 추가 페이지 제작 등 업데이트
- 페이스북, 카톡채널, 밴드 관리

#### o 예산

항목	내역	예산(원)	결산(원)
홈페이지관리	호스팅비 12개월	132,000	132,000
	홈페이지 디자인 수정 및 업데이트	500,000	352,000
게시판 유지관리	의료기관 및 조합 게시판 유지관리	1,000,000	560,000
카카오톡채널 관리	포스트 발송	300,000	67,698
합계		1,932,000	979,698

### 사 업 평 가

#### o 카카오톡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조합홍보창구로 이용(★★★☆☆)

- 업무를 분담하여 송직근 전무이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글 작성
- SNS게시글을 취합하여 카드뉴스 제작(1회)
-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조합소식 안내

#### o 카카오톡채널을 활성화하여 조합원 및 채널 가입자에 전달(★★★☆☆)

- 카드뉴스, 조합원교육, 조합활동 소식 및 행사 안내 게시

#### o 홈페이지에 조합행사 및 교육, 언론보도 등 수시로 게시(★★★☆☆)

#### o 의료기관 TV에 건강관련 영상 탑재(★★★☆☆)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기부금 활용 (전년도 스스로조합비, 일반기부금)	자체	2023.01. ~2023.12.

**사업개요**

**○ 목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등으로 지역사회 보건예방사업 활동

**○ 주요사업 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및 보건예방활동 지원과 상담  
(성매매피해여성, 이주노동자, 미등록아동, 65세이상 노인, 장애가족등 취약계층)
- 조각 사용 관리
- 지역사회, 복지관, 대학, 기업등 유관기관 협약
-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와 연대 활동

**○ 예산 및 2023년(1월~12월) 결산**

구분	운영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보건예방활동			합계
		의료기관 의료비지원	지역사회 의료센터	외부기관 연계지원	주간보호 센터	건강반	조각 지원	장애인 시설개선금	
금액 (만원)	200	1,500	300	400	400	1,700	650	250	5,400
비율 (%)	4	28	6	7	7	31	12	5	100
집행 (만원)	90	373	36	178		1,667	486	250	3,080
비율 (%)	2	7	1	3	-	30	9	5	57

※ 54,991원 예비비

**사업평가**

- 상반기 의료비지원 관련 서식등의 보완을 진행함. 하반기 기부금 규정 등 기부금 운용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보완 및 수정을 진행하려했으나 진행하지 못하였음.
- 전년도 대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의 집행률이 감소(외부기관의 의료비 지원 신청 감소 및 민들레활동 중 일부가 정부지원 사업으로 변경) 지역사회 활동 확대 등을 통한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해 구상이 필요.
- 상반기 의료비지원 대상자 관리가 미흡하여 하반기에는 일정을 확정하여 관리를 함. 의료비지원 대상자들의 치료 현황과 만족도 등을 확인하였음.
- 상하반기 기부금 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 채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스스로조합비 조합원과 일반후원자들에게 기부금 운용 보고서를 개별 전송함.

### 1. 결산보고 총평

○ 2023년 민들레의료사협은 **당기순이익 82,948,034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이 지난해 약36억원에서 약44억원으로 8억원 가량 증가했다. 일차의료센터 및 지역사회의료센터의 매출이 작년대비 약 4억원 정도가 증가했고, 2022년 12월 개소한 주간보호센터의 매출액 약 4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 건강검진**의 매출증대노력과 각종 시범사업(만성질환관리, 장애인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참여, **지역사회의료센터**의 방문의료(왕진,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구강, 다학제 방문 등) 증가에 따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 그동안 박종희 원장 1인 진료시스템으로 유지되던 **한의원**은 방문한의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인 김나희 원장 참여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진없이 진료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한의방문의료 시범사업과 소상공인조합원 한방주치의 사업 등 '한의방문'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 매출 다각화를 모색했다. 본인부담금 등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역사회 한의방문 의료수요에 대응했다는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한의방문진료와 한방건강강좌는 지역사회에 민들레 한의원을 알리고,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 **치과**는 상반기 원장1인, 치과위생사3인의 운영구조에서 하반기 원장1인, 치과위생사2인, 간호조무사1인 체제로 변화했다. 내부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운영 궤도에 올랐다. 민들레 치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부정적 평판에 대한 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방문과 구강예방활동이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일차의료센터**의 경우 내부 구성원의 결속력이 다양한 이벤트 기획, 홍보, 시장조사를 통한 비보험진료 수가개선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 **지역사회의료센터**는 정부의 방문의료 확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사업소와의 시너지는 물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왕진, 가정간호, 방문간호를 넘어 한의방문, 방문구강관리, 다학제 방문까지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통합돌봄사업본부의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는 정부, 지자체의 다양한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해 지역의 돌봄수요에 맞는 동네돌봄 모델 실험 및 민들레형 통합돌봄 모델을 위해 노력했다. 성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라는 한계가 존재했다. 2024년에는 성과를 조합내부에 적용해 민들레 '조합원 통합돌봄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감사의 지적에 따라 조합사업부와의 역할 조정도 모색할 예정이다. **주간보호센터**는 개소 1년을 넘기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다. 주치의, 조합원, 지역사회 신뢰, 다학제 등 민들레의 지난 20년간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들레형' 주간보호센터 모델을 상상하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돌봄 유성본부**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협력은 중단하고 고티머리 상담센터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다.

○ 민들레는 기존 의료분야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협동조합이다. 높은 의사소통비용 등 협동조합의 단점은 줄이고, 조합원 자원과 같은 장점을 경영에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협동조합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료협동조합 경영모델이 필요한 이유다. 연구하고, 실천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정교해지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경영(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규모가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민들레에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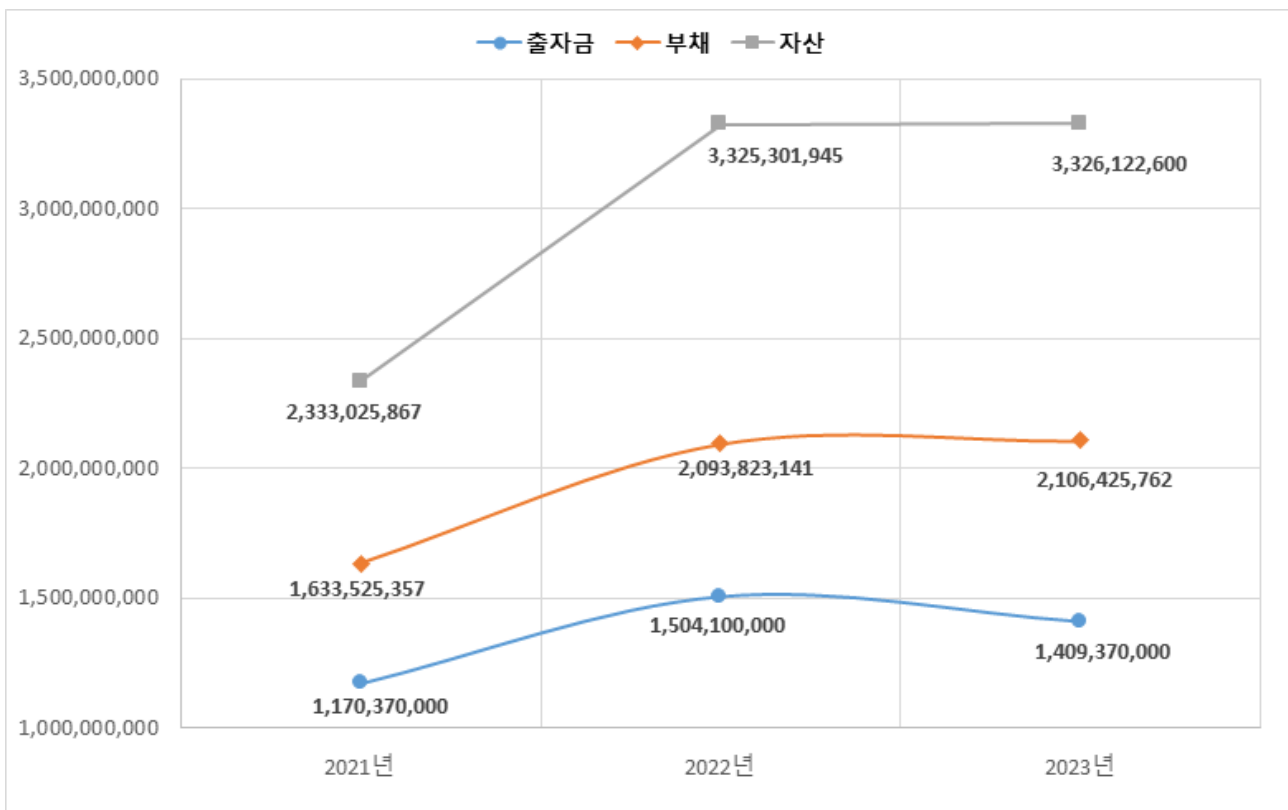
## 2. 자산 / 부채 / 출자금 현황

### 1) 자산 / 부채 / 출자금 3개년간 내역

(단위: 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자산	3,326,122,600	3,325,301,945	2,333,025,867
부채	2,106,425,762	2,093,823,141	1,633,525,357
출자금	1,409,370,000	1,504,100,000	1,170,370,000

### 2) 자산 / 부채 / 출자금 3개년간 변동 추이



### 3. 주요 결산 실적

#### 1) 예산 대비 부서별 매출 / 손익 실적

구 분	2023년도 실적(원)		2023년도 예산(원)		실적율(%)	
	매 출	손 익	매 출	손 익	매 출	손 익
누 계	4,418,304,974	82,948,034	4,325,438,179	56,032,852	102	148
의 원/검 진	2,361,411,306	540,058,713	2,268,130,367	522,142,779	104	103
한 의 원	278,491,904	-3,897,178	274,250,729	18,198,987	102	-21
치 과	477,317,390	19,637,083	539,802,779	84,967,919	88	23
주간보호센터	399,435,340	-60,141,146	536,348,000	-131,734,044	74	46
지 역 사 회 의 료 센 터	895,773,574	221,706,594	701,906,304	20,209,187	128	1,097
주 민 참 여 건강증진센터		-87,727,614		-118,270,001		74
조합사업부		-51,798,790		-70,999,600		73
경영지원실	5,875,460	-494,889,628	5,000,000	-268,482,375	118	184

#### 2) 2023년 예산 대비 손익계산서

구분	2023년 예산(원)	2023년 결산(원)	예산 대비(%)	총액 대비(%)	
수입총계	4,369,038,179	4,483,419,104	102.6	100	
사업 수익	의료기관수입	3,082,183,875	3,117,220,600	101.1	69.5
	주간보호센터	536,348,000	399,435,340	74.5	8.9
	지역사회의료센터	701,906,304	895,773,574	127.6	20
	경영지원실	5,000,000	5,875,460	117.5	0.1
사업외 수입	정부지원 및 보조금	40,500,000	26,800,000	66.2	0.6
	후원금	2,600,000	34,449,420	1325	0.8
	기타	500,000	3,864,710	772.9	0.1
지출총계	4,313,005,327	4,400,471,070	102	100	
사업비	95,222,000	23,818,151	25	0.5	
판관비	4,155,260,883	4,262,015,503	102.6	96.9	
사업외비용	62,522,444	95,504,370	152.8	2.2	
법인세등		19,133,046		0.4	
손익합계	56,032,852	82,948,034	148	100	

#### 4. 자본 결산

##### 1) 자본조성계획과 현황

(단위: 원)

분 류	항 목	예상 금액	집행 현황
출자금	신입조합원	10,000,000	12,220,000
	조합원증자운동	20,000,000	70,703,710
	조합원감좌&탈퇴	30,000,000	182,567,800
	소계	0	-99,644,090
차입금	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		150,000,000
	소계		150,000,000
기 조성 미사용 자본금 (전년도에서 이월)		651,203,755	651,203,755
합 계		651,203,755	701,559,665

##### 2) 운용 계획과 집행현황

(단위: 원)

구 분	기관	품 명	예상금액	집행 현황
의료기기	검진	자동혈압계		1,170,000
	치과	의료용 자외선소독기	350,000	
	의료기기 소계		350,000	1,170,000
시설장치	의원	의원 입구 확장공사	10,000,000	10,780,000
	주간보호센터	냉난방기		53,000,000
		공기순환기 설치		8,349,000
		화장실 안전손잡이(스텐)		1,650,000
		족욕기 안전손잡이(스텐)		1,980,000
	참선	사무실 냉난방벽걸이		1,936,000
	경영지원실	지하 천정형 냉난방기		2,700,000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64,000,000
시설장치 소계		10,000,000	144,395,000	
비품	치과	모니터 5대	1,250,000	
		데스크 컴퓨터	650,000	
	참선	조합원 제2공간 테이블 및 의자	2,120,000	1,977,500
	경영지원실	노트북	2,000,000	
		컴퓨터	3,000,000	
		범외 기타	2,000,000	
	비품 소계		11,020,000	1,977,500
소프트웨어	경영지원실	POS 유지보수	2,000,000	
		회계/인사급여 프로그램	2,000,000	
	소프트웨어 소계		4,000,000	
차입금 상환	금융권 및 조합원 차입금 일부 상환		288,553,839	318,553,839
사업준비금	운용예비비		337,279,916	235,463,326
합 계		651,203,755	701,559,665	

5. 재무상태표

1) 통합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제21(당기)		제20(전기)	
		금액		금액
<b>자 산</b>				
<b>I.유 동 자 산</b>		<b>806,292,030</b>		<b>712,730,800</b>
(1)당 좌 자 산		<b>769,055,730</b>		<b>671,768,042</b>
현 금		375,840		70,550
보 통 예 금	285,329,527		170,836,275	
기 금 사 업 비 ( 차 감 )	82,962,749	202,366,778	55,151,914	115,684,361
기 타 제 예 금		60,000,000		60,000,000
정 기 예 . 적 금		18,000,000		60,000,000
미 수 수 익		0		2,052,850
미 수 금		467,185,970		351,110,015
선 급 금		19,086,762		73,585,726
선 급 비 용		1,725,050		4,549,210
선 납 세 금		315,330		315,330
장 기 선 급 금		0		4,400,000
(2)재 고 자 산		<b>37,236,300</b>		<b>40,962,758</b>
의 약 품		16,159,067		19,681,287
의 료 소 모 품		21,077,233		21,281,471
<b>II.비 유 동 자 산</b>		<b>2,519,830,570</b>		<b>2,612,571,145</b>
(1)투 자 자 산		<b>65,733,304</b>		<b>65,728,052</b>
출 자 금		65,733,304		65,728,052
(2)유 형 자 산		<b>2,316,929,432</b>		<b>2,414,790,584</b>
토 지		871,788,445		871,788,445
건 물	846,978,292		846,978,292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09,548,731	737,429,561	88,374,276	758,604,016
의 료 기 계	474,170,850		472,568,5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81,142,945	93,027,905	327,355,676	145,212,824
시 설 장 치	874,300,940		730,338,29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37,226,352	537,074,588	189,129,983	541,208,307
비 품	130,523,700		128,546,2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2,914,767	77,608,933	30,569,208	97,976,992
(3)무 형 자 산		<b>3,397,834</b>		<b>5,960,509</b>
소 프 트 웨 어		3,397,834		5,960,509
(4)기 타 비 유 동 자 산		<b>133,770,000</b>		<b>126,092,000</b>
임 차 보 증 금		133,770,000		125,192,000
기 타 보 증 금		0		900,000
<b>자 산 총 계</b>		<b>3,326,122,600</b>		<b>3,325,301,945</b>
<b>부 채</b>				
<b>I.유 동 부 채</b>		<b>934,995,762</b>		<b>845,666,650</b>
외 상 매 입 금		72,349,938		109,506,520
미 지 급 금		367,260,493		267,989,062
예 수 금		159,605,045		116,621,895

과목	제21(당기)		제20(전기)	
	금액		금액	
부 가 세 예 수 금		27,270		217,267
당 좌 차 월		247,574,660		269,504,826
선 수 금		199,800		80,000,000
단 기 차 입 금		70,000,000		1,827,080
미 지 급 세 금		17,978,556		0
Ⅱ.비 유 동 부 채		1,171,430,000		1,248,156,491
장 기 차 입 금		1,171,430,000		1,248,156,491
부 채 총 계		2,106,425,762		2,093,823,141
자 본				
Ⅰ.자 본 금		1,409,370,000		1,504,100,000
출 자 금		1,409,370,000		1,504,100,000
Ⅱ.자 본 잉 여 금		0		0
Ⅲ.자 본 조 정		0		0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Ⅴ.결 손 금		189,673,162		272,621,196
미 처 리 결 손 금		189,673,162		272,621,196
( 당 기 순 이 익 )				
당기: 82,948,034원				
전기: 198,248,294원				
자 본 총 계		1,219,696,838		1,231,478,80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326,122,600		3,325,301,945

## 6. 손익계산서

### 1) 통합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21(당기)		제20(전기)	
	금액		금액	
<b>I. 매출액</b>		<b>4,418,304,974</b>		<b>3,609,818,771</b>
임대료수입	4,445,460		8,245,460	
의원수입금	2,538,782,588		2,157,824,247	
한의원수입금	278,491,904		261,191,170	
치과수입금	477,317,390		486,308,810	
주간보호센터본인부담금	71,804,220			
검진센터수입금	718,402,292		693,971,074	
주간보호센터장기요양수입금	258,470,450			
주간보호센터장기의료수입	69,160,670			
조합본부수입금	1,430,000		2,278,010	
<b>II. 매출원가</b>		<b>347,401,557</b>		<b>326,951,994</b>
<b>의약품매출원가</b>		<b>245,533,624</b>		<b>217,882,448</b>
기초의약품재고액	19,681,287		26,136,577	
당기의약품매입액	242,011,404		211,427,158	
기말의약품재고액	16,159,067		19,681,287	
<b>의료소모품매출원가</b>		<b>101,867,933</b>		<b>109,069,546</b>
기초의료소모품재고액	21,281,471		21,506,704	
당기의료소모품매입액	101,663,695		108,844,313	
기말의료소모품재고액	21,077,233		21,281,471	
<b>III. 매출총이익</b>		<b>4,070,903,417</b>		<b>3,282,866,777</b>
<b>IV. 판매비와관리비</b>		<b>3,938,432,097</b>		<b>3,124,870,112</b>
직원급여	2,611,036,605		2,094,822,135	
(인건비지원금)	65,904,480		70,701,440	
잡급여	1,470,530		3,607,744	
퇴직급여	177,235,280		144,521,160	
복리후생비	243,885,073		202,179,592	
여비교통비	23,722,657		12,354,409	
통신비	9,138,705		7,326,876	
수도광열비	4,304,216		3,152,490	
전력비	20,513,557		19,019,816	
세금과공과금	77,574,550		62,438,060	
감가상각비	245,403,652		127,904,035	
지급임차료	78,343,720		50,624,243	
수선비	7,952,700		42,502,200	
보험료	61,475,494		45,206,817	
(보험료지원금)	6,671,110		6,009,760	
차량유지비	2,111,130		2,238,700	
운반비	661,900		2,238,700	
교육훈련비	2,957,400		2,639,875	
도서인쇄비	3,129,300		2,904,000	

과 목	제21(당기)		제20(전기)	
	금액		금액	
회 의 비	6,507,180		4,333,880	
소 모 품 비	74,765,024		29,693,213	
지 급 수 수 료	261,036,826		249,473,737	
광 고 선 전 비	0		180,000	
대 손 상 각 비	6,452,850			
건 물 관 리 비	17,005,400		7,050,420	
협 회 비	0		13,048,60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2,562,675		5,761,008	
연 대 활 동 비	6,547,140		6,317,000	
조 직 활 동 비	7,649,570		9,374,040	
기 금 사 업 비	114,200,262		131,500,102	
( 기 금 사 업 비 지원 금 )	114,200,262		131,500,102	
홍 보 활 동 비	156,861		11,713,843	
인 적 용 역 비	16,498,890		14,099,050	
( 인 적 용 역 비 지원 금 )	5,296,750		8,569,750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30,991,752		33,038,589	
취 약 건 강 지 원 비	5,373,800		2,625,530	
기 부 금 사 업 비	29,711,717		36,045,946	
( 기 부 금 사 업 지원 금 )	29,711,717		36,045,946	
외 주 용 역 비	9,840,000			
V . 영 업 이 익		132,471,320		157,996,665
VI . 영 업 외 수 익		65,114,130		101,853,095
이 자 수 익	2,171,390		977,237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26,800,000		67,182,818	
기 부 금 수 입	34,449,420		31,441,204	
잡 이 익	1,693,320		2,251,836	
VII . 영 업 외 비 용		95,504,370		59,752,196
이 자 비 용	89,634,066		55,432,458	
기 부 금	800,000		0	
보 상 비	4,746,900		1,174,070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0		3,000	
잡 손 실	323,404		3,142,668	
VIII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102,081,080		200,097,564
IX . 법 인 세 등		19,133,046		1,849,270
법 인 세 등	19,133,046		1,849,270	
X . 당 기 순 이 익		82,948,034		198,248,294

## 7. 부서별 손익계산서

1) 의료기관, 주간보호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경영지원실

(단위: 원)

계정과목	의원·검진	한의원	치과	주간 보호센터	지역사회 의료센터	경영지원실
I . 매 출 액	2,361,411,306	278,491,904	477,317,390	399,435,340	895,773,574	5,875,460
II . 매 출 원 가	196,599,131	43,698,151	40,838,050		66,266,225	
III . 매 출 총 이 익	2,164,812,175	234,793,753	436,479,340	399,435,340	829,507,349	5,875,460
IV . 판매비와관리비	1,621,357,434	238,715,151	416,412,959	467,437,086	615,212,977	400,777,500
직 원 급 여 (인건비 지원금)	1,125,127,555	163,907,510	260,790,590	268,967,250	512,570,180	149,252,440
잡 퇴 직 급 여		624,000		769,570	-44,681,490	
복 리 후 생 비	67,943,110	11,807,170	17,817,680	20,794,870	76,960	11,609,930
여 비 교 통 비	104,762,285	26,142,868	22,195,470	11,925,880	38,225,230	34,811,122
통 신 비	138,600			7,525,750	12,299,552	2,596,850
수 도 광 열 비	3,044,366	354,743	637,067	1,248,429	1,487,081	2,364,279
전 력 비	1,048,320	567,430	474,830	1,091,081	556,930	565,625
세 금 과 공 과 금	7,840,665	3,388,709	4,108,833		1,033,230	4,095,678
감 가 상 각 비	25,068,440	5,745,170	7,825,080	10,439,960	13,745,800	9,830,470
지 급 임 차 료	65,146,429	10,570,892	21,244,252	28,356,714		114,884,610
수 선 비	26,400,000		15,000,000	23,743,720		
보 험 료	904,000	125,500	467,000	2,060,000	15,000	4,381,200
(보험료 지원금)	21,983,940	3,201,130	5,701,770	8,504,414	13,017,520	4,611,900
차 량 유 지 비				2,111,130		
운 반 비	50,000	195,400	7,300	65,000	8,000	189,200
교 육 훈 련 비	1,013,000	130,000	320,000	340,000	1,048,000	106,400
도 서 인 쇄 비	390,000	13,500	240,000	1,024,750		1,436,050
회 의 비	1,560,350	140,800	430,170	305,400	1,551,140	2,149,220
소 모 품 비	8,074,030	3,628,610	996,330	51,498,884	790,410	5,634,180
지 급 수 수 료	134,292,644	3,980,969	48,959,877	3,697,154	34,009,464	34,905,738
대 손 상 각 비			480,000	11,755,990		6,452,850
건 물 관 리 비	1,584,000					
무형고정자산상각	265,608	270,000				2,027,067
연 대 활 동 비					146,700	6,317,340
조 직 활 동 비				231,000		788,490
기 금 사 업 비						
(기금사업비지원금)						
홍 보 활 동 비						156,861
인 적 용 역 비	992,000			6,900,140	250,000	1,610,000
(인적용역비지원금)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18,967,492	3,836,750	8,187,510			
취 약 건 강 지 원 비	4,760,600	84,000	529,200			
기 부 금 사 업 비					85,310	12,950,984
(기부금사업지원금)					-85,310	-12,950,984
외 주 용 역 비				4,080,000		
V . 영 업 이 익	543,454,741	-3,921,398	20,066,381	-68,001,746	214,294,372	-394,902,040
VI . 영 업 외 수 익	355,032	24,220	27,797	8,932,082	7,412,222	9,355,750
이 자 수 익	11,394	6,441	9,388	13,612	2,208	2,121,320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8,900,000	7,200,000	2,200,000
기 부 금 수 입						4,449,420
잡 이 익	343,638	17,779	18,409	18,470	210,014	585,010
VII . 영 업 외 비 용	3,751,060		457,095	1,071,482		90,210,292
이 자 비 용			457,095			89,176,971
기 부 금 상 비	3,746,900			1,000,000		800,000
잡 손 실	4,160			71,482		233,321
VIII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540,058,713	-3,897,178	19,637,083	-60,141,146	221,706,594	-475,756,582
IX . 법 인 세						19,133,046
당 기 순 이 익	540,058,713	-3,897,178	19,637,083	-60,141,146	221,706,594	-494,889,628



2)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조합사업부, 프로젝트사업

계정과목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조합사업부	산자부 (비R&D)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돌봄	돌봄리빙랩
I . 매 출 액						
II . 매 출 원 가						
III . 매 출 총 이 익						
IV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126,720,200	51,798,790				
직 원 급 여 ( 인 건 비 지 원 금 )	74,259,490	34,938,600	4,490,250 -4,490,250			16,732,740 -16,732,740
잡 퇴 직 급 여	6,150,740	2,886,550				
복 리 후 생 비	7,488,650	3,024,628				
여 비 교 통 비	555,505	606,400				
통 신 비	2,740					
수 도 광 열 비						
전 력 비		46,442				
세 금 과 공 과 금	3,461,700	1,457,930				
감 가 상 각 비	5,200,755					
지 급 임 차 료	13,200,000					
수 선 비						
보 험 료 ( 보 험 료 지 원 금 )	1,566,550	688,060	617,440 -617,440			1,582,770 -1,582,770
차 량 유 지 비						
운 반 비	147,000					
교 육 훈 련 비						
도 서 인 쇄 비	25,000					
회 의 비	370,100					
소 모 품 비	4,140,580	2,000				
지 급 수 수 료	1,190,980					
대 손 상 각 비						
건 물 관 리 비	3,185,41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연 대 활 동 비	15,000	68,100				
조 직 활 동 비		6,630,080				
기 금 사 업 비	2,850,000		1,449,200	17,450,000	32,655,000	59,796,062
(기금사업비지원금)	-2,850,000		-1,449,200	-17,450,000	-32,655,000	-59,796,062
홍 보 활 동 비						
인 적 용 역 비	150,000	1,450,000	1,496,750	1,800,000	250,000	1,600,000
(인적용역비지원금)	-150,000		-1,496,750	-1,800,000	-250,000	-1,600,000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취 약 건 강 지 원 비						
기 부 금 사 업 비		16,675,423				
(기부금사업지원금)		-16,675,423				
외 주 용 역 비	5,760,000					
V . 영 업 이 익	-126,720,200	-51,798,790				
VI . 영 업 외 수 익	39,007,027					
이 자 수 익	7,027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8,500,000					
기 부 금 수 입	30,000,000					
잡 이 익	500,000					
VII . 영 업 외 비 용	14,441					
이 자 비 용						
기 부 금 비						
보 상 비						
잡 손 실	14,441					
VIII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87,727,614	-51,798,790				
IX . 법 인 세						
당 기 순 이 익	-87,727,614	-51,798,790				

## 8. 예산 대비 집행계산서

관	항	목	2023년 예산(원)	2023년 결산(원)	예산대비(%)	총액대비(%)
수입총계			4,369,038,179	4,483,419,104	102.6	100
수입	사업수익	의원, 건강검진센터	2,268,130,367	2,361,411,306	104.1	52.7
		한의원	274,250,729	278,491,904	101.5	6.2
		치과	539,802,779	477,317,390	88.4	10.6
		주간보호센터	536,348,000	399,435,340	127.6	20
		지역사회의료센터	701,906,304	895,773,574	74.5	8.9
		경영지원실	5,000,000	5,875,460	117.5	0.1
		사업수입 합계	4,325,438,179	4,418,304,974	102.1	98.5
	사업외수익	이자수익	448,000	2,171,390	484.7	0.05
		정부지원및보조금	40,500,000	26,800,000	66.2	0.6
		기부금 수입	2,600,000	34,449,420	1325	0.8
		잡이익	52,000	1,693,320	3256.4	0.04
사업외수입 합계		43,600,000	65,114,130	149.3	1.5	
지출총계			4,313,005,327	4,400,471,070	102	100.0
지출	사업비	교육훈련비	6,110,000	2,957,400	48.4	0.1
		회의비	13,680,000	6,507,180	47.6	0.1
		연대활동비	7,400,000	6,547,140	88.5	0.1
		조직활동비	57,400,000	7,649,570	13.3	0.2
		홍보활동비	10,632,000	156,861	1.5	0.004
		사업비 합계	95,222,000	23,818,151	25	0.5
	판매관리비	의약품비등(재고반영)	345,213,588	347,401,557	100.6	7.9
		직원급여	2,296,340,052	2,545,132,125	110.8	57.8
		잡급		1,470,530		0.03
		퇴직급여	179,398,200	177,235,280	98.8	4
		복리후생비	256,139,539	243,885,073	95.2	5.5
		여비교통비	37,600,000	23,722,657	63.1	0.5
		통신비	11,720,000	9,138,705	78.0	0.2
		수도광열비	7,740,000	4,304,216	55.6	0.1
		전력비	21,240,000	20,513,557	96.6	0.5
		세금과공과금	72,021,440	77,574,550	107.7	1.8
		감각상각비	137,740,869	245,403,652	178.2	5.6

관	항	목	2023년 예산(원)	2023년 결산(원)	예산대비(%)	총액대비(%)
		지급임차료	54,120,000	78,343,720	144.8	1.8
		수선비	24,600,000	7,952,700	32.3	0.2
		보험료	49,423,780	54,804,384	110.9	1.2
		차량유지비		2,111,130		0.05
		운반비	600,000	661,900	110.3	0.02
		도서인쇄비	2,240,000	3,129,300	139.7	0.1
		소모품비	65,700,000	74,765,024	113.8	1.7
		지급수수료	423,134,840	261,036,826	61.7	5.9
		광고선전비	850,000			
		대손상각비		6,452,850		0.1
		건물관리비	36,864,000	17,005,400	46.1	0.4
		협회비	13,028,600			
		무형고정자산상각	6,294,341	2,562,675	40.7	0.1
		인적용역비	52,611,520	11,202,140	21.3	0.3
		조합원건강지원비	32,640,114	30,991,752	94.9	0.7
		취약건강지원비	3,000,000	5,373,800	179.1	0.1
		기부금사업비	52,000,000	29,711,717	57.1	0.7
		기부금사업비지원금	-52,000,000	-29,711,717	57.1	-0.7
		외주용역비		9,840,000		0.2
		예비비	25,000,000			
	판관비 합계	4,155,260,883	4,262,015,503	102.6	96.9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57,482,444	89,634,066	155.9	2.0
		기부금		800,000		0.02
보상비		5,000,000	4,746,900	94.9	0.1	
잡손실		40,000	323,404	808.5	0.01	
사업외비용 합계		62,522,444	95,504,370	152.8	2.2	
법인세등			19,133,046		0.4	
연간손익합계			56,032,852	82,948,034	148.0	



## 제5호 의안 2023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3년 당기순이익 82,948,03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손실금 272,621,196원에 보전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25조, 제33조 제5호

### ※정관 제25조(법정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결손금 처리 계산서(안)

과 목	제21(당)기		제20(전기)	
	금 액		금 액	
I . 미 처 리 결 손 금		189,673,162		272,621,196
1 . 전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272,621,196		470,869,490	
2 .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0		0	
3 .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5 . 중 간 배 당 금	0		0	
6 . 당 기 순 이 익	82,948,034		198,248,294	
II . 결 손 금 처 리 액		0		0
1 .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0		0	
2 . 기 타 법 정 적 립 금 이 입 액	0		0	
3 . 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0		0	
4 . 재 평 가 적 립 금 이 입 액	0		0	
5 . 자 본 준 비 금 이 입 액	0		0	
III . 차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189,673,162		272,621,196





## 제6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정관 변경(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1호, 제35조 제1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 정관 변경 사유

- 2023년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 현지조치에 따른 정관 변경
  - 협동조합기본법 / 시행령 법령사항 준수
  - 기타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현행화
  
- 표준정관 준수 / 전자화에 따른 현행화
  
- 개정이력 일괄삭제(부칙으로 대신)
  
- 오타수정

\* 참고 사항

	정 관	규 약	규 정
의 결	총회 (과반수 출석, 안건별 2/3이상 또는 1/2이상 찬성)	총회(대의원총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사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 정관 변경(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p><b>제2조(목적)</b>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목적)</b>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b>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b>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4조(사무소의 소재지)</b>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p> <p>② &lt;삭제, 2020. 5. 09.&gt;</p> <p>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 2층(법동) &lt;개정, 2020. 5. 9.&gt; &lt;개정, 2021. 2. 27&gt;</p> <p>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 2층(법동) &lt;개정, 2021. 2. 27&gt;</p> <p>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p> <p>4. &lt;삭제, 2020. 5. 09.&gt;</p>	<p><b>제4조(사무소의 소재지)</b>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b>계족로663번길 26(법동)에 둔다.</b></p> <p>②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b>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b></p> <p>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b>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2층(법동)</b></p> <p>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p> <p>③ <b>요양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b></p> <p>1. <b>민들레주간보호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83, 5층</b></p>
<p><b>제6조(광고방법)</b>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p> <p>② -----</p>	<p><b>제6조(광고방법)</b>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b>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indlle.org)에 게시하고</b>,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p> <p>② -----</p>
<p><b>제11조(조합원의 가입)</b> ① -----</p> <p>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p> <p>④ -----</p>	<p><b>제11조(조합원의 가입)</b> ① -----</p> <p>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b>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b>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b>가입 후 1개월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b></p> <p>④ -----</p>
<p><b>제14조(탈퇴)</b>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p> <p>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p>	<p><b>제14조(탈퇴)</b> ① <b>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b></p> <p>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p> <p>1. <b>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b></p>

현행	개정(안)
<p>을 상실한 경우</p> <p>2. 사망한 경우</p> <p>3. &lt;삭제, 2020. 5. 09.&gt;</p> <p>4.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신고를 받은 경우 &lt;개정, 2020. 5. 09.&gt;</p> <p>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p>	<p>2. 사망한 경우</p> <p>3. <b>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b></p> <p>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p>
<p><b>제15조(제명)</b>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p> <p>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p> <p>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4. -----</p>	<p><b>제15조(제명)</b>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p> <p><b>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p> <p><b>2.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b></p> <p><b>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b></p> <p>4. -----</p>
<p><b>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b>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환급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lt;개정, 2020. 5. 09.&gt;</p>	<p><b>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b> ① <b>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b></p> <p>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b>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b></p> <p>③ <b>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b></p> <p>④ <b>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원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b></p>
<p><b>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b>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p>	<p><b>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b> ① <b>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다.</b></p> <p>② <b>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b></p>
<p><b>제18조(출자)</b> ① -----</p> <p>1.-----</p> <p>2.-----</p> <p>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4. -----</p> <p>5. -----</p> <p>6. -----</p> <p>② -----</p> <p>⑤&lt;삭제, 2021. 2.27&gt;</p>	<p><b>제18조(출자)</b> ① -----</p> <p>1.-----</p> <p>2.-----</p> <p>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b>지원대상자</b></p> <p>4. -----</p> <p>5. -----</p> <p>6. -----</p> <p>② -----</p> <p>⑤ <b>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b></p>

현행	개정(안)
<p><b>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b> -----</p> <p>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p>	<p><b>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b> -----</p> <p>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b>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b></p>
<p><b>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b> -----</p> <p>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p>	<p><b>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b> -----</p> <p>② <b>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b></p>
<p><b>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b>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p> <p>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p> <p>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p> <p>④ -----</p> <p>⑤ -----</p>	<p><b>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b>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p> <p>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p> <p>③ 조합은 <b>제2항에</b>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p> <p>④ -----</p> <p>⑤ -----</p>
<p><b>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b> 조합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p> <p>1. 시설 사용료</p> <p>2. 조합가입 수수료</p> <p>② -----</p> <p>③ -----</p> <p>④ -----</p>	<p><b>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b> <b>조합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b></p> <p>② -----</p> <p>③ -----</p> <p>④ -----</p>
<p><b>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b>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p> <p>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1. -----</p> <p>2. -----</p> <p>3. -----</p>	<p><b>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b> 대의원은 성실히 <b>대의원총회</b>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p> <p>② <b>대의원총회</b>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b>대의원총회</b>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1. -----</p> <p>2. -----</p> <p>3. -----</p>

현행	개정(안)
<p><b>제30조(정기총회)</b>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소집한다.</p>	<p><b>제30조(정기총회)</b>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b>3개월</b> 이내에 이사회가 소집한다.</p>
<p><b>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b>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p>	<p><b>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b>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b>전자통신매체 등으로</b>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p>
<p><b>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b>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의 변경</li> <li>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li> <li>3. 임원의 선출과 해임</li> <li>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li> <li>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li> <li>6. 감사보고서의 승인</li> <li>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li> <li>8. 조합원의 제명</li> <li>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li> <li>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li> <li>11.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b>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의 변경</li> <li>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li> <li>3. 임원의 선출과 해임</li> <li>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li> <li>5. <b>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b></li> <li>6. 감사보고서의 승인</li> <li>7. <b>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b></li> <li>8. 조합원의 제명</li> <li>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li> <li>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li> <li>11.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34조(총회의 의사)</b> ① -----</p> <p>② -----</p> <p>③ -----</p> <p>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p>	<p><b>제34조(총회의 의사)</b> ① -----</p> <p>② -----</p> <p>③ -----</p> <p>④ <b>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p>
<p><b>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b>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의 변경</li> <li>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li> <li>3. 조합원의 제명</li> <li>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li> </ol>	<p><b>제35조(특별의결사항)</b>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의 변경</li> <li>2. <b>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b></li> <li>3. 조합원의 제명</li> <li>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li> </ol>
<p><b>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b>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p>	<p><b>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b>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b>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b>)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b>1인에 한정한다.</b></p>

현행	개정(안)
<p><b>제41조(이사회) ①</b> -----            ② -----            ③ -----            ④ 이사회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21.2. 27&gt;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b>제41조(이사회) ①</b> -----            ② -----            ③ -----            ④ 이사회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모바일메신저, 문자 등) 등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b>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b>            ⑥ <b>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b>            ⑦ <b>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b></p>
<p><b>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b>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            ③ -----</p>	<p><b>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b>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b>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b>            ② -----            ③ -----</p>
<p><b>제43조(이사회 의사) ①</b>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p><b>제43조(이사회 의사) ①</b>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b>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p>
<p><b>제45조(임원의 정수) ①</b>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혹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5. 09.&gt;            ② -----</p>	<p><b>제45조(임원의 정수) ①</b>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b>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b>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p>



현행	개정(안)
<p><b>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b> -----</p> <p>1. -----</p> <p>2. -----</p> <p>3. -----</p> <p>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p> <p>③ -----</p> <p>④ -----</p>	<p><b>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b> -----</p> <p>1. -----</p> <p>2. -----</p> <p>3. -----</p> <p><u>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u></p> <p>③ -----</p> <p>④ -----</p>
<p><b>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b>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p> <p>③ -----</p> <p>④ -----</p> <p>⑤ -----</p> <p>⑥ -----</p> <p>⑦ -----</p> <p>⑧ -----</p> <p>⑨ -----</p>	<p><b>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b> <u>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② -----</p> <p>③ -----</p> <p>④ -----</p> <p>⑤ -----</p> <p>⑥ -----</p> <p>⑦ -----</p> <p>⑧ -----</p> <p>⑨ -----</p>
<p><b>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p> <p>2. 피한정후견인</p> <p>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p> <p>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p>	<p><b>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u>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u>이 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u>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u>5의 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u></p> <p>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p> <p>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u>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u>은 당연히 퇴직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u>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u>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안)
<p><b>제50조(임원의 임기) ①</b> -----</p> <p>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p>	<p><b>제50조(임원의 임기) ①</b> -----</p> <p>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b>두 차례만</b> 연임할 수 있다.</p> <p>③ -----</p>
<p><b>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b> -----</p> <p>② -----</p> <p>③ -----</p> <p>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b>그러하지 아니하다.</b></p>	<p><b>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b> -----</p> <p>② -----</p> <p>③ -----</p> <p>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b>그러하지 아니한다.</b></p>
<p><b>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b> 이사장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p> <p>② -----</p> <p>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p> <p>④ -----</p>	<p><b>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b> <b>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b></p> <p>② -----</p> <p>③ 이사장이 <b>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b>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p> <p>④ -----</p>
<p><b>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①</b>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56조(임원의 보수 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b></p>
<p><b>제57조(임원의 해임) ①</b>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b>제57조(임원의 해임) ①</b>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b>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p> <p><b>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b></p> <p><b>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b></p> <p><b>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b></p> <p><b>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b></p> <p><b>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b></p>

현행	개정(안)
<p><b>제58조(운영의 공개)</b>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p> <p>④ -----</p> <p>⑤ -----</p> <p>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규약, 규정</li> <li>2. 사업결산보고서</li> <li>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li> <li>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li> <li>5. &lt;삭제, 2020. 5. 09.&gt;</li> </ol>	<p><b>제58조(운영의 공개)</b> ① <b>조합</b>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b>조합</b>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p> <p>④ -----</p> <p>⑤ -----</p> <p>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b>4개월</b> 이내에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규약, 규정</li> <li>2. 사업결산보고서</li> <li>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li> <li>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li> </ol>
<p><b>제61조(사업의 종류)</b>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li> <li>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li> <li>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li> <li>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li> <li>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li> <li>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li> <li>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li> <li>아.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lt;신설, 2020. 5. 09.&gt;</li> </ol> </li> <li>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li> </ol> <p>② -----</p> <p>③ -----</p> <p>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lt;개정, 2021. 2. 27&gt;</p> <p>⑤ -----</p>	<p><b>제61조(사업의 종류)</b>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b>의료기관 개설·운영</b>,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li> <li>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li> <li>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li> <li>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li> <li>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li> <li>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li> <li>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li> <li>아.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li> </ol> </li> <li>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li> </ol> <p>② -----</p> <p>③ -----</p> <p>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b>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b>'으로 한다.</p> <p>⑤ -----</p>
<p><b>제62조(사업의 이용)</b>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li> </ol>	<p><b>제62조(사업의 이용)</b>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b>지원대상자</b></li> </ol>

현행	개정(안)
5. ----- 6. ----- 7. ----- 8. ----- ② -----	5. ----- 6. ----- 7. ----- 8. ----- ② -----
<b>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b>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	<b>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b>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b>3개월</b>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
<b>제64조(회계연도 등)</b>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b>제64조(회계연도)</b>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b>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b> 로 한다.
<b>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b>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b>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b>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b>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귀속한다.</b>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b>제11조(10차 개정)</b> 2024년 2월 27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공고방법), 제11조(조합원의 가입), 제14조(탈퇴), 제15조(제명),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18조(출자),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제23조(경비 미 사용료와 수수료), 제29조(대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제30조(정기총회),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제32조의 2(조합원제안권),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제35조(특별의결사항), 제37조(대리인의 될 자격), 제41조(이사회),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제43조(이사회 의 의사), 제45조(임원의 정수), 제47조(임원의 정수),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0조(임원의 임기),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제57조(임원의 해임), 제58조(운영의 공개), 제61조(사업의 종류), 제62조(사업의 이용),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4조(회계연도 등),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제7호 의안 임원(이사, 감사) 선출의 건

- 의결주문: 임원(이사, 감사)을 선출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3호, 제45조, 제46조, 선거관리규정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혹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에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조세종
선거관리위원	이자우
선거관리위원(감사)	백종범

## 2. 경과

2024.01.25	[이사회] - 2024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 - 선출하여야할 임원의 정수 확정
2024.01.26.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1) 위원장 선출(조세종 위원장) 2) 임원선거 일정 확정
2024.02.01.	임원선거(이사, 감사) 공고
2024.02.16.	임원후보자 자격심사 임원후보자 추천 확인-전형위원회
2024.02.19.	임원후보자 자격심사 임원후보자선거공보 및 선거운동(~23일)
2024.02.23.	선거점검
2024.02.24	임원(이사, 감사)선거

## 3. 입후보 현황


구분	임원정수	등록	비고
이사	11명	11명	
감사	2명	2명	
<b>계</b>	<b>13명</b>	<b>13명</b>	


#### 4. 임원 선출 선거 입후보자 소개


##### 1) 이사후보


	<b>기호 1번</b>	<b>국현정</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18년 04월 26일</li> <li>○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민참여건강진센터장</li> <li>○ 대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건강안전분과장</li> <li>○ 대덕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위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조합원의 가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p>			
	<b>기호 2번</b>	<b>박종희</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22년 04월 01일</li> <li>○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대전 지회장 및 충북 지부장</li> <li>○ 대전 아이쿱생협 이사</li> <li>○ 현)민들레한의원 원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민들레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직원이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p>			
	<b>기호 3번</b>	<b>박천경</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21년 10월 28일</li> <li>○ 대전 여성 장애인 연대 이사</li> <li>○ 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 강사</li> <li>○ 노아 단기 보호센터 인권 지킴이 단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열심히 하겠습니다.</p>			
	<b>기호 4번</b>	<b>봉미경</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11년 12월 09일</li> <li>○ 대전, 옥천 소재 도서관과 문화원에서 영어강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올해도 민들레의 발전을 기원합니다.</p>			





	<b>기호 5번</b>	<b>석연희</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08년 08월 27일</li> <li>○ 전)민들레의료사협 상무이사</li> <li>○ 현)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li> <li>○ 현)민들레의료사협 이사장</li> </ul>		
	<p>신뢰받는 민들레,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힘써보겠습니다.</p>		


	<b>기호 6번</b>	<b>송직근</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10년 07월 15일</li> <li>○ 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직원</li> <li>○ 전)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li> <li>○ 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li> </ul>		
	<p>조합원과 협동하여 '건강관계망'을 넓혀나가겠습니다.</p>		

	<b>기호 7번</b>	<b>신현정</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02년 01월 24일</li> <li>○ 전)충남 공주의료원장</li> <li>○ 전)유성보건소장</li> <li>○ 현)민들레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li> </ul>		
	<p>지역사회 의료돌봄의 선구자, 민들레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사협으로.</p>		


	<b>기호 8번</b>	<b>이근화</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18년 05월 17일</li> <li>○ 한빛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li> <li>○ 전)민들레주간보호센터 추진위원</li> <li>○ 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li> </ul>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b>기호 9번</b>	<b>전종훈</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20년 07월 06일</li> <li>○ 전)소망정신건강의학과 원무과장</li> <li>○ 현)정신재활시설 시설장</li> <li>○ 현)공생가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li> </ul>		
	<p>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p>		

	<b>기호 10번</b>	<b>정운재</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15년 08월 03일</li> <li>○ 전) 농림축산식품부 근무</li> <li>○ 전) 특허청 근무</li> <li>○ 현) 주식회사 이엔티 부사장</li> <li>○ 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li> </ul>		
	<p>생동감 있는 민들레를 만들겠습니다.</p>		

	<b>기호11번</b>	<b>최채옥</b>	<b>이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19년 06월 04일</li> <li>○ 현)밝은미래재가센터 운영</li> </ul>		
	<p>민들레와 함께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		

2) 감사 후보

	<b>기호 1번</b>	<b>김정호</b>	<b>감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22년 02월 03일</li> <li>○ 전) 김정호세무회계사무소 대표</li> <li>○ 현) 세무법인텍스앤로 유성지점 대표세무사</li> </ul>		
	<p>투명한 회계업무를 확보코자 엄격하고 정확한 감사 실시</p>		

	<b>기호 2번</b>	<b>박봉희</b>	<b>감사 후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가입일 : 2015년 09월 04일</li> <li>○ 전)건강+협동연구소 협동조합 이사</li> <li>○ 전)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li> <li>○ 현)치유공간마음의숲 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li> </ul>		
	<p>민들레 20년 역사현장을 좀더 가까이 지켜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조합원이 주인 되는 건강자치력 향상에도 직접 참여해보는 발로 뛰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p>		



## 제8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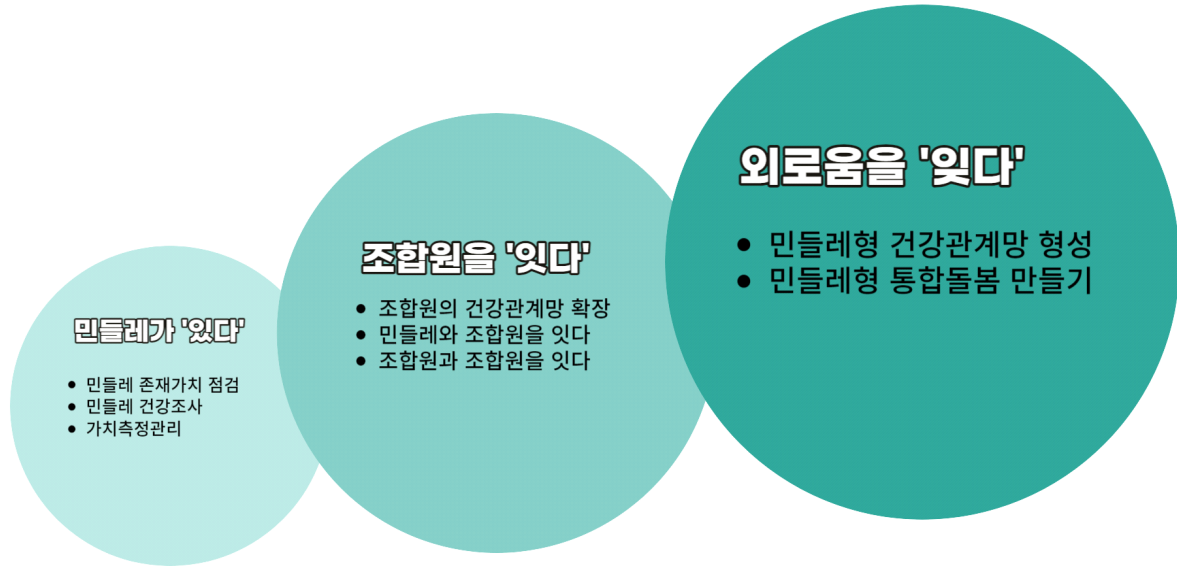
- 의결주문: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4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1. 사업방향

•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



## 2.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

## 1) 민들레가 '있다'

- ① 민들레 존재가치 점검 : 민들레, 적정진료, 예방, 주치의, 건강자치력, 건강반, 건강리더 등
- ② 가치측정·관리 : 민들레10원칙 점검, 새로운 지표(SDGs, ESG 등) 활용검토
- ③ 민들레건강조사 : 진료권 내 지역주민건강육구조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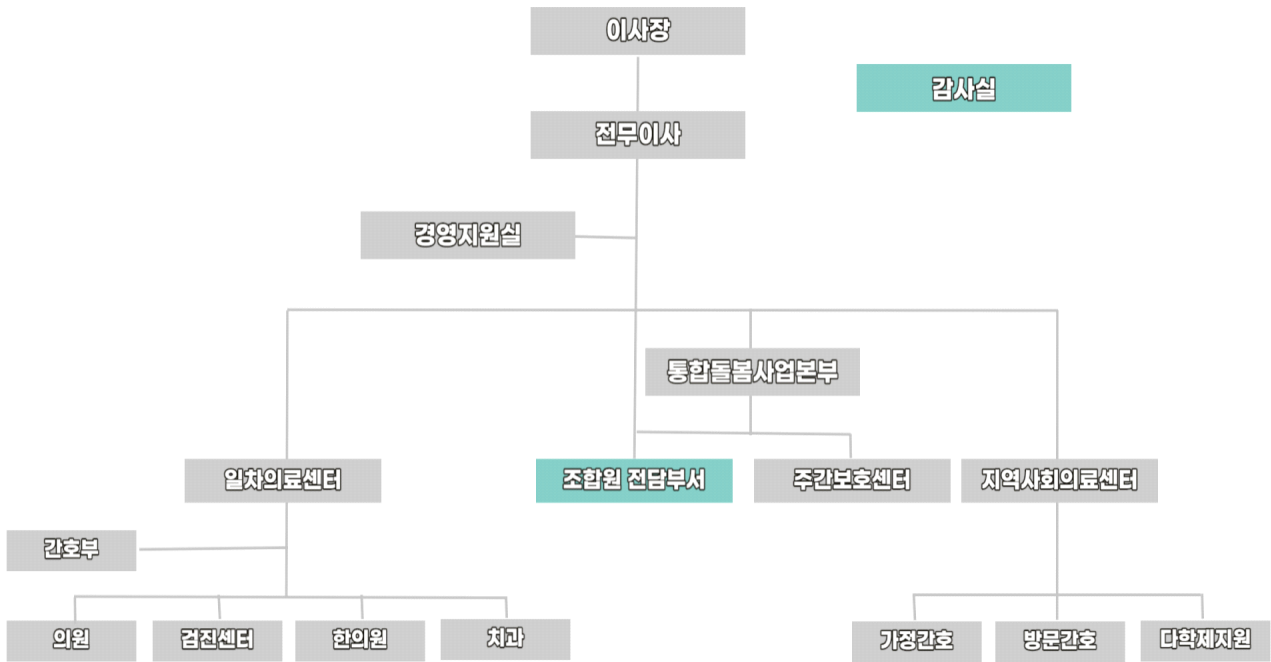
## 2) 조합원을 '있다'

- ① 민들레를 중심으로 조합원의 건강관계망 확장
- ② 조합원과 조합원 : 건강증진활동(건강반, 건강리더, 자원활동 등), 민들레 마켓
- ③ 조합과 조합원 : 상담창구, 자원조사, 육구조사

## 3) 외로움을 '있다'(결과)

- ① 서로돌봄 : 연결을 통한 민들레형 건강관계망 형성
- ② 공동체 돌봄 : 민들레형 통합돌봄 만들기, 건강생태계 구축
- ③ 민들레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등) 검토

3. 조직개편 : 감사실(신설), 조합사업부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통합 → 조합원 전담부서(개편)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직개편(안) : 실행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1) 감사실(신설)

- ① 법령, 규정 준수 여부 감독 및 시정
- ② 자체 감사 계획수립 및 시행
- ③ 대외, 상급기관 감사 총괄대응
- ④ 감사 우수 직원 포상 및 연수
- ⑤ 직원고충처리

2) 조합원 전담부서(개편)

- ① 배경
  - 조합원 및 조합활동 활성화 수요 대응
  - 건강반, 건강증진활동 등 역할중복(상반기 감사제안)
- ② 주요역할
  - 등록관리 : 가입, 탈퇴, DB관리 등
  - 조합원 교육 : 신입조합원, 대의원, 임원(대상별), 건강교육(주제별) 등
  - 홍보 : 홈페이지 및 SNS 관리, 소식지, 기자단 운영, 기부금 운영보고 등
  - 조합원 활동 : 건강반, 건강리더, 자원활동, 조각 등
  - 통합돌봄 : 조합원 상담창구(정기상담, 안부확인, 통합돌봄연계), 기억학교, 대덕구통합돌봄
  - 주치의 지원



#### 4. 부서별 주요사업계획



##### 1) 일차의료센터

- ① 의원 : 응급의료장비 관리, 진료대기시간 효율관리, 분기별 원장-직원 교육 및 모임
- ② 건강검진 : 의료장비 점검관리, 질향상, 홍보, 조합원 건강검진 챙기기
- ③ 한의원 : 환자의 주소증 해소, 적정진료, 조합원 서비스 향상(소속감 및 신뢰도 향상)
- ④ 치과 : 진료환경 개선, 구강검진 등 예방진료 강화, 방문구강활동 확대 등

##### 2) 지역사회의료센터

- ① 방문의료 : 왕진, 가정간호, 방문간호, 다학제지원 등
- ②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다학제장애인건강주치의 연계로 미충족 욕구 해결방안 모색
- ③ 가치기반 지역사회 연대활동 : 연대활동, 실습지도, 공동체 학습, 시민참여 등 기획

##### 3) 주간보호센터

- ① 주치의 시스템강화 및 의료사업소와 긴밀한 협력
- ② 정기 평가 대피 점검강화
- ③ 분반 및 이용자 선택형 프로그램 본격 운영,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 4) 조합원 전담부서 : 조합사업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① 조합원관리체계 구축 : 교육, 홍보, 조합활동 등
- ② 건강자치력향상 : 건강반, 만성질환건강반, 건강학교, 건강리더, 건강화페, D-cafe
- ③ 돌봄지원 : 퇴원환자돌봄, 기억학교

##### 5) 경영지원실

- ① 중·장기 공간운영계획 수립
- ② 지원업무 효율성 모색, 내부역량강화

## 5. 6대 핵심지표 달성 목표

### 1) 6대 핵심지표 달성 기초

6대 핵심지표는 민들레 설립 이념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기본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조합원의 활동과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들레 조합원으로서 역할과 성장을 목표로 질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2) 6대 핵심지표

#### ① 조합원

2023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조합원 4,583세대 (180세대 증가)	총 조합원 4,783세대 (증감계 200명)	일차의료센터 112명 기타 88명

#### ② 출자금

2023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출자금 누계액 1,409,370,000원	1,444,370,000원 증감계 3,500만원	신규조합원 1,000만원 정기증가 2,500만원

#### ③ 건강리더

2023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339명 (33명 증가)	누적 369명 증가 30명	건강리더 역할 모색 (자원봉사, 건강조사원 등)

#### ④ 건강반

2023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49개 반원 382명	45개 350명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⑤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2023년 말 기준	목표	비고
260세대 (3세대 감소)	300세대 (40세대 증가)	일차의료센터 14명 건강반 등 26명

#### ⑥ 자원봉사

2023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연인원 219명 봉사시간 515시간	연인원 250명 봉사시간 550시간	자원봉사(자원활동) 내실화.

## 6. 단위 부서별 사업계획

### 1) 일차의료센터

#### (1) 민들레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 료 서 비 스 사 업 목 표	의료 기기 관련	-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를 위한 장비관리	- 의료장비 ( 산소통,산소포화도 등 )중 a/s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확인하여 응급상황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관리하고 정비하기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하여 응급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진료 환자 관리	- 진료대기시간의 효율적인 관리	- 대기환자의 컴플레인 감소를 위해 검사하시는 분들은 검사 중 명찰이나 스티커 부착으로 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만들기  - 만성질환 교육 동영상 업로드 필요(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맨손체조, 운동, 건강관련 동영상 등)
	수익 창출 관리	- 매출목표 3%상승	- 일차만성질환 참여자의 신규,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만성 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
	조합원 관리	- 조합원 가입(30명) - 스스로 조합원(5여)	- 조합 관련 자료 비치하여 조합 홍보  -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 후 조합 안내. 설명
	팀워크 관리	- 직원간의 연대	- 분기별 원장님들과 직원간의 유대감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모임 (응급상황 대처, 만성질환에 관한 교육)

(2) 민들레건강검진센터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 료 서 비 스 사 업 목 표	의료 기기 관련	- 의료 장비 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장비 노후화로 정기적인 점검시스템진행</li> <li>- 내시경 스코프 사용시 렌즈와 방수관리 잘하고 검사 시 환자케어 잘하기 (매일장비점검하고 기록하고 유지관리하기)</li> </ul>
	진료 환자 관리	-검진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혈 후 지혈안내를 적극적인 액션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li> <li>- 65세이상 급여검진대상자 시 흉부사진을 판독 의뢰하기</li> <li>- 진료 수면환자 시 흉부사진 확인하기</li> <li>- 홀수년 대변검사 상담자는 상담안내문 주고 상담도 바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기</li> <li>- 대장내시경주의사항에 검사항목 만들어서 검사내용 체크</li> <li>- 1차검진 한 분들은 10일안에 결과 통보 하기</li> <li>- 구강검진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안내하기</li> </ul>
	수익 창출 관리	- 매출 3%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 후 추적 검사 대상자한테 문자, 전화 작업 (초음파, 위, 대장, 간질환, 심비대 등)</li> <li>- 대장내시경 매일 3건 예약해서 검사 유지하기</li> <li>- 상반기 전화 작업으로 검진하는 분, 만성질환 있는 분들은 혈관 노화도 검사 서비스 진행하기</li> <li>- 전직원 검진홍보로 검진받는 경우 소개 직원에게 부가검사 진행하기</li> <li>- 대덕구 인근 신규 아파트에 검진 홍보하기</li> <li>- 연말검진 직원 지원받기(전화예약과 문진표 작성 ,결과정리등)</li> </ul>
	조합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원 건강예방차원으로 검진 챙기기</li> <li>- 조합원 친밀감 갖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원조합원인 경우 각 검사 파트에서 조합원에게 방문 감사 인사하기</li> <li>- 신규 조합원 관리로 수건선물하기</li> <li>- 조합원 가입 60명 /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5명</li> <li>- 조합원들만 부가서비스진행과 중요행사 진행</li> </ul>
	팀워크 관리	-직원간의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원장님들과 직원간의 유대감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모임 (응급상황 대처, 만성질환에 관한 교육)</li> </ul>

(3) 민들레한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 료 서 비 스 사 업 목 표	진료 관리	- 환자의 주소증 해소  - 적정진료	- 뜸 치료 시 화상 유의 및 처치 후 관리 안내  - 사혈부항 처치 후 주의사항 안내  - 첩약 환자 관리; 첩약 배송 후 확인 및 복약 안내 전화  - 매일 진료시작 전 물리치료 장비 점검과 침상 매트 및 핫팩 온도 체크 후 진료
	의료 서비스	- 환자과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	- 내원자에게 친절하게 응대  - 초진, 주말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 녹용 첩약 환자에게 한방파스 1세트 지급  - 진료대기 시간 활용 (발마사지, 동영상시청, 한의원 및 조합 홍보물)  - 7번 침상 벽 도배완료 및 ICT 교 체 신청
	운영 관리	- 근무자들의 화합 - 내원자의 안전과 편안함 - 경제적, 효율적 운영	- 연 2회 직원 회식  - 월 1회 의약품, 의료소모품 재고파악과 정리  - 의약품, 의료소모품, 기타 비품의 적정 구매와 사용  - 원내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  - 퇴근 시 전기 및 시설물 점검으로 안전 생활화  - 공진단 할인 행사 공고 및 홍보 (설날, 어버이날, 추석, 한여름, 수능 기간에 홈페이지와 조합원 문자발송 외)  - 카드뉴스: 조합원에게 한의 치료 홍보 및 교육  - 2,800만원/ 월
	조합원 관리	- 기존 조합원의 소속감과 조합에 대한 신뢰도향상  - 신규 조합원 확보	- 내원 환자 접수 시 조합원 여부 확인 및 조합 정보 제공과 홍보  - 비급여 진료 상담 시 조합원 혜택 홍보 및 가입 권유 (조합원 가입 12명, 스스로조합원 가입 2명)  - 기존 조합원에게 스스로조합원 혜택 정보 안내

(4) 민들레치과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료 서비스 사업 목표	의료 기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의료 장비 교체</li> <li>- 진료 환경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실 모니터 교체</li> <li>- 자외선 소독기 교체</li> <li>- 환경 개선: 냉난방기 청소, 공기청정기, 청소기 구입</li> </ul>
	진료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 치주관리를 통한 잇몸질환 예방</li> <li>- 스켈링 &amp; RP: 100건/월</li> <li>- 임플란트환자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환자 정기 검진과 리콜 문자 발송하기</li> <li>- 임플란트 환자 정기적 관리를 위한 문자 발송하기</li> <li>- 스켈링 후 차트에 담당자 기록과 환자 상태 기록하여 내부 공유</li> </ul>
	수익 창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수입 목표 전년대비 5% 상승</li> <li>- 구강검진 챙기기 연 500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 시 구강검진 안내하기</li> <li>- 구강검진 환자 진료로 이어지도록 하기</li> <li>- 비수기(봄, 가을)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연 1회 보험 치석 제거 알림 문자 발송하기</li> <li>- 스켈링시 착색제거는 추가비용받기( 2만원)</li> </ul>
	조합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유무 확인하기</li> <li>- 조합원가입 10명</li> <li>- 스스로조합가입 2명</li> <li>- 수요일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수납 시 조합원 가입여부 확인 / 신규 조합원 가입 안내하기</li> <li>- 주간보호센터 방문</li> <li>- 지센과 협업하여 방문활동</li> <li>- 잇솔질 교육 ( 건강반, 조합원, 어린이집등) 치과방문 예약신청 팀별, 개인별 가능</li> </ul>

2) <지역사회의료센터> 사업계획서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4년 방문의료 (방문진료/가정간호/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2024.01. ~ 2024.12.

사업개요

o 목적

-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건강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시스템 만들기

o 주요사업내용

- 대상: 재가 및 시설의 거동 불편자 (장애인, 어르신, 수술 후 퇴원환자, 기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병원 내원이 힘든 환자), 지역사회 의뢰 대상
- 내용: 의료접근이 불편한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서 의뢰받은 대상에게 다학제 팀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 매출목표: 7억 (23년 매출 6.6억)

o 추진목표

구분	목표	2024년 목표
<b>방문진료</b>	왕진, 가정간호 및 작업치료 서비스를 팀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	900건*1
가정간호(가정)		5,200건
가정간호(시설)		2,000건
방문작업치료2		50건
재택의료센터		100명*1
(재택) 방문간호		
(재택) 사회복지		
유성통합돌봄 간호		

\*1 비교: 의사 1인 추가 구인 가능한 경우의 목표.

o 추진전략

- 1)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홍보 및 활성화
- 2) NECA 환자 중심 방문의료 연구 사업 참여
- 3) 호스피스 및 가정임종을 위한 팀원 교육 (사전연명의료제도 등)
- 4) 당사자 중심의 복약관리 (약달력, 약포지 등을 활용하여 복약순응도 향상)
- 5) 발관리 등 민들레 특화 방문의료서비스 지속
- 6) 마이차트 자체시범사업 시행 (환자, 보호자, 돌봄제공자 및 의료진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차트)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4년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지역사회재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2024.01. ~ 2024.12.

**사업개요**

**o 목적**

- 장애인의 질병예방 및 치료, 활동과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o 주요사업내용**

- 대상: 중증 장애인
- 내용: 주치의 팀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에 대해 지속적,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방문 및 내원, 검진, 전화나 SNS 상담, 건강반 활동,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의 건강관리)
- 목표매출: 2.5억(23년 2.3억)

**o 추진추진목표**

구분	목표	2024년 목표
방문진료	중증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향상	800건
방문간호		1,500건
방문작업치료		300건
장애인건강반		주 1회 이상
장애인체력인증		2회

**o 추진전략**

2024년부터는 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다학제장애인건강주치의팀” 서비스를 3년간 개발할 예정이므로, 기존의 전략이외에 장애인들의 미충족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진행할 예정임. 특히 함께 하는 안산의 료사협, 지역내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서비스 개발을 할 예정임.

- |                                       |                            |
|---------------------------------------|----------------------------|
| 1) 장애인 건강검진,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 지속 독려 및 연계  | 2) 예방접종 지원                 |
| 3) 만성질환 교육 등록 및 시행 ( 정신장애인 중 비만관리 그룹) | 4) 복약 관리 (약달력 활용)          |
| 5) 발 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행                 | 6) 평생교육, 스포츠, 취업 연계        |
| 7) 장애인에게 듣는 조합원 및 직원 교육 기회            | 8) 우울증 관리 필요 (PHQ-9 시행 고려) |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4년 가치기반 지역사회 연대활동	자체	2024.01. ~ 2024.12.
<b>사 업 개 요</b>		
<p><b>o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건강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연대하고자 함</li> </ul> <p><b>o 주요사업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용: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및 연대활동,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습지도, 공동체학습, 시민참여 등을 기획 진행.</li> </ul> <p><b>o 추진전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스로 학습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연명의료제도, 발달장애 커뮤니티케어, 치매서포터즈,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한 학습</li> </ul> </li> <li>2) 학습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센 내부에서 매월 학습하고 나누기</li> <li>- 작업치료 전공학생, 노인전문간호사 실습지도</li> <li>- 외부 강의, 발표, 방문의료 저서 공동 집필</li> </ul> </li> <li>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여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상담소,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참여</li> <li>-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li> </ul> </li> </ol>		

3) <주간보호센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자체	2024.01. ~ 2024.12.
<b>사 업 개 요</b>		
<p><b>o 목적</b> 주간보호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한다.</p> <p><b>o 사업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내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보건·복지 통합 돌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치의, 공백없는 케어, 기능에 따른 분반, 의사 존중에 따른 선택형 프로그램</li> </ul> </li> <li>• 지속적인 평가과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업무역량 강화,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 재정적 자립 운영구조 구축</li> </ul> </li> <li>•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자원 활용, 돌봄 역량 강화, 지역사회 신뢰 구축</li> <li>- 등록 인원 50명, 평균 이용 인원 4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45명 달성 목표)</li> </ul> </li> </ul> <p><b>o 총사업비</b> 635,330,332원</p> <p><b>o 사업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운영 사업 : 기관관리, 회계·인력·시설·장비 관리</li> <li>- 노인장기요양사업 :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안전 및 건강 도모, 일상지원</li> <li>- 프로그램 운영사업 : 인지능력,체력향상 위한 프로그램 운영, 욕구 및 특성 맞춤형 지원</li> <li>- 직원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 직원교육, 복지 증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li> <li>-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 자원활동가, 지역사회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li> </ul> <p><b>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치의 시스템 강화 및 각 사업소 긴밀한 협력</li> <li>- 하반기 평가 대비한 상반기 내 행정서류 점검 보완</li> <li>- 입소자 분반 및 선택형 프로그램 본격 운영</li> <li>- 일차의료센터 연계, 치매전문교육 등 지원으로 종사자 돌봄역량 향상</li> <li>-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입소자 모집 확대, 새 입소자 안정적 수용체계 마련</li> </ul>		

4)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계획서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만성질환 건강반	자체	2024.03 ~ 2024.12

사업개요

○ 목적

- 건강취약계층(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의 건강반 활동을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및 관계돌봄 실천

○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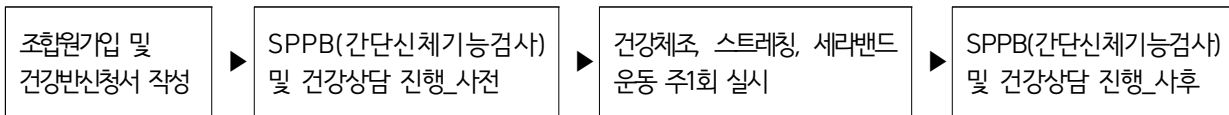
- 신체건강 (정적균형, 보행속도, 일어서기, 노쇠지수 등) 향상
- 돌봄관계망 확대

○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7,680,000	
강사비(신체활동 및 어르신 연락 등)	5,760,000	60,000원×4개반×24회(1hr)
조 각	1,920,000	1,000원×80명×24회

○ 사업내용

- 대상 :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건강반을 통해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65세이상 조합원
- 기간 : 3월 ~ 6월 (12회), 9월~12월(12회)
- 방법 : 건강반(4개반) 별 주1회, 건강체조 및 스트레칭, 세라밴드 활용 근력운동 지도
- 장소 : 청바지공작소
- 운영절차 :



○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정적균형, 보행속도, 일어서기, 노쇠지수 향상을 위한 운동지도 커리큘럼 작성
- SPPB(간단신체기능검사) 사전 및 사후 실시
- 건강반 시작(초동모임) 및 마무리(건강반축제) 워크숍에 사회적 관계망 지도 그리기를 통해 건강반이 관계망 확대 및 돌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 건강학교	대전대학교, 자체	2024.07. ~ 2024.08.

**사업개요**

**o 목적**

- 건강반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자치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o 사업목표**

-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정보 및 방법 교육 제공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b>총 계</b>	<b>1,400,000</b>	*대전대학교 링크+사업단 재직자교육프로그램 100만원 지원예정
강사비	500,000	250,000원×2명
다과비	500,000	6,250원×80명
조 각	400,000	1,000원×80명×5회

**o 사업내용**

- 대상 : 건강반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80명
- 기간 : 7월 ~ 8월
- 방법 : 건강반 겨울방학기간 동안 총5회기 운영
- 장소 : 청바지공작소
- 내용 :

교육일정(안)	주제(안)	강사
7월 10일(수) 10:00~11:00	2024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국현정 센터장
7월 17일(수) 10:00~11:00	만성질환 이해 및 관리	황정인 방문간호팀장
7월 24일(수) 10:00~11:00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방법	외부강사
7월 31일(수) 10:00~11:00	안전교육(생활, 교통, 자연재난 등)	외부강사
8월 7일(수) 10:00~11:00	나를 건강하게, 지구를 건강하게	민들레 조합원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사업수행 예산 확보를 위해 대전대학교 링크+사업단 재직자교육프로그램을 신청
-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에 반영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치매를 예방하는 '기억학교'	대덕구	2024.03 ~ 2024.12

**사 업 개 요**

**o 목적**

-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와 연대·협력 구조로 사각지대 없는 경증치매어르신 통합돌봄 환경 조성을 통한 치매예방 및 노인과 돌봄가족의 삶의 질 향상

**o 사업목표**

-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거나 치매를 예방하길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인지건강서비스 제공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b>총 계</b>	<b>20,000,000</b>	*대덕구형 마을돌봄사업 보조금
서비스제공비	12,000,000	인지활동서비스
서비스운영비	8,000,000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ICT활용비, 데이터사용료, 인지활동도구 이용료 등

**o 사업내용**

- 대상 :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거나 치매를 예방하길 희망하는 대덕구에 사는 60세이상 어르신  
\*우선순위 : 노인 75세이상 우선, 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
- 기간 : 3월 ~ 12월
- 장소 : 서비스대상 가정내
- 내용 :
  - ① (서비스 신청 최초 1회)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② (서비스 이용 전, 후) ICT\_Cogmate 뇌건강강측정(사전/사후)
  - ③ (주1회, 총25회 이용) 인지활동서비스 : 인지학습교구(노메이드) 서비스 제공, ICT(메모핏) 활용 신체운동 서비스 제공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위해 현수막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 서비스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 서비스제공인력 실무회의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 서비스이용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점검을 통한 만족도 평가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퇴원환자돌봄서비스	대덕구	2024.03 ~ 2024.12

**사업개요**

**o 목적**

- 의료기관 퇴원 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을 회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 도모 및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o 사업목표**

- 수술 등의 이유로 퇴원한 환자에게 자립생활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 연계 제공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b>총 계</b>	<b>30,000,000</b>	*대덕구형 마을돌봄사업 보조금
서비스제공비	21,500,000	방문재활서비스
서비스운영비	8,500,000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식사대용식, 회의비 및 간담회 등

**o 사업내용**

- 대상 :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덕구에 사는 60세이상 어르신  
\*우선순위 : 노인 75세이상 우선, 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

- 기간 : 3월 ~ 12월

- 장소 : 서비스대상 가정내 또는 요양병원

- 내용 :

- ① (서비스 신청 최초 1회)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② (주1회, 총5회 이용) 방문재활(물리치료), 심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위해 현수막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 2,3차병원 및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한 서비스품질관리, 이용자확보
- 서비스이용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점검을 통한 만족도 평가

<b>사 업 명</b>	<b>위탁기관/자체</b>	<b>수행기간</b>
D-CAFE (치매카페)	(주)한국에자이	2024.03 ~ 2024.12.

**사 업 개 요**

**o 목적**

- 치매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돌봄 문화 조성

**o 사업목표**

- 치매 당사자와 가족, 주민 간의 교류와 관계망 형성
- 치매이해 및 돌봄기법을 배움으로써 당사자 및 돌봄 가족 삶의 질 향상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b>총 계</b>	<b>3,000,000</b>	* (주)한국에자이 보조금
프로그램진행비	2,100,000	치매정보 공유 및 휴머니튜드케어 배우기
운영비	900,000	홍보 및 다과, 환경조성비

**o 사업내용**

- 대상 : 조합원 중 치매당사자, 가족, 지역사회 주민 등
- 기간 : 4월~11월
- 장소 : 청바지공작소
- 내용 : D-CAFE(Dementia Cefe, 치매카페)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 편안하게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함.

교육일정(안)	주제(안)	강사(안)
6월 15일(토) 10:00~11:30	마음산책, 힐링테라피	박봉희센터장 (마음의숲사회적협동조합)
6월 22일(토) 10:00~11:30	치매대백과_치매사전	대덕구치매안심센터
6월 29일(토) 10:00~11:30	돌봄 여정 이해하기	외부강사
7월 6일(토) 10:00~11:30	치매환자 의료적 돌봄	나준식원장 (민들레의원)
7월 13일(토) 10:00~11:30	휴머니튜드케어 기법 배우기	외부강사
7월 20일(토) 10:00~11:30	마음산책, 힐링테라피	송정은대표 (아트온어스)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조합원, 지역주민,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이용 가족에게 사업소개 및 홍보
- 치매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간 협력관계 형성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원관리체계구축	자체	2024.03. ~ 2024.12.

**사업개요**

**o 목적**

- 조합원 등록관리 및 교육을 통해 민들레 이용 및 활동 확대

**o 사업목표**

- 신입조합원 및 대의원 교육
- 조합원 기본정보 DB 관리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b>총 계</b>	<b>11,030,000원</b>	
브로셔제작&발송	8,180,000	브로셔제작 8,000,000원 우편발송료 600원×300명=180,000원
홍보물품	1,000,000	민들레로고 3D인쇄 마스크, 대일밴드 1,000원×1,000개=1,000,000원
교육운영비	850,000	다과 10,000원×20명×3회=600,000원 강사비 250,000원×1명=250,000원
임원워크숍	1,000,000	다과 및 운영비 1,000,000원

**o 사업내용**

- 대상 : 신입조합원, 대의원
- 기간 : 3월~12월
- 장소 : 청바지공작소
- 내용 :
  - ① 조합원 등록관리
    - : 조합원 가입 후 민들레 브로셔 및 홍보물품 발송
    - : 가입신청서에 조합원 연령, 직업, 희망하는 활동 등 DB 관리
  - ② 조합원교육

구분	교육일정(안)	주제(안)	비고
신입조합원	6월 28일(금) 19:00	민들레 소개 및 담화	상반기가입
	11월 22일(금) 19:00	민들레 소개 및 담화	하반기가입
대의원	5월 25일(토) 10:00	민들레 활동 소개 대의원 역할 및 활동 간담회	
임원워크숍	4월 27일(토) 10:00	24년 민들레 조합활동 시스템전환 워크숍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조합 가입 시, 신입조합원 교육에 대한 적극 안내 및 홍보
- 가입신청서에 민들레 활동에 대한 의견 및 욕구 반영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홍보관리	자체	2024.03. ~ 2024.12.

**사 업 개 요**

**o 목적**

- 홍보매체 및 내용을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조합원 참여를 통해 다양한 홍보채널 마련

**o 사업목표**

- 민들레 사업 및 활동내용을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홍보  
- 조합원 참여로 민들레 활동 소개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b>총 계</b>	<b>4,925,000</b>	
홈페이지 및 카드뉴스	4,000,000	홈페이지업데이트 및 카카오톡채널 4,000,000원
민들레기자단_활동비	625,000	활동비 25,000원×5명×5회=625,000원
민들레기자단_교육운영비	300,000	강사비 250,000×1명×1회=250,000원 다과 5,000원×10명×1회=50,000원

**o 사업내용**

- 대상 : 조합원, 지역주민

- 기간 : 3월~12월

- 내용 :

① 스스로조합비 기부 조합원 관리

: 기부금 사업 내용 상/하반기 카드뉴스 제작

② 소식지 제작

: 상/하반기 민들레 활동소개 온/오프라인용 소식지 제작

③ 홈페이지 관리

: 민들레 소식 및 보도자료 등 매월 업데이트

④ 민들레기자단

: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민들레 사업 및 행사 시 현장스케치 및 인터뷰, 기사작성

: 소정의 활동비 지급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조합원 참여를 위해 문자, 카톡채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가입신청서에 민들레 활동에 대한 의견 및 욕구 반영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활동	자체	2024.03. ~ 2024.12.

**사업개요**

**o 목적**

- 조합원의 건강반 활동 및 자원활동을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o 사업목표**

- 다양한 조합원 활동 기회 마련
- 조합원의 건강자치력 향상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b>총 계</b>	<b>22,800,000</b>	
건강반 활동비	17,000,000	*기부금
건강반 간담회	150,000	다과 5,000원×30명=150,000원
건강반축제	4,250,000	대관료 1,500,000원 우수건강반 200,000원×10개반=2,000,000원 다과 5,000원×150명=750,000원
자원활동가 간담회	200,000	다과 5,000원×20명×2회=200,000원
조각통장제작	1,200,000	제작비 8,000원×150개=1,200,000원

**o 사업내용**

- 대상 : 조합원
- 기간 : 3월~12월
- 내용 :

① 건강반

- : 건강반 간담회 개최 (건강반 운영 방법 및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의 장 마련)
- : 건강반축제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며, 공동체를 돌보는 내용 확산)

② 자원활동가 조직

- : 주간보호센터, 검진, 의원, 지역주민의 돌봄 및 봉사

③ 조각관리

- : 운영지침 수정(기부금 사용에 따른 건강축진으로서 사용 등 기준 마련), 사용처 조정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건강반에 참여했던 반장 및 조합원의 의견 청취
- 건강반 활동에서 자원활동으로 확대

5) <조합사업부> 사업계획서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직 활동	자체	2024.01. ~ 2024.12.

사업개요

o 목적

조합의 근간인 조합원 중심의 조직 운영과 조합 발전 및 성장과 확장 도모

o 사업목표

- 조합원 확대
- 조합 사업 홍보로 대외적으로 사업 내용 확산 및 이용 증대
- 조합원 활동 확대 및 인적자산 확보
- 임·직원·조합원 역량 강화

o 총사업비(단위: 만원)

- 조합원 걷기 행사 : 150, 조합원 강좌 : 150
- 대의원 견학 : 200, 임원워크숍 : 50, 직원 교육 : 300

o 사업내용

구분	내용
홍보	- sns 활동(카카오톡채널, 페이스북, 조합밴드 활용) - 카톡 채널 구독자 증가(50명)
조합원 활동	- 조합원 걷기 행사(년 1회) - 조합원 강좌(년 4회)
교육	- 조합원 교육(조합원 모임을 활용하여 수시로) - 대의원 견학(년 1회) - 임원 워크숍(년 1회) - 직원 교육(신입, 간부, 전직원 대상)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조합원의 결속과 참여로 인적자산 확보와 내부 소통 강화
- 조합의 핵심 가치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조합원 교육 제공
- 임·직원의 자발성 강화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나부터 시작한 건강나눔] 건강반	자체	2024.05. ~ 2024.11.
<b>사 업 개 요</b>		
<p><b>o 목적</b>          조합원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스스로 운영하며, 나와 이웃과 지역사회          의 건강자치력 향상</p> <p><b>o 사업목표</b>          - 예산 범위 내 모집(약 40개반, 250여명)          - 조합에 대한 조합원 관심 도출과 활동 참여</p> <p><b>o 총사업비 : 2,000만원</b></p> <p><b>o 사업내용</b>          - 자격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 반 등록 : 조합원 5인 이상이 건강모임 구성 신청 후 심사 승인 등록          - 활동기간 : 2024.05 ~ 2024.11          - 활동비 지급(반별 차등 지원)          - 월 2회 이상 활동 의무, 활동 관련 보고 의무, 반 설명회 개최, 반 촉진 1회 의무 참가</p> <p><b>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b>          - 조합원의 유연성과 자율적 운영          - 조합과 건강반의 역동적 관계 형성          - 인적자산 확대</p>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리더교육	자체	2024.09. ~ 2024.10.
<b>사 업 개 요</b>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합 가치 공유</li> <li>- 스스로 자기 건강을 돌보며 나와 이웃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관련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기초 마련</li> </ul> <p>○ 사업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료생 20명(교육 수강 80% 이상 참여시 수료)</li> <li>- 건강리더로 건강반 활동 촉진 역할</li> </ul> <p>○ 총사업비 : 200만원</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li> <li>- 교육 기간 : 9월~10월 6강 진행</li> <li>- 교육 내용 : 건강마을 이해, 민들레의료사협 소개, 건강반 현장 이야기 만성질환, 정신건강, 기후위기, 갈등관리, 영양 등 다양한 주제 진행</li> <li>- 수료</li> </ul> <p>○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기름</li> <li>- 이웃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살펴보는 마음을 기름</li> <li>- 당장의 효과보다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효과 발현을 위한 필요 과정 설계</li> </ul>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화폐 '조각'	자체	2024.01. ~ 2024.12.
<b>사업개요</b>		
<p><b>o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화폐 '조각'을 활용하여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 촉진</li> <li>- 보상을 통한 조합 활동 참여 동기 부여 강화</li> </ul> <p><b>o 사업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에 적극적 참여로 신체,정신 등 건강 개선 효과</li> <li>- 활동 조합원 발굴</li> </ul> <p><b>o 총사업비 : 600만 조각(스스로조합비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 사업소 : 조합사업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주간보호센터</li> </ul> <p><b>o 사업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 대상 : 조합원 및 지역 주민</li> <li>- 내용 : 부서별 지급 기준에 따른 건강 화폐 발행으로 참여자들의 활동 촉진, 동기 부여</li> <li>- 지급 방법 : '조각' 발급 통장 수기 기록</li> <li>- 사용처 : 민들레의료사회 일차의료센터, 두레약국, (주)좋은이웃</li> <li>- 사용기한 : 2025. 12. 30.</li> </ul> <p><b>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증진과 예방활동 참여 유도</li> <li>- 자원봉사 활동 확대</li> <li>- 지역사회 참여 확대(사용처 개발)</li> </ul>		

6) <경영지원실> 사업계획서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기부금 활용	자체	2024.01. ~ 2024.12.

사업개요

o 목적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등으로 지역사회 보건예방사업 활동

o 사업목표

- 지역사회 활동 및 외부기관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o 예산(안)

구분	운영비	취약계층의료비지원			보건예방사업				합계
		의료기관 의료비	지역사회 의료센터	외부기관 연계	건강반 활동비	조각	외부기관 연계	시설 개선금	
금액 (만원)	300	1,800	450	700	1,700	500	300	300	6,050
비율(%)	5	30	7	12	28	8	5	5	100

※예비비 40,538원

o 사업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및 보건예방활동 지원과 상담  
(이주노동자, 미등록아동, 성매매피해여성, 65세이상 노인, 장애가족등 취약계층)
- 조각 사용 관리
- 지역사회, 복지관, 기업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

1. 2024년 예산 수립 기초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 논의와 치료에서 예방으로 건강관리체계의 전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의료수요 증가로 방문의료(왕진,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관련 시범사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민들레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를 요구받고 있다.

2024년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수가는 아래와 같다.

-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 의원 1.6%, 한의원 3.6%, 치과 3.2%
- 주간보호센터 재가급여 인상률 : 2.7%(3, 4등급)
- 최저임금변동

적용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시간급	9,160원	9,620원	9,860원
일급(8시간 기준)	73,280원	76,960원	78,880원
월급(209시간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2,060,740원
인상율(인상액)	5.05%(440원)	5.0%(460원)	2.5%(240원)

2024년 수입예산은 수가인상률과 사업소별 목표치를 반영해 2023년 결산대비 약 7.8% 증가한 4,768,276,138원으로 정했다. 의원과 검진의 매출증대노력과 각종 시범사업 참여, 지역사회의료센터의 방문의료 확대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한의원의 '한의방문'과 당장의 수가구조는 없지만 치과의 방문구강 보건예방활동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간보호센터는 민들레의 강점(주치의, 의료기관 및 조합원 자원 연계)과 조합원 수요발굴을 통해 안정화를 기대한다.

지출예산은 민들레 존재가치 점검·측정·관리와 민들레건강조사에 따른 사업비와 민들레마켓, 건강증진활동(건강반, 건강리더, 자원활동) 등 조합원의 건강관계망 확장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 매출증가에 따른 매출원가 인상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이 관리비에 반영되었다.

2024년은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로 '민들레다운' 활동을 점검하고,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의 연결을 통한 '민들레형 건강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



## 2. 예산 총칙

<제1조> 본 예산의 회계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2024 회계연도 예산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관	항	목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수입	사업 수익	의원, 검진	2,188,593,151	2,268,130,367	2,361,411,306	2,432,253,645	
		한의원	261,191,170	274,250,729	278,491,904	306,341,094	
		치 과	486,308,810	539,802,779	477,317,390	501,183,259	
		주간보호센터		536,348,000	399,435,340	565,960,140	
		지역사회의료센터	655,987,200	701906304	895773574	950,000,000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9,142,980				
		조합사업부					
		경영지원실	8,595,460	5,000,000	5,875,460	5,000,000	
	사업 외 수익	이자수익	977,237	448,000	2,171,390	258,000	
		정부지원 및 보조금	67,182,818	40,500,000	26,800,000	3,000,000	
		기부금	31,441,204	2,600,000	34,449,420	3,500,000	
		잡이익	2,251,836	52,000	1,693,320	780,000	
	수입합계			3,711,671,866	4,369,038,179	4,483,419,104	4,768,276,138
	지출	사업 비	교육,회의,연대, 조직,홍보	34,378,638	95,222,000	23,818,151	46,411,000
관 리 비		매출원가	326,951,994	345,213,588	347,401,557	402,622,780	
		인건비 (급여,퇴직연금,잡급, 인적용역)	2,174,171,155	2,528,349,772	2,744,880,075	2,877,030,800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178,528,278	198,155,210	326,310,047	347,031,600	
		기타 판관비	737,792,041	1,083,542,313	843,423,824	920,550,473	
기타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등)	59,752,196	62,522,444	95,504,370	88,081,599	
		법인세	1,849,270		19,133,046		
지출합계			3,513,423,572	4,313,005,327	4,400,471,070	4,681,728,252	
손익합계(수입합계-지출합계)			198,248,294	56,032,852	82,948,034	86,547,886	

3. 단위부서별 2024년도 예산 (2023년도 결산 대비)

(단위: 원)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I.매 출 액	4,418,304,974	4,760,738,138
▷ 의원 수입금	1,643,009,014	1,692,299,284
▷ 검진 수입금	718,402,292	739,954,361
▷ 한의원 수입금	278,491,904	306,341,094
▷ 치과 수입금	477,317,390	501,183,259
▷ 주간보호센터 수입금	399,435,340	565,960,140
▷ 지역사회의료센터 수입금	895,773,574	950,000,000
▷ 조합본부 수입금	1,430,000	1,100,000
▷ 임대료 수입금	4,445,460	3,900,000
II.매 출 원 가	347,401,557	402,622,780
▷ 의원/검진	196,599,131	203,082,060
▷ 한의원	43,698,151	45,883,059
▷ 치과	40,838,050	42,879,953
▷ 주간보호센터		40,5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66,266,225	70,277,708
III.매 출 총 이 익	4,070,903,417	4,358,115,358
IV.판 매 비 와 관 리 비	3,124,870,112	4,191,023,873
▷ 직 원 급 여	2,545,132,125	2,627,780,080
- 의원/검진	1,125,127,555	1,055,356,680
- 한의원	163,907,510	176,439,600
- 치과	260,790,590	243,305,160
- 주간보호센터	268,967,250	322,857,160
- 지역사회의료센터	467,888,690	584,612,16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74,259,490	114,693,240
- 조합사업부	34,938,600	
- 경영지원실	149,252,440	130,516,080
▷ 잡 급	1,470,530	34,616,880
- 한의원	624,000	9,888,000
- 주간보호센터	769,570	24,728,880
- 지역사회의료센터	76,960	
▷ 퇴 직 급 여	177,235,280	195,258,840
- 의원/검진	67,943,110	77,145,360
- 한의원	11,807,170	11,203,920
- 치과	17,817,680	8,303,04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 주간보호센터	20,794,870	27,247,560
- 지역사회의료센터	38,225,230	48,837,12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6,150,740	11,645,640
- 조합사업부	2,886,550	
- 경영지원실	11,609,930	10,876,200
▷ 복 리 후 생 비	243,885,073	214,419,680
- 의원/검진	104,762,285	76,814,760
- 한의원	26,142,868	15,416,400
- 치과	22,195,470	17,421,480
- 주간보호센터	11,925,880	36,731,040
- 지역사회의료센터	33,534,170	44,778,32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7,488,650	12,272,040
- 조합사업부	3,024,628	
- 경영지원실	34,811,122	10,985,640
▷ 여 비 교 통 비	23,722,657	23,950,000
- 의원/검진	138,600	150,000
- 한의원		
- 치과		
- 주간보호센터	7,525,750	7,65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12,299,552	13,8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555,505	650,000
- 조합사업부	606,400	
- 경영지원실	2,596,850	1,700,000
▷ 통 신 비	9,138,705	9,654,000
- 의원/검진	3,044,366	3,060,000
- 한의원	354,743	360,000
- 치과	637,067	660,000
- 주간보호센터	1,248,429	1,56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1,487,081	2,784,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740	18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2,364,279	1,050,000
▷ 수 도 광 열 비	4,304,216	4,320,000
- 의원/검진	1,048,320	960,00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 한의원	567,430	600,000
- 치과	474,830	480,000
- 주간보호센터	1,091,081	1,2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556,930	6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566,625	480,000
▷ 전 력 비	20,513,557	22,944,000
- 의원/검진	7,840,665	8,400,000
- 한의원	3,388,709	3,780,000
- 치과	4,108,833	4,920,000
- 주간보호센터		
- 지역사회의료센터	1,033,230	1,044,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46,422	
- 경영지원실	4,095,678	4,800,000
▷ 세 금 과 공 과 금	77,574,550	104,208,740
- 의원/검진	25,068,440	33,571,440
- 한의원	5,745,170	7,303,930
- 치과	7,825,080	7,970,510
- 주간보호센터	10,439,960	14,807,550
- 지역사회의료센터	13,745,800	26,307,24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3,461,700	5,161,080
- 조합사업부	1,457,930	
- 경영지원실	9,830,470	9,086,990
▷ 감 가 상 각 비	245,403,652	257,751,600
- 의원/검진	65,146,429	77,536,440
- 한의원	10,570,892	14,229,120
- 치과	21,244,252	29,644,320
- 주간보호센터	28,356,714	34,230,720
- 지역사회의료센터		1,866,69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5,200,755	5,200,8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114,884,610	96,043,51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 지 급 임 차 료	78,343,720	89,280,000
- 의원/검진	26,400,000	30,360,000
- 한의원		
- 치과	15,000,000	15,600,000
- 주간보호센터	23,743,720	30,12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3,200,000	13,20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5,500,000	
▷ 수 선 비	7,952,700	44,420,000
- 의원/검진	904,000	1,300,000
- 한의원	125,500	120,000
- 치과	467,000	
- 주간보호센터	2,060,000	13,2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15,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4,381,200	29,800,000
▷ 보 험 료	54,804,384	60,498,048
- 의원/검진	21,983,940	21,791,620
- 한의원	3,201,130	3,806,320
- 치과	5,701,770	7,306,640
- 주간보호센터	8,504,414	9,384,888
- 지역사회의료센터	8,546,620	10,948,56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5666,550	2,147,640
- 조합사업부	688,060	
- 경영지원실	4,611,900	5,112,380
▷ 차 량 유 지 비	2,111,130	2,40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주간보호센터	2,111,130	2,4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 운 반 비	661,900	492,000
- 의원/검진	50,000	48,000
- 한의원	195,400	192,000
- 치과	7,300	12,000
- 주간보호센터	65,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8,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47,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189,200	240,000
▷ 교 육 훈 련 비	2,957,400	4,411,000
- 의원/검진	1,013,000	1,013,000
- 한의원	130,000	130,000
- 치과	320,000	320,000
- 주간보호센터	340,000	1,9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1,048,000	1,048,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106,400	
▷ 도 서 인 쇄 비	3,129,300	11,744,000
- 의원/검진	390,000	390,000
- 한의원	13,500	
- 치과	24,000	24,00
- 주간보호센터	1,024,750	1,6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5,000	8,00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1,436,050	1,730,000
▷ 회 의 비	6,507,180	13,000,000
- 의원/검진	1,560,350	3,400,000
- 한의원	140,800	1,000,000
- 치과	430,170	1,000,000
- 주간보호센터	305,400	2,900,00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 지역사회의료센터	1,551,140	1,7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370,100	1,00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2,149,220	2,000,000
▷ 소 모 품 비	74,765,024	41,020,000
- 의원/검진	8,074,030	10,000,000
- 한의원	3,628,610	4,800,000
- 치과	996,330	1,000,000
- 주간보호센터	51,498,884	17,32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790,410	1,0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4,140,580	400,000
- 조합사업부	2,000	
- 경영지원실	5,634,180	6,500,000
▷ 대손상각비	6,452,850	
- 경영지원실	6,452,850	
▷ 지 급 수 수 료	261,036,826	354,106,585
- 의원/검진	134,292,644	182,690,587
- 한의원	3,980,969	6,780,969
- 치과	48,959,877	59,979,877
- 주간보호센터	3,697,154	3,947,800
- 지역사회의료센터	34,009,464	38,049,464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190,980	798,8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34,905,738	61,859,088
▷ 건 물 관 리 비	17,005,400	17,064,000
- 의원/검진	1,584,000	1,584,000
- 한의원		
- 치과	480,000	480,000
- 주간보호센터	11,755,990	11,76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3,185,410	3,24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682,570	
▷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2,562,675	2,829,42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 의원/검진	265,608	256,620
- 한의원	270,000	270,000
- 치과		
- 주간보호센터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2,027,067	2,302,800
▷ 연 대 활 동 비	6,547,140	4,35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주간보호센터		1,2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146,700	15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5,000	
- 조합사업부	68,100	
- 경영지원실	6,317,340	3,000,000
▷ 조 직 활 동 비	7,649,570	17,65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주간보호센터	231,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7,150,000
- 조합사업부	6,630,080	
- 경영지원실	788,490	500,000
▷ 홍 보 활 동 비	156,861	7,00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주간보호센터		2,0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5,000,000
- 조합사업부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 경영지원실	156,861	
▷ 인 적 용 역 비	11,202,140	19,375,000
- 의원/검진	992,000	
- 한의원		
- 치과		
- 주간보호센터	6,900,140	10,8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25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450,000	8,575,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1,610,000	
▷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30,991,752	
- 의원/검진	18,967,492	
- 한의원	3,836,750	
- 치과	8,187,510	
▷ 취 약 건 강 지 원 비	5,373,800	
- 의원/검진	4,760,600	
- 한의원	84,000	
- 치과	529,200	
▷ 기 부 금 사 업 비	29,711,717	35,00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주간보호센터		
- 지역사회의료센터	85,31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16,675,423	
- 경영지원실	12,950,984	35,000,000
▷ 기 부 금 사 업 비 지 원 금	-29,711,717	-35,000,000
▷ 외 주 용 역 비	9,840,000	6,48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주간보호센터	4,080,000	6,48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5,76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V. 영 업 이 익	132,471,320	167,091,485
- 의원/검진	543,454,741	643,343,078
- 한의원	-3,921,398	4,137,776
- 치과	20,066,381	59,876,279
- 주간보호센터	-68,001,746	-60,565,458
- 지역사회의료센터	214,294,372	102,196,738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26,720,200	-209,314,240
- 조합사업부	-51,798,790	
- 경영지원실	-394,902,040	-372,582,688
VI. 영 업 외 수 익	65,114,130	7,538,000
▷ 이 자 수 익	2,171,390	258,000
- 의원/검진	11,394	15,000
- 한의원	17,575	7,000
- 치과	9,388	10,000
- 주간보호센터	13,612	15,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2,208	3,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7,027	8,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2,121,320	200,000
▷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26,800,000	3,00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주간보호센터	8,9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7,2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8,500,000	3,00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2,200,000	0
▷ 기 부 금 수 입	34,449,420	3,50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 치과		
- 주간보호센터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30,00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4,449,420	3,500,000
▷ 잡 이 익	1,693,320	780,000
- 의원/검진	343,638	100,000
- 한의원	17,779	20,000
- 치과	18,409	20,000
- 주간보호센터	18,470	2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210,014	1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500,000	1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585,010	600,000
Ⅶ. 영 업 외 비 용	89,634,066	88,081,599
▷ 이 자 비 용	457,095	
- 치과	89,176,971	87,331,599
- 경영지원실	55,145,403	56,155,400
▷ 기 부 금	800,000	500,000
- 경영지원실	800,000	500,000
▷ 보 상 비	4,746,900	5,000,000
- 의원/검진	3,746,900	5,000,000
- 주간보호센터	1,000,000	
▷ 잡 손 실	323,404	250,000
- 의원/검진	4,160	
- 한의원		
- 치과		
- 주간보호센터	71,482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4,441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233,321	250,000
Ⅷ.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102,081,080	86,547,886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3년 통합결산	2024년 통합예산
- 의원/검진	540,058,713	643,458,078
- 한의원	-3,897,178	4,164,776
- 치과	19,637,083	59,906,279
- 주간보호센터	-60,141,146	-60,530,458
- 지역사회의료센터	221,706,594	102,209,738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87,727,614	-206,296,240
- 조합사업부	-51,798,790	
- 경영지원실	-475,756,582	-456,364,287
Ⅹ.법 인 세	19,133,046	
당 기 순 이 익	82,948,034	86,547,886

## 제9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4년 회계연도 차입금 최고 한도는 현재의 차입금 1,489,004,660을 포함하여 총 합계액 기준 20억 원 이내로 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10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2023년 차입금 내역 및 2024년 상환 계획

2023. 12. 31 기준

(단위: 원)

구분	차입액		최초 대출일	대출기한	이율 (연, %)	2024년 상환 계획	
	2022년도	2023년도					
조합원 차입금	80,000,000	70,000,000	'13.4.부터	1년 단위 (상환 연장)	4.00	요청시	
금융권 차입	유동화 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00,000,000	240,000,000	'18.04.26.	'25.06.26.	4.140	2년에 20%상환
	한빛신협	333,440,000	303,680,000	'19.01.11.	'29.01.11.	4.650	월248만원
	신나는 조합	15,340,209	-	'19.07.23.	'23.07.23.	3.00	상환 완료
	(재)밴드	7,626,282	-	'19.11.06.	'23.01.31.	3.035	상환 완료
	신한은행	269,504,826	247,574,660	'19.11.27.	'24.11.27. (연장가능)	6.576	마이너스
	신한은행	124,500,000	106,500,000	'19.11.27.	'24.11.24. (연장가능)	5.630	월150만원
	신한은행 (신보보증)	75,000,000	45,000,000	'20.06.30.	'25.06.17.	5.780	월250만원
	신한은행	292,250,000	253,250,000	'22.05.27.	'25.05.27.	6.850	월325만원
	신한은행 (신보보증)	100,000,000	100,000,000	'22.11.23.	'24.11.15. (연장가능)	5.830	24년 협의
	신한은행 (신보보증)		123,000,000	'23.03.28.	'26.03.28.	7.430	월300만원
총 계	1,597,661,317	1,489,004,660	-	-	-		





## 기타 특별제안

-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김나희 조합원

안녕하세요! 민들레 한의사 김나희입니다. 민들레 말고도 직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서 갯벌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는 기후재난을 줄이기 위해 같이 행동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합시다. 채소, 해조류, 콩, 통곡물, 버섯, 견과류 등으로 이루어진 식사는 몸에도 건강하고 탄소도 적게 배출합니다. 육류는 우리 건강에 해롭고 생명을 살상하며 기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를 멀리하시고, 특히 쇠고기라도 끊으세요.

2.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대전의 자랑 타슈를 이용하면 돈도 절약되고 근육도 생기고 공기도 깨끗해지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못 타시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3. 냉장고가 하나보다 더 많으신 분, 냉장고를 줄입시다. 김치냉장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비우고 음식을 이웃과 나누고 남은 냉장고는 당근에 내놓읍시다. 우리가 전기를 덜 쓰는 만큼, 버리는 음식이 적을수록 지구가 덜 더워집니다.

4. 일회용기를 멀리 합시다! 비닐,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지는데, 석유 채굴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곳 주민들을 삶터에서 비극적으로 쫓아내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안 씌는 일회용품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이제 매립지 만들 곳도 없다는 걸 다 아시지요.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태우게 됩니다. 플라스틱 태운 공기가 결국 우리가 들이마셔 우리 폐로 들어옵니다. 내 손에 쥔 일회용컵은 곧 내가 들이마실 매캐한 비닐 태운 가스가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컵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은 암과 고혈압 위험을 높입니다. 흘러흘러 바다로 가는 일회용 쓰레기는 물살이들 뱃속에 쌓입니다. 뱃속에 비닐이 가득차 고통스러워하는 아기거북을 생각해주세요.

5.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19시 씨네인디유(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서 '석탄의 인생' 영화를 상영합니다. 많이 보러 오시고,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주차장 대신 자전거 도로, 골프장 대신 대청댐, 공항 대신 갯벌을 선택하는 후보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 정 관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전 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제 9 조)
제 2 장	조	합	원 (제 10 조 ~ 제 17 조)
제 3 장	출	자	(제 18 조 ~ 제 26 조)
제 4 장	총 회 와	이 사 회	(제 27 조 ~ 제 44 조)
제 5 장	임 원 과	직 원	(제 45 조 ~ 제 60 조)
제 6 장	사 업 과	집 행	(제 61 조 ~ 제 63 조)
제 7 장	회	계	(제 64 조 ~ 제 68 조)
제 8 장	합 병·분 할	및 해 산	(제 69 조 ~ 제 72 조)
부	칙		

##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 단체 <지역품앗이 한밭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민들레의료생활협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민들레의료생활협의 전통을 이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 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갈 것이다.

##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
- ② <삭제, 2020. 5. 09.>
- 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 2층(법동) <개정, 2020. 5. 9.> <개정,2021. 2. 27>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 2층(법동) <개정, 2021. 2. 27>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
  4. <삭제, 2020. 5. 09.>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원

-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자 <개정, 2020. 5. 09.>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단체조합원: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출자를 한 법인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삭제, 2020. 5. 09.>
  - 4.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0. 5. 09.>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환급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0. 5. 09.>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저출좌 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2. 27>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2.27>

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원이 추가납입(증좌)한 출자금이 1좌에 미만일 경우 그 출자금은 1좌를 충족시 까지 출자예치금으로 별도 관리하며, 출자예치금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2.27.>

⑧ 제7항에 따른 출자예치금이 1좌를 충족시에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적립한다. <신설, 2021.02.27.>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
2. 조합가입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에서 110명 이하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2.27>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권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 27>
-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혹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09.>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총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시 까지로 한다. <개정, 2021. 2. 27>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에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5. <삭제, 2020. 5. 09.>

- 제5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0조(고문)** ① 총회의 결의로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에 자문에 응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당시 이사의 임기와 같다.
- ④ 고문의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사업과 집행

-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
  -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 아.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신설, 2020. 5. 09.>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 임대사업
-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2. 27>
-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62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②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신설, 2020. 5. 09.>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

**제66조(기부금)** ①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 ②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67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4조(3차 개정)**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5조(4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6조(5차 개정)**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

**제7조(6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8조(출자), 제25조(대의원총회), 제29조(정기총회), 제42조(이사회 의사), 제44조(임원의 정수),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65조(운영의 공개), 제57조(사업의 종류), 제58조(소액대출: 삭제), 제59조(상호부조: 삭제), 제60조(사업의 이용),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일부개정 (2019.4.22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8조(7차 개정)** 2020년 5월 9일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4조(탈퇴),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제45조(임원의 정수), 제58조(운영의 공개), 제61조(사업의 종류), 제62조(사업의 이용) (2020.06.17.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9조(8차 개정)** 2021년 2월 27일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8조(출자), 제28조(대의원총회), 제41조(이사회), 제50조(임원의 임기), 제61조(사업의 종류)(2021.03.25.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총회운영규약
- 출자좌수 감소 규약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 과태금에 관한 규약



---

# 총회운영규약

---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경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출한 2명의 서기가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제7조(의결사항),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제15조(의사록) 일부개정



#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개정 2021.02.27.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2.27>

② <삭제, 2021.02.27.>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 2.27>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삭제, 2021.02.27.>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 출자금 감소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기본좌수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21년 2월 27일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일부개정

---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제정 2013.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개정 2021.02.27.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0조제2항의5, 제18조제6항 조합원인 법인의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정관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인으로 국내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출자방법]** 단체가 출자할 경우 출자 100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단체가 출자할 경우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을 득 한자만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2.27>

**제5조[사업의 이용]** 출자단체 구성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출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단체의 정의)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20년 2월 27일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일부개정

---

# 과태금에 관한 규약

---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경비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 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에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

의 원 042)638-9012

한의원 042)638-9013

치과의원 042)638-2275

건강검진센터 042)716-5002

지역사회의료센터 042)716-7001

조합사무실 042)638-90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83, 5층(중리동)

주간보호센터 042)716-7004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042)638-9043

대표번호 042) 638-9042 / fax 042) 638-9055

<http://www.mindlle.org>



민들레 Mindlle



Mindlle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